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일습 운영 매뉴얼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지침



CONTENTS

I . 2025학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현장실습 운영 지침 신규조문대비표	05
II . 2025학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	09





I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I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지침 신규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5조 1항	<p>II. 현장실습의 운영 계획</p> <p>제5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p> <p>1. 학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현장실습 실시 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7인 이상으로 구성 하되 학부모, 학생, 학교 전담 노무사, 산업체 담당자, 현장실습 관계 기관 담당 자를 각각 1명 이상 필수로 포함하고, 교원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장(감), 현장실습 담당부장, 학과(학년)부장, 교무부장, 현장 실습 담당교사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p> <p>※ 현장실습 관계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예: 산업안전보건공단, 청소년노동인 권네트워크, 공인노무사회 등)</p>	<p>II. 현장실습의 운영 계획</p> <p>제5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p> <p>1. 학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현장실습 실시 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현장실습운영 위원회는 교원, 학생, 외부위원으로 구성 하되,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p> <p>① 학부모, 학생, 학교 전담 노무사, 산업체 담당자, 현장실습 관계 기관 담당자를 각각 1명 이상 필수로 포함한다.</p> <p>※ 현장실습 관계 기관 담당자(예: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공인노무사회 등)</p> <p>② 교원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장(감), 현장 실습 담당부장, 학과(학년)부장, 교무 부장, 현장실습 담당교사 등이 포함 되도록 한다.</p> <p>③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으로 구성한다.</p> <p>※ 외부위원(예: 학부모, 산업체 담당자, 학교전담노무사, 현장실습 관계기관 담당자 등)</p>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 2항 참조
제5조 3항	<p>3.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p> <p>① 학교 현장실습 계획 심의 및 추진 사항 확인, 점검</p> <p>② 현장실습 운영비 예산 활용 계획 심의</p> <p>③ 당해 연도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 실시</p> <p>④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 심의</p> <p>⑤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 및 취소 신청 여부 결정</p> <p>⑥ 현장실습 직무 연관성 및 전공 적합성 심의</p> <p>⑦ 현장실습 기업 및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적부 심의</p> <p>⑧ 개별 현장실습 운영 건의 현장실습 참여 기간,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중복성 심의 등 운영 전반 협의</p> <p>⑨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계획 및 학생 참여 적부 심의</p> <p>⑩ 취업전환 적부 심의</p>	<p>3.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p> <p>① 학교 현장실습 계획 심의 및 추진 사항 확인, 점검</p> <p>② 현장실습 운영비 예산 활용 계획 심의</p> <p>③ 당해 연도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 실시</p> <p>④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 심의</p> <p>⑤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 및 취소 신청 여부 결정</p> <p>⑥ 현장실습 직무 연관성 및 전공 적합성 심의</p> <p>⑦ 현장실습 기업 및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적부 심의</p> <p>⑧ 개별 현장실습 운영 건의 현장실습 참여 기간,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중복성 심의 등 운영 전반 협의</p> <p>⑨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계획 및 학생 참여 적부 심의</p> <p>⑩ 취업전환 적부 심의</p>	제5조 3항에 '심의·의결 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에 각 호에서 '심의' '확인, 점검' 등 중복 표현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11조 1항	<p>Ⅲ. 현장실습의 운영</p> <p>제11조(현장실습의 기간) 현장실습 기간은 현장실습의 내용과 분야에 따라 학교의 특성과 실정,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한다.</p> <p>1. 교내 현장실습과 교외 현장실습 중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은 전 학년에 걸쳐 운영할 수 있다.(단, 체험형은 단기간 견학이나 체험을 뜻하며 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p>	<p>Ⅲ. 현장실습의 운영</p> <p>제11조(현장실습의 운영 기간) 현장실습 운영 기간은 현장실습의 내용과 분야에 따라 학교의 특성과 실정,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한다.</p> <p>1. 교내 현장실습과 교외 현장실습 중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은 전 학년에 걸쳐 운영할 수 있다.(단, 체험형은 단기간 견학이나 체험을 뜻하며 기간은 연간 2주(10일) 이내로 한다.</p>	<p>체험형 현장실습: 운영일을 연간 2주에서 10일 추가 구체적으로 명시</p>
제16조 3항	<p>Ⅳ.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지도 및 학생 보호</p> <p>3. (순회지도) 학교는 현장실습 산업체를 1회 이상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현장실습을 1개월 이상 실시하는 경우 1개월에 1회 이상, 1개월 미만의 현장실습의 경우에도 1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의 실습 상황, 학생 건강, 현장실습 협약의 준수, 교육프로그램 실시 여부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실습생 및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p>	<p>Ⅳ.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지도 및 학생 보호</p> <p>3. (순회지도) 학교는 현장실습 산업체를 1회 이상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현장실습을 1개월(실습일 20~25일) 이상 실시하는 경우 1개월(실습일 20~25일)에 1회 이상, 1개월(실습일 20~25일) 미만의 현장실습의 경우에도 1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의 실습상황, 학생 건강, 현장실습 협약의 준수, 교육프로그램 실시 여부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실습생 및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단, 공공기관은 2개월에 1회는 직접 방문, 1회는 서면 SNS 등으로 대체 가능(상담기록 보관))</p>	<p>순회지도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p>
제16조 7항	<p>7. (현장실습 일지) 학교는 학생에게 현장실습 일지(LMS) 작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서 학생이 작성한 현장실습 일지를 매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야 한다. 현장실습생이 LMS, SNS, 기타 방법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학교는 즉각적인 답변과 조치를 해야 한다. 학교는 매주 LMS 검토 외에도 현장실습 담당교사, 담임교사, 취업지원관 등의 주관하에 SNS 등을 활용하여 현장실습생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p>	<p>7. (현장실습 일지) 학교는 학생에게 현장실습 일지(LMS) 작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서 학생이 작성한 현장실습 일지를 매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야 한다.(단,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필요) 현장실습생이 LMS, SNS, 기타 방법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학교는 즉각적인 답변과 조치를 해야 한다. 학교는 매주 LMS 검토 외에도 현장실습 담당교사, 담임교사, 취업지원관 등의 주관하에 SNS 등을 활용하여 현장실습생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p>	<p>‘매주’라는 말과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라는 말이 상충되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상시적 모니터링 필요성 제기</p>

<p>띄어쓰기, 오타자 등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교외 • 위해→유해 • 졸업년도→졸업 연도 등 	
<p>명칭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 결과보고서(점검결과표)→현장 실사 점검결과표 • 현장실습 관계 기관 및 단체 관계자→현장 실습 관계 기관 담당자 • 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현장실습의 운영 시기→현장실습의 운영 시작 시기 • 현장실습의 기간→현장실습의 운영 기간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 및 권익보호 온라인 교육→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 • 각 호→ 각 항 	



II

2025학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



II 2025학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

전부개정	2018.07.09.
일부개정	2019.06.12.
일부개정	2020.03.20.
일부개정	2020.05.08.
일부개정	2020.07.07.
일부개정	2021.06.17.
일부개정	2022.08.08.
일부개정	2023.06.07.
일부개정	2024.06.18.
일부개정	2025.06.25.

I. 총 칙

제1조(성격) 이 지침은 현장실습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현장실습 운영 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1. 이 지침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시행령, 교육과정 총론,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에 의거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다.
2.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산하 특수목적(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특성화과에 적용한다(이하 학교라 한다).
3. 이 지침에 제시된 기준 이외에 더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가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편성하여 시행한다.

제2조(현장실습의 목적과 정의) 현장실습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과는 구별되며,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함으로써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직업적 체험을 의미한다.

1. '참여기업'은 현장실습 참여기업 **현장실사 점검결과표**를 충족하는 산업체로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후 3학년 동계방학 시작 이후(혹은 졸업 연도 1월 1일)에 취업이 가능한 기업을 의미한다.
2. '선도기업'은 현장실습 선도기업 **현장실사 점검결과표**를 충족하는 산업체 중 교육청에서 인정한 곳으로써, 3학년 학생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20~25일) 진행하고, 수업일수의 2/3 이상 이수 후 취업이 가능한 기업을 의미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II. 현장실습 운영 계획

제3조(현장실습의 방법)

1.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으로 구분한다. 교내 활동의 유형은 교내 현장실습을 말하며, 교외 활동의 유형은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기업 발굴이 어렵거나 교외 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교내 활동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2.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은 교육기관, 공공기관, 훈련기관, 실습장, 기업, 협회 등과 연계하여 실무중심의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유형을 말한다. 교육과정, 시설, 기자재, 강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과 협업을 통해 실무중심의 전공 심화 교육 또는 전공 전환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위원회)

1. 광주광역시 관내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의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청 직업교육 업무담당자, 직업계고 교원, 유관기관, 공인노무사,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30명 이내(조례 9조 2항에 의함) 구성한다.
 - 선도기업 지정 등 긴급한 현안 의결을 위해 현장실습지원위원회 아래 현장실습지원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위원장의 역할
 -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5.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지침 마련 및 개정, 학교의 선도기업 승인 및 취소 등 현장실습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 위원회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회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소위원회 의결 방식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선정
 - 학교장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 산업체가 운영기준에 서 정한 선도기업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육감에게 선도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교육감은 학교에서 신청한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 1항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위원회의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7.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1. 학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현장실습 실시 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교원, 학생,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학부모, 학생, 학교 전담 노무사, 산업체 담당자, 현장실습 관계 기관 담당자를 각각 1명 이상 필수로 포함한다.
 - ※ 현장실습 관계 기관 담당자(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인노무사회 등)
 - ② 교원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장(감), 현장실습 담당부장, 학과(학년)부장, 교무부장, 현장실습 담당교사 등이 포함 되도록 한다.
 - ③ 외부 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 ※ 외부 위원(예: 학부모, 산업체 담당자, 학교전담노무사, 현장실습 관계기관 담당자 등)
3.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 ① 학교 현장실습 계획 및 추진 사항
 - ② 현장실습 운영비 예산 활용 계획
 - ③ 당해 연도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 실시
 - ④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
 - ⑤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 및 취소 신청
 - ⑥ 현장실습 직무 연관성 및 전공 적합성
 - ⑦ 현장실습 기업 및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적부
 - ⑧ 개별 현장실습 운영 건의 현장실습 참여 기간,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중복성 등 운영 전반 협의

⑨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계획 및 학생 참여 적부

⑩ 취업전환 적부

4. 현장실습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학교 전담 노무사를 포함하고, 교감(장), 현장실습 담당부장, 현장실습 담당교사, 학과(학년)부장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구성인원의 1/2 이상 충족되어야 개최할 수 있으며, 노무사(또는 산업안전전문가)에 의한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현장실습 운영소위원회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④~⑩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가능하며, 그 외의 사항은 심의 불가하다.

제6조(현장실습 운영 계획) 학교는 다음 각 항에 따라 「학교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포함된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 학교는 현장실습이 학과별 교육과정과 인력양성유형에 연계되도록 하고, 학생의 안전과 권익보호 등을 포함하여 매년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학교 구성원·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2.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예산 검토, 현장실습 산업체 관리 및 신규 산업체 발굴 계획 등을 반영한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연간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대한 교육청의 제출 안내가 있을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학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 시 기존의 참여, 선도기업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인정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실습 예산 편성) 학교는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도 및 추수지도 관련 예산을 학교 기본 운영비에 편성·운영한다.

제8조(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는 학교와 학생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이 전 학년에 걸쳐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항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다.

1.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수업 방법의 일환으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전문교과 독립교과목으로 편성하거나 전문교과 일부에 포함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하여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2. 현장실습 이수 학점은 학교의 장이 학교 구성원 등과 협의를 거쳐 적절한 이수 학점을 결정한다. 단,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운영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장실습을 특정 학기에 집중하여 실시할 경우, 보통교과는 편성하지 않을 수 있고, 보통교과가 편성된 상황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할 경우 해당 교과에 대한 이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교과의 이수는 현장실습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Ⅲ. 현장실습의 운영

제9조(현장실습 실시)

1.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위해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는 실무과목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체에서 실시할 수 없거나 학생이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 학교 내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의 경우, 매년 배포되는 교육부의 현장실습 매뉴얼에 준하며 단위 학교에서는 시교육청에 심사 및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전공 심화 과정)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시설·강사·교육과정을 갖춘 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으로, 학생의

전공실무능력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편 취업을 위한 기업 매칭이 가능해야 한다.

- (전공 전환 과정) 전공 전환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훈련기관(산업정보학교, 폴리텍,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연수원 등)의 입문자용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현장실습의 운영 시작 시기) 현장실습은 전 학년에 걸쳐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의 특성과 실정,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내 현장실습과 교외 현장실습 중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은 전 학년에 걸쳐 수시로 운영이 가능하다.
2. 교외 현장실습 중 연계교육형 현장실습과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은 3학년에 한하며,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한다.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은 연중 운영이 가능하다.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은 10월 1일 이후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10월 1일 전에 정부(지방정부 포함) 및 공공기관, 군 부사관, 대기업 등에서 해당 기관에 채용을 전제로 현장실습을 실시할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제11조(현장실습의 운영 기간) 현장실습 운영 기간은 현장실습의 내용과 분야에 따라 학교의 특성과 실정,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한다.

1. 교내 현장실습과 교외 현장실습 중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은 전 학년에 걸쳐 운영할 수 있다.(단, 체험형은 단기간 견학이나 체험을 뜻하며 기간은 **연간 2주(10일)** 이내로 한다.)
2. 교외 현장실습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의 경우 참여기업은 1주(5일) 이상 3개월(60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선도기업은 취업 전 20~25일 이내 운영하되 다음을 포함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중기 취업 맞춤형 등 정부 주도형 산학연계 사업,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약정하여 인턴 기간을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 부사관 임관을 위하여 부사관 학교에 10월 이후부터 입교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취득을 위해 현장실습이 필요한 경우는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고, 학습권이 보장되는 산업체(기관)에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예: 서진여고 간호과)

제12조(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선정) 학교는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현장실습 운영과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가 가능한 건실한 산업체(협회 및 단체 포함)를 현장실습 참여기업(이하 참여기업)으로 선정한다.

1. 학교는 관계부처와 기관 및 교육청 등이 제공하는 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현장실사 **점검결과표**를 검토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학교는 새로 발굴한 산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산업체가 '현장실습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적정 여부를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의 금지) 연령에 상관없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및 근로기준법 제65조의 사용금지에 해당하는 산업체 또는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없다.

단, 숙박업소에서의 현장실습은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일정 규모를 갖추고 해당 직무 수행 장소가 학생에게 **유해** 요인이 없는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생의 직무는 객실을 직접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호텔 내 유흥업소나 사행행위장 등의 유해시설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실습생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제외 대상: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중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이 동법 제9조 제1항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거나, 「산업 현장의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근로자가 동법 제21조에 따라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국회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4.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은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와 교육청은 방학 중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원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의 인증평가를 받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 전문병원)은 현장실습을 생각하여 선도기업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보건소는 공공기관에서의 산업체 현장실습으로 간주함
 - 학교와 교육청은 1~2학년 의료기관 현장실습생도 산업체 현장실습생과 동일하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원하여야 함
 - 학교와 교육청은 의료기관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B형 간염 항원항체검사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

제13조(현장실습 선도기업의 선정) 학교는 학교에서 선정한 현장실습 참여기업 중 학교의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협의 후 교육청에 현장실습 선도기업(이하 선도기업)으로 신청하며, 교육청은 학교에서 신청한 선도기업에 대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장실습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도기업으로 선정한다. 선도기업 선정 절차(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에 따라 학교는 현장실습 시작 최소 2주 전까지 교육청(신청 시스템)에 선도기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학습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학교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선도기업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실습목표 및 실습생의 직무수행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실무과목(또는 NCS 능력단위)을 활용한 산업체별 학습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선도기업과 협의하여 개별 기업에 특화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현장실습 협약) 학교는 관련 법령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1.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의 경우에 학교장, 학생 및 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 실시 이전에 3자간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학교는 기업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및 표준협약서【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등 법적 고려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4. 학교는 학생에게 현장실습 기간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할 수 없음을 안내(교육목표 달성과 관련이 없는 노동인 경우 즉시 복교)하여야 한다. 교육부 권고안의 현장실습 수당은 노동에 대한 임금이 아닌 훈련수당임을 명확히 한다.
5. 학교는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실습기업과 수행할 실습 내용 등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학교는 현장실습 협약 내용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7. 학교는 학생이 작업 중 안전상 위험을 감지·인지할 경우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Ⅳ.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지도 및 학생 보호

제16조(현장실습생 지도) 교육청은 학교에 현장실습 관련 행·재정 사항을 지원하고 학교는 다음 각 항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 등을 위한 학생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전교육) 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권익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업윤리(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내용 등에 대한 사전교육
 - 학교는 학생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12차시)**」을 필수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현장실습에 나가는 것을 앞둔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직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한다.
2. (취업지원센터에 위탁) 학교는 위의 1항에 대하여 그 교육을 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3. (순회지도) 학교는 현장실습 산업체를 1회 이상(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현장실습을 **1개월(실습일 20~25일)** 이상 실시하는 경우 **1개월(실습일 20~25일)**에 1회 이상, **1개월(실습일 20~25일)** 미만의 현장실습의 경우에도 1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의 실습상황, 학생 건강, 현장실습 협약의 준수, 교육프로그램 실시 여부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실습생 및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단, 공공기관은 **2개월에 1회는 직접 방문, 1회는 서면 SNS 등으로 대체 가능(상담기록 보관)**) 온라인 순회지도는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하되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오프라인 지도는 전체 실습생 및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지도 결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실습계획이나 현장실습협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는 등 현장실습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체와 협의하여 실습내용 변경, 실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학생 보호) 학교 또는 교육청은 현장실습 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지원을 받아 학생의 상담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안전사고 조치) 안전사고 발생 시 실습생은 실습장의 책임자, 부모님과 학교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즉시 치료를 받으며, 보고를 받은 관계자는 실습학생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실습장의 책임자와 학교는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우선으로 선 구두보고 후 서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7. (현장실습 일지) 학교는 학생에게 현장실습 일지(LMS) 작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서 학생이 작성한 현장실습 일지를 매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필요**) 현장실습생이 LMS, SNS, 기타 방법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학교는 즉각적인 답변과 조치를 해야 한다. 학교는 LMS 검토 외에도 현장실습 담당교사, 담임교사, 취업지원관 등의 주관하에 SNS 등을 활용하여 현장실습생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제17조(유관기관과의 협업) 교육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별 현장실습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중심 현장실습 표준협약 준수 등의 지도·감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실습 협약 준수 대책에 활용한다.

제18조(현장실습 중단 및 산업체 현장실습 미참여 학생에 대한 지원) 학교는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미참여 학생과 현장실습 중단 학생에 대해 다음 각 항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1. 학교는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미참여 학생을 위해 학교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학교는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중 학교로 복교 의사가 있는 학생에 대해 복교 조치한 후 복교 학생의 상담 및 학교 적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V. 현장실습의 평가

제19조(평가) 학교는 다음 각 항에 따라 학생과 학교의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학생 평가) 학교는 연계교육형, 체험형 현장실습 활동에 대해 산업체와 협의하여 학교가 평가하도록 하고, 단위 학교 학업 성적관리 규정에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2.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의 평가) 학교는 현장실습 학생에 대해 출석, 태도, 일지, 순회지도 교사 평가, 산업체 담당자의 평가 등을 현장실습 평가에 반영하고, 단위 학교 학업 성적관리 규정에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3. (학교 자체 평가) 학교는 참여기업, 실습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현장실습 결과 평가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 (현장실습 평가보고회 개최 및 성과 반영)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개최 후 평가보고회를 진행하여 운영 결과에 대해 평가, 공유하고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반영한다.

VI. 취업 및 추수지도

제20조(현장실습 후 취업지원) 학교는 다음 각 항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취업을 지원한다.

1. (선도기업) 제10조 2항에 따라 학생이 선도기업에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 취업(전환)동의서를 작성하고 학교에 제출 후 해당 기업에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취업할 수 있다. 취업 이후 학사관리는 산업체 현장실습에 준하여 운영한다.
2. (참여기업) 학생이 선도기업 이외 기업에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마치고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동계방학 시작 이후 혹은 졸업 연도 1월 1일 이후에 취업(전환)동의서를 작성하고 학교에 제출 후 해당 기업에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취업할 수 있다.
3. 학교는 **졸업 연도** 2월 말까지 취업한 학생에 대해 추수지도 등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CONTENTS

I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개요

- 1.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이해 22
- 2. 현장실습 운영 지원 28

II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의 운영

- 1.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34
- 2. 기업 발굴 및 사전 방문 47
- 3. 참여·선도기업 선정 54
- 4. 현장실습 요구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69
- 5. 사전교육 실시 94
- 6.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99
- 7. 현장실습 운영 112
- 8. 현장실습 종료 및 취업지원 140
- 9. 현장실습 학교 자체 평가 및 피드백 151

III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의 운영

- 1.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의 이해 및 형태 158
- 2.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개요 159
- 3.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절차 161
- 4.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고려 사항 162

[부록 1] 현장실습생의 안전·권익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178

[부록 2] 현장실습 운영 관련 법규 180



서식 목차

번 호	내 용	페이지
서식 1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51
서식 2	현장실습(채용) 의뢰서(예시)	52
서식 3	현장실습 선도기업 신청서	61
서식 4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62
서식 5	현장실습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72
서식 6	현장실습표준협약서	105
서식 7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109
서식 8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일지(예시)	124
서식 9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125
서식 10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예시)	131
서식 11	현장실습 사안 보고서	136
서식 12	현장실습 복교 의견서(예시)	138
서식 13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용 예시)	142
서식 14	현장실습 평가서(기업용 예시)	143
서식 15	취업(전환) 동의서	146
서식 16	취업 학생 추수지도 결과보고서	147
서식 17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보고서(예시)	153
서식 18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164
서식 19	연계 교육기관 현장실사 점검표	166
서식 20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승인 신청서	168
서식 21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169
서식 22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170
서식 23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174
참고	기업현장교사 자격 확인서	32

자료 목차

번 호	내 용	페이지
자료 1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 세부운영계획서’ 검토 체크리스트	40
자료 2	참 관참은 중소기업 목록	49
자료 3	청년 친화 강소기업 목록	49
자료 4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관광숙박업 등록 현황	50
자료 5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선정·인정 절차	57
자료 6	현장교육훈련 표준모델	73
자료 7	공업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 (1주일 예시)	77
자료 8	상업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 (1개월 예시)	81
자료 9	농업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 (2개월 예시)	85
자료 10	가사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 (3개월 예시)	89
자료 11	안전보건교육 관련 정보	96
자료 12	산업안전보건 교육 온라인 연수(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96
자료 13	기업 의무교육 활용 자료	97
자료 14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수당 회계처리 방법	117
자료 15	현장실습(취업) 학생 NEIS 출결입력 방법	121



I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개요

1. 직업계고 현장실습 이해
2. 현장실습 운영 지원



제1장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이해



○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7호, 법률 제19344호)



가. 학습중심 현장실습

1) 근로(조기취업) 중심에서 학습(취업준비) 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2018년)

- 현장실습 중에는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실습 계약(협약)만을 체결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실습을 운영함.
- 현장실습은 '노동'이 아닌 '배움'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현장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닌 '학생'임.
- 현장실습생은 학생이므로, 학교와 기업은 현장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실습생의 권익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2)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 제1항 및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제2020-248호([부록 2] 참조)에 따라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한 참여 여부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개선 사항]

구분	근로중심 현장실습	학습중심 현장실습
교육과정 연계	자율(근로중심)	실무과목과 연계한 OJT(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기간	6개월 이내	최대 3개월(수업일수의 1/3 범위 이내)
운영 형태	조기 취업	취업 준비과정
프로그램	없음	학교·기업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기업현장교사	없음	기업현장교사 지정 및 지도 책임 부여
현장실습 계약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근로계약서 혼용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신분	학생, 근로자 혼용	학생
급여/수당	급여 지급	현장실습 수당 지급
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근로기준법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근로기준법 등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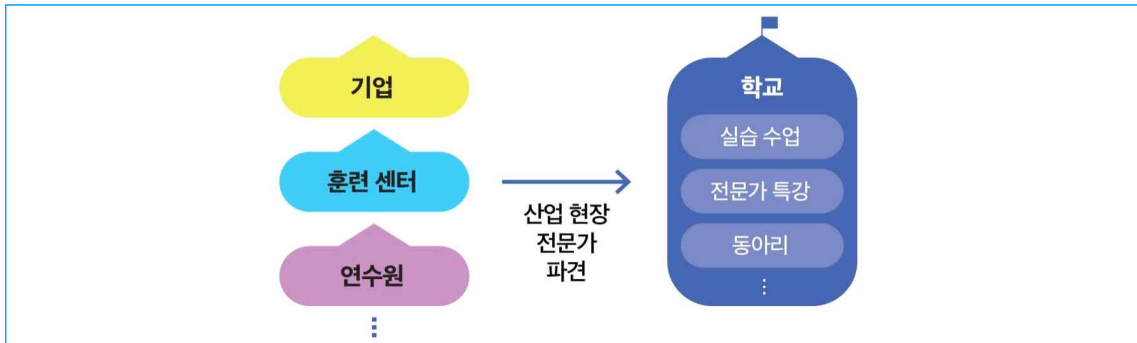
나.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형

-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으로 구분함.
- 현장실습 교내 활동의 유형은 교내 현장실습, 교외 활동의 유형은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기업 발굴이 어렵거나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교내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함.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현장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산업체를 기반으로 하는 현장실습은 학생의 선택을 통해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와 산업체가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현장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음.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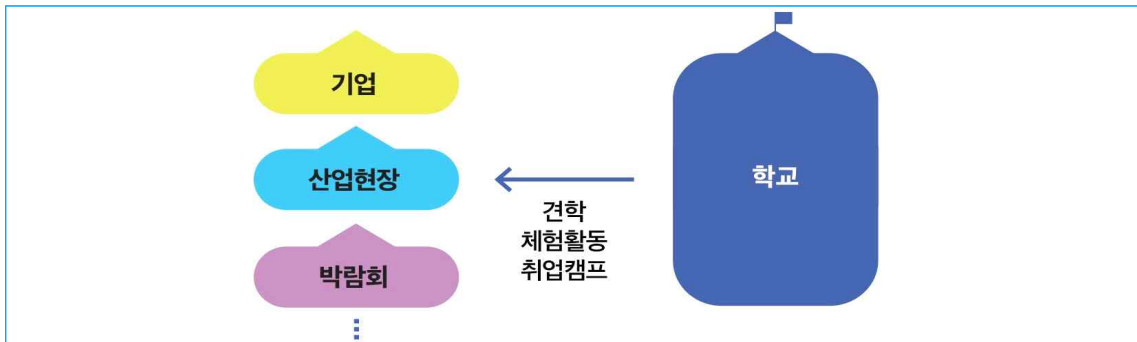
구분	유형	세부 활동 내용	실시시기
교내 활동	교내 현장실습	• 산업현장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 지도하는 현장실습	1~3학년
교외 활동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 산업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현장실습 ※ 공동실습소, 견학, 체험활동, 취업캠프 등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 교육기관, 훈련기관, 실습장, 기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현장실습 ※ 공동실습소, 폴리텍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전문대학 등	3학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 산업체 채용을 전제로 해당 기업에서 직접 활동하는 현장실습	

1) 교내 현장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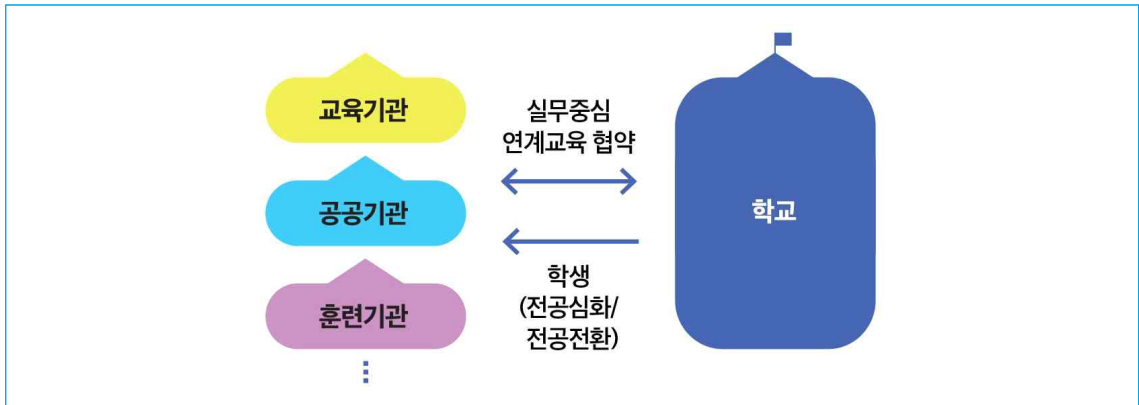
- 산업현장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 실습을 지도하는 유형임.
- 실제 산업현장 전문가가 학교 실습수업 중 일부를 집중 지도, 전공 관련 산업현장 전문가 특강, 산업현장 전문가의 학생 동아리 지도 등이 해당 됨.

2)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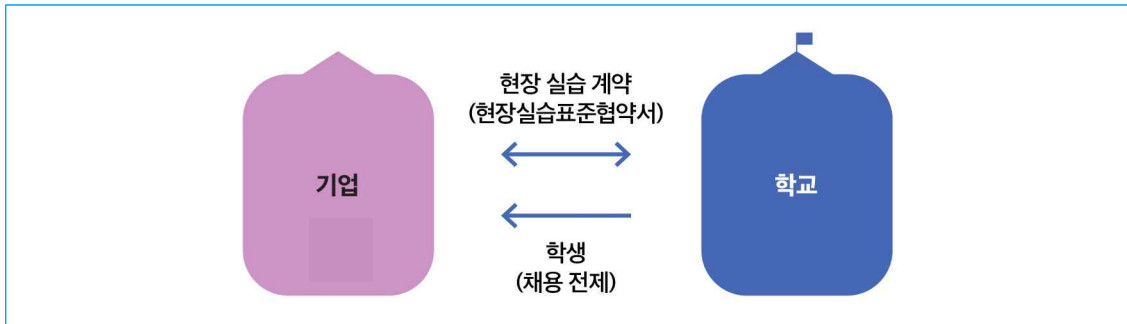
- 학생이 견학, 체험활동, 취업캠프 등의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유형임.
- 산업현장 견학, 산업박람회 참여, 기업 연계 취업캠프 등이 해당함.
-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운영에 따른 비용은 학교 현장실습 운영비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음**.
-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은 학교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시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함.
- 출결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각종 현장체험학습과 동일하게 처리함.
-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의 기간은 **연간 2주(10일)** 이내로 실시. 단, 상대적으로 우수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승인에 따라 2주 이상 실시 가능

3)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 교육기관, 공공기관, 훈련기관, 실습장, 기업, 협회 등과 연계하여 실무중심의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유형임.
 -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기관 예: 폴리텍대학, 전문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공동실습소, 기업 연수원 등
- 교육과정, 시설, 기자재, 강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과 협약을 맺고 실무중심의 전공 심화 교육 또는 전공 전환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됨.
- 채용연계를 전제로 하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모집 단계에서부터 학생의 전공과 실습 과정상의 직무가 일치하거나 별도의 직무 적합도 검증 절차(적성검사, 직무평가 등)를 거쳐야 실습 종료 후 취업 전환 가능함.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중 전공 전환 과정의 경우, 학생의 본래 전공과 달라도 참여 가능함.
 - ※ 단, 추후 채용연계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의 직무 적합도 검증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함.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지원위원회의 심의에서 승인 받은 후 운영이 가능함.
 - ※ 광주광역시교육청 승인 요청 시 필요 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별도 지침에 따름.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은 최대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 내에서 연중 운영 가능함.
 -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과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 이내로 운영
 - ※ 단, 학교가 설정한 인재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 초과하여 현장실습이 필요하다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인정하는 경우 운영 가능

4)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 산업체 채용을 전제로 학생이 해당 기업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는 유형임.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은 학생의 전공과 기업에서 교육받는 직무가 일치해야 함.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은 총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 내에서 연중 운영 가능함.
- (광주광역시교육청)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은 총 3개월(60일) 내에서 10월 1일부터 운영 가능함.(현장실습 운영지침 10조 2항에 의함)
 - ※ 단, 학교가 설정한 인재 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개월을 초과한 현장실습이 필요하다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인정하는 경우,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을 초과하여 현장실습 운영 가능
-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학교는 필요에 따라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 내에서 별도의 현장실습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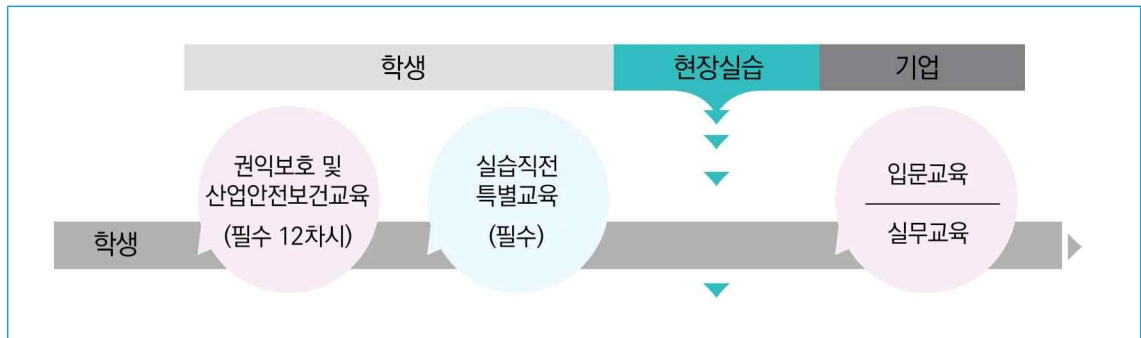
○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사 제도에 대한 적용 기준 안내

- 현장실습 제도 미적용(일학습병행법 등 자체 법령 및 제도 적용)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취업 맞춤형 등)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후 실제 기업 현장에서 실습한 기간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적용
 -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은 전공과 일치해야 하므로 취업 맞춤형 모집 단계에서부터 전공과 일치하는지 확인
 - ※ 교내 프로그램을 산업전문가가 학교에 와서 진행한 경우 '교내 현장실습'으로 처리 가능
-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부서관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작성 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적용,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적용
 - ※ 단,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동시에 체결할 수 없음에 유의
- 간호조무사, 말 조련(사육)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의 경우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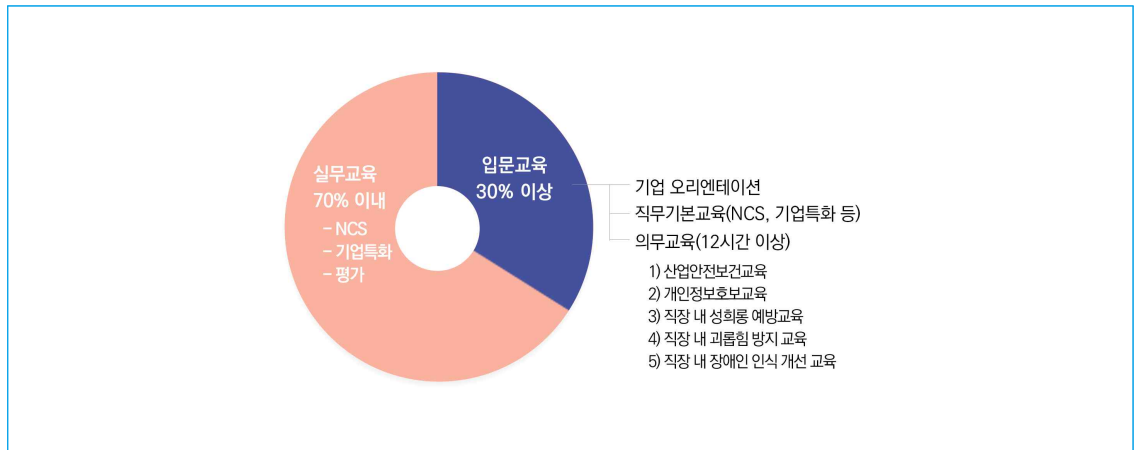
- 현장실습은 사전 현장실사와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지원위원회** 또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에서만 가능함.
 ※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의 선정 방법은 본 매뉴얼의 “참여·선도기업 선정” 참조

구분	선도기업	참여기업
승인 주체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선정 절차	현장실사 →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의 선도기업 신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지원위원회 심의	현장실사 →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심의

- 안전과 현장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학생 중심 프로그램 운영



- 실무교육과 입문교육의 내용과 시간 구성



※ 현장실습 전체 시간 중 실무교육 시간은 70% 이내, 입문교육 시간은 30% 이상 편성
 ※ 의무교육은 입문교육 시간에 12시간 이상 포함하여 편성 운영하고, 현장실습 시작과 함께 실시하여야 함.

제2장

현장실습 운영 지원

가. 현장실습 운영비의 활용

- 1)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수당, 기업 관계자와의 협의회, 기업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 비용, 순회(추수)지도 수당, 현장실습 담당자(교원 및 취업지원관)의 국내외 연수비, 현장실습 담당 교원의 업무 보조 또는 담당 교원의 수업 대체 인력을 한시적(단기간)으로 채용하는 인건비 등으로 활용 가능
- 2) 원칙적으로 현장실습과 관련되거나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으로 연계되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방과 후 수업료, 진로체험 활동 등 현장실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 목적으로 활용 불가

[현장실습 운영비]

항목	내용	지출 상한
프로그램 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및 기업관계자)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비 1건당 5만 원 이내(원고료 A4 1매당 14,000원 기준), 프로그램 개발 담당(교사와 기업담당자)에게 각각 지급 	
기업 발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및 취업처 발굴을 위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 담당자와의 기업 실태 조사비(기업 발굴에 따른 수당으로 여비와 중복 지급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기준: 관내·외 3만 원(1일 최대 2회) ※ 단, 기업 전달 내역, 실태조사, 협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결재문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함. - 현장실습 운영계획 협의회비(식비 등) - 기업·현장실습 관련 기관 방문 시 소요 비용, 기업·기관 방문 및 현장실습생과 취업 초기 학생 격려를 위한 물품비(기념품 및 다과) 	
연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및 취업지도를 위한 담당자의 국내외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인정·위탁한 기관에서의 연수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대상자 추천과 선발은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담당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시간제 교사 또는 업무 보조 인력의 한시적 채용 경비 • 한국공인노무사회 지원 사항 이외의 추가 활용 시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참석 수당 10만 원/회 	

항목	내용	지출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기업 코칭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칭 수당 지급 금액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예산지원 범위(노무사회에서 별도 안내) 참고 ※ 학생 면담 수당, 원거리 지원비는 지급하지 않음.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및 기업 현장 방문에 참가하는 기업 인사, 노무사, 학부모 등 외부 인사에 대한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인사에 대한 수당은 시도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편성 기본지침 기준에 따라 지급 • 현장실습생 사전 교육 및 취업 준비를 위한 특강비 [내·외부 전문가, 졸업(예정)자 등 활용] • 직업계고 현장실습 컨설턴트의 현장실습 컨설팅 수당 	
순회(추수)지도 / 면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담당자의 기업 순회(추수)지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추수)지도비 지급 기준: 관내·외 3만 원(1일 최대 3회) ※ 순회(추수)지도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으로 여비와 별도 지급 가능 • 현장실습 및 취업을 위한 학생의 면접 참여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거리 면접 참여 시 학생 교통비, 식비, 숙박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참여 학생 대상 상해(생명)보험비 • 의료기관 현장실습생의 검진 및 예방접종비 • 현장실습 및 취업 관련 교육 자료의 개발비 • 교내 현장실습 운영비 •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운영비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비 • 현장실습 동아리 지원비 	

※ 지출 제한 항목: 현장실습 및 취업 목적과 맞지 않은 경비, 학교 기본 경비로 편성되어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실습 재료비, 비품 구입비, 시설 개선비 등), 방과 후 교과교육에 대한 수당 및 간식비
 ※ 업무추진비는 교부금액의 총액 5% 이내에서 집행 가능

나. 현장실습 참여 수당 지급

- 1) 현장실습은 전공과 연계한 실무교육을 받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므로, 현장실습생은 근로에 따른 급여가 아닌 교육훈련에 대한 현장실습 수당을 받음.
- 2) 현장실습 참여 수당은 국고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현장실습 지원금과 기업이 현장실습생에게 지원하는 현장실습 수당으로 구성됨.
- 3) 국고 및 교육청 예산으로 1일 6만 원을 지원하며, 현장실습 기업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지급해야 함(2025년 기준).
 - ※ 국고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 집행 현장실습 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급하며, 기업이 지급하는 현장실습 수당 계산식은 [Q/A](#) 111p 참조

다. 고졸취업 활성화 지원사업

1) 현장실습 지원금

- 지원 대상: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국적 무관)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참여한 학생
 - ※ 모든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시작 전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함.
 - ※ 직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외의 현장실습 유형은 현장실습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일 6만 원(국고 3만 원, 교육청 3만 원)씩 최대 360만 원 지원(국고 180만 원, 교육청 180만 원)
-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별도 안내

2)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현장교사에게 실습지도 수당을 지급함.
- 지원 대상: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기업현장교사 자격요건: ①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 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 출연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위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2025년 자격 확인서 신설) 기업현장교사가 한국장학재단에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신청 시 현장실습 기업 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기업 현장교사 자격 확인서'(참고)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상세한 제출 방법 등은 한국장학재단 2025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기업현장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실습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 관리 및 교육 등의 현장교육을 수행
 - ※ 기업현장교사 1명당 현장실습생 1명을 지도하는 것이 원칙(1:1 배치)
 - ※ 모든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실습 시작 전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완료해야 함.
- 지원 내용: 현장실습생 수에 따라 일 3~3.5만 원의 실습지도 수당을 최대 210만 원 한도로 지급함.
 - ※ 1일, 실습생 1명 30,000 원, 2명 이상 35,000 원(단 1:1 지도가 원칙임.)
-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별도 안내

3)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졸업예정자)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사회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함.
- 지원 대상: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및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6개월 이상 참여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3학년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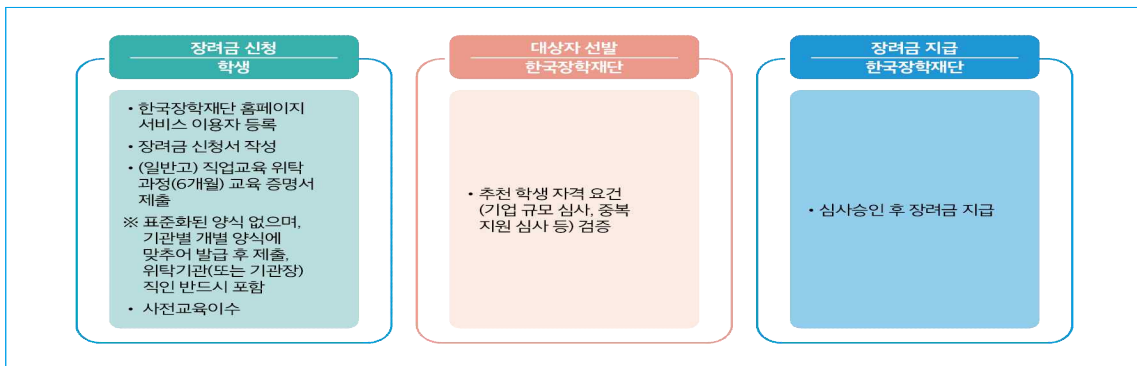
- 지원 조건:
 - (기본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한 자
 - (학력 요건) 직업계고 3학년 및 일반고 3학년 중 직업교육 위탁과정(180일 이상) 참여 학생
 - * 직업계 고등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 * 정규학기 미졸업 시 수혜 불가
 - (재직 요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고용보험 정보로 확인)
 - ※ 신청 마감일(별도 공지)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지원 내용: 재직기간에 따라 학생 1인당 총 500만 원 2회 분할 지급
 - (1차) 사업기준일(매 학년도 10월 1일)로부터 1년 이내 3개월(90일) 재직 시 200만 원 지급
 - (2차) 사업기준일(매 학년도 10월 1일)로부터 30개월 이내 추가 9개월(270일), 총 12개월(360일) 재직 시 추가 300만 원 지급
 - ※ 위 지급금액은 '24학년도 신청자 기준 지급 금액이며, '25학년도 신청자에 대한 지급 금액은 추후 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재직 일수 산정 시 동일기업에 재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재직 인정기간 내 중소·중견기업 근무 일수는 재직 인정 일수에 모두 합산됨
 - ※ 현장실습 지원금 참여 기간 및 군복무 대체기간(산업기능요원 등)은 재직 인정일수에서 제외되며, 질병·상해, 군 입대 등 사유 발생 시 유예 가능(상세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별도 안내



● 장려금 지원 의무 사항

- ① 사전교육 이수('중소·중견기업의 범위와 이해' 등 4가지 강의 수강)
- ② 학적 유지(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절차]



참고

기업현장교사 자격 확인서

기업현장교사 자격 확인서

현장실습 산업체명		○○○○○ 회사		
기업 현장교사 자격 확인서				
순번	직급	성명	연락처	자격요건* 번호
1				
2				
3				
4				
5				
6				
<p>*<자격요건></p> <p>①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p> <p>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 분야 훈련 유경험자</p> <p>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p> <p>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p>				

위 사항을 확인함

202 . . .

00 회사 00 대표(직인)



II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의 운영





1.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2. 기업 발굴 및 사전 방문
3. 참여 선도기업 선정
4. 현장실습 요구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5. 사전교육 실시
6.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7. 현장실습 운영
8. 현장실습 종료 및 취업지원
9. 현장실습 학교 자체 평가 및 피드백



제1장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업무 요약표]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교사	<p>가.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학부모, 학생, 노무사, 산업체, 현장실습 관계 기관 담당자 각각 1명 이상 필수로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함. <p>나.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계획, 확인, 검토, 심의, 점검,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함을 숙지해야 함.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아 구성·운영할 수 있음. <p>다.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과별 교육과정과 인력양성유형 연계, 학사 일정, 안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현장실습 운영비 활용 계획을 포함해야 함. 현장실습 사전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함. 현장실습 순회(추수)지도 계획을 포함해야 함. 현장실습 복교생 지도 계획을 포함해야 함. <p>라. 현장실습 운영 교육과정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와 학생의 특성,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전 학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 <p>마.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가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업무담당자는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가입함. 계정 권한 관리자를 반드시 선정(또는 관리자 권한 인계)하고 업무 담당자 권한을 부여함. 	<p>예시 1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p> <p>예시 2 학교 전담 노무사 배정 공문 예시</p> <p>예시 3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세부 업무</p> <p>예시 4 현장실습 계획서 제출 공문 예시</p> <p>자료 1 교육청 '현장실습 세부운영 계획서' 검토 체크리스트</p> <p>예시 5 현장실습 운영예산 집행 계획</p> <p>예시 6 현장실습 순회지도계획 내부결재</p> <p>예시 7 '현장실습 복교생' 지도 계획 - 상담카드</p>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 참여해야 함.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 협의 내용을 최종 승인함. 학년 초,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계정 권한 관리자를 선임함. 	<p>예시 3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세부 업무</p>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함. 현장실습 교육 계획을 수립함. 	
 노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무사회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배정 학교를 확인함. 학교 담당교사와 연락망을 유지함.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 참여함. 현장실습 기업 코칭 계획을 수립함. 	

[세부 운영 내용]

가.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구성

1) 학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현장실습 실시 전에 학교가 주체가 되어 구성해야 함.

-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① 학부모, 학생, 학교 전담노무사, 산업체 담당자, 현장실습 관계 기관 담당자를 각각 1명 이상 필수로 포함한다.
 - ② 교원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장(감), 현장실습 담당부장, 학과(학년)부장, 교무부장, 현장실습 담당교사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③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예시 1
 - * 학생: 3학년 현장실습 대상 학생 중 대표성을 갖는 학생(학생 중 선발, 학생자치회장, 기타 대표 학생 등)
 - * 학교전담노무사: 교육청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지정한 담당자(해당 공문 확인)로서, 학교 현장실습운영(소) 위원회 참여, 기업 사전 현장실사, 현장실습생 사전교육, 현장실습 기업 지도·점검 지원, 선도기업 코칭, 학생 순회지도 지원, 현장실습생 권익 침해 구제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예시 2
 - ④ 구성인원의 2/3 이상 충족되어야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① 학교전담노무사(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 한하여 서면 의견 제출로 참석 대체 가능)를 포함하고, 교감(장), 현장실습 담당부장, 현장실습 담당교사, 학과(학년)부장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②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구성인원의 1/2 이상 충족되어야 개최할 수 있음.
 - ③ 현장실습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 외에는 심의 불가함.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구성]

구분	구성 기준	정족수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교원, 학부모, 학생, 노무사, 산업체, 현장실습 관계 기관 담당자 각각 1명 이상 필수로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	구성원 2/3 이상 참여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노무사를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	구성원 1/2 이상 참여

Q&A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 노무사가 꼭 참석해야 하나요?



노무사는 필수 참석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노무사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 의견서로 참석 대체 가능하나 학교는 노무사에게 회의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예시 1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구성

- 가) 위원장: 교장(감)
- 나) 교원위원: 취업진로부장, 특성화교육부장(직업교육부장), 학과[학년]부장, 특수교육부 담당교사, 교무부장, 취업지원관 등
- 다) 학부모 위원: 정○○(○○과 3-2 김○○ 모)
- 라) 산업체 위원: 이○○ ((주)△△△ 전무)
- 마)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위원: 최○○ (□□시 일자리센터장), 혹은 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사 주임)
- 바) 학교전담노무사: 함○○ 노무사
- 사) 학생대표 위원: 양○○ (학생자치회장)
- 아) 산업안전 전문가: 임○○(○○지회)

예시 2 '학교전담노무사' 배정 공문 예시

○○ 광주광역시교육청

수 신 수신자 참조 혹은 ○○고등학교
(경유)

제 목 0000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학교전담노무사 배정 알림

1. 관련: 0000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학교전담노무사 배정 알림(○○○○과-0000, 0000.00.00.)
 2. 0000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학교전담노무사 배정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대상/배정: 직업계고 109교/전담노무사 124명
 - 나. 운영 기간: 0000.00.00. - 0000.00.00.
 - 다. 지원 내용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참여
 - 현장실습생 사전교육
 - 참여·선도기업 사전 현장실사 및 현장실습 기업코칭 지원
 - 현장실습생 권익침해 구제 지원 등
- ※ 학교전담노무사 위촉장은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통해 일괄 제작하여 발송 예정
- 라. 문의: 한국공인노무사회 과장 ○○○(☎ 02-0000-0000)

붙임 0000년 직업계고 학교전담노무사 배정표 1부. 끝.

나.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학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포함하여 위원의 임기와 책무, 관계부서 협조 사항 등을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명시함.
-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학교 현장실습 계획을 심의하고, 추진 사항을 확인·점검하며, 기업 및 학생에 대한 현장실습 적부를 심의해야 함.

-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는 매 학년도 말에 1년간의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자체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차기 학년도 현장실습 운영에 반영함.
-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 결과는 학생, 학부모, 기업 등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함.
-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역할
 - ① 연간 학교 현장실습 운영계획 심의 및 추진 사항 확인, 점검
 - ② 현장실습 운영비 예산 활용 계획 심의
 - ③ 당해 연도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
 - ④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 심의
 - ⑤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 및 취소 신청 여부 결정
 - ⑥ 현장실습 직무 연관성 및 전공 적합성 심의
 - ⑦ 현장실습 기업 및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적부 심의
 - ⑧ 개별 현장실습 운영 건의 현장실습 참여 기간,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중복성 심의 등 운영 전반 협의
 - ⑨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계획 및 학생 참여 적부 심의
 - ⑩ 취업 전환 적부 심의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④~⑩사항에 대해 현장실습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의결 가능하며, 그 외는 불가함.

예시 3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세부 업무

- 1) 현장실습 기획
 -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 및 심의, 추진 일정 점검
 - 교내 활동 계획: 사전교육, 안전교육, 예절교육, 성교육, 인권 및 노동교육 등 제반 교육 계획 포함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 시기 심의
 - 현장실습 복교생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2) 현장실습 운영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적부 심의
 - 교내 현장실습,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적부 심의
 - 순회(추수)지도 계획 수립
 - 현장실습 사전 교육 관리
 - 현장실습 협약에 따른 제반 서류 관리
- 3)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산하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운영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위원 구성, 위임 사항 규정
 - ※ 위원장은 교감 또는 교장이 함.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 기업, 실습 기간 등의 적합 여부 심의

다.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 현장실습이 학과별 교육과정과 인력양성유형에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교과 성적산출, 출결,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립함.
- 학생의 안전과 권익보호,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방법 등을 포함하여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수립함.
- 현장실습 이수 학점(단위)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이수 학점(단위)을 결정함.
- 현장실습의 사전 준비, 실습, 순회(추수)지도 **예시 6**, 현장실습 중단 및 복교 **예시 7**, 완료 및 취업 전환 등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 현장실습 계획 수립 시 기존의 참여·선도기업을 점검하고, 문제점 발견 시 인정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함.
-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예산 **예시 5** 활용, 기업 발굴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함.
- 현장실습 기업풀(pool) 관리 및 신규 기업 발굴 계획이 반영된 운영계획을 수립함.
- 학교 구성원, 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함.
- 현장실습 사전교육을 포함하여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전교육 이수 내역을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해야 함.
 - 학교는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12차시를 실시해야 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www.keli.kr)
 - 학교는 '실습 직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이수 결과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해야 함.
- 학교는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광주광역시교육청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예시 4**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 기간
 - 3학년 수업일수 1/3 범위(3개월) 내에서 운영 가능
 - (광주광역시교육청-참여기업) 10월 1일 이후 3개월 이내 운영 가능
 - (광주광역시교육청-선도기업) 10월 1일 이후 실습일 기준 20~25일 이내 운영 가능
 - 학생의 준비 상황과 기업 실습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학생)-산업체 간 협의를 통해 현장실습 기간 설정
 - 3개월 초과 운영이 필요할 때,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서식 5**
-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전환 시기
 - (참여기업) 3학년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후부터 취업 전환이 가능함.
 - (선도기업)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실습일 기준 20~25일 이상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전환이 가능함.
 - ※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졸업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예시 4 현장실습 계획서 제출 공문 예시

○○ 고등학교

수 신 내부결재
(경유)

제 목 0000학년도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

- 1. 관련: 0000학년도 현장실습 정책 추진 기본 계획(○○○○과-0000)
- 2. 0000학년도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자 합니다.
 - 가. 목적: 현장실습 과정 운영
 - 나. 기간: 0000. 00.00(0) - 0000. 00.00(0) 총 0일간
 - 다. 대상: 고등학교 전교생
 - 라. 내용: 붙임 참조

붙임 0000학년도 현장실습 운영 계획 1부. 끝.

자료 1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 세부운영계획서’ 검토 체크리스트

차례	검토 내용	적합	재검토	
I.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요	1. 목적 및 운영 절차	가. 현장실습의 목적 및 운영절차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침」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습중심 현장실습 세부 운영계획」에 맞게 명기하였는가?		
	2. 현장실습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 교원, 학부모, 노무사, 산업체, 현장실습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학생 등을 포함하여 구성 여부		
		나.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적절하게 명시하였는가? - 현장실습 운영계획 심의 및 추진 사항 확인·점검 - 현장실습 운영비 활용 계획 - 현장실습 기업 및 학생 적합 여부 심의 - 실습 시기 결정 - 교내 현장실습,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적합여부 심의		
	3. 현장실습 세부 운영 방안	가. 학과별 교육과정과 인력양성유형에 연계되도록 하고, 학생의 안전과 권익보호,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방법 등을 포함하여 수립되었는가?		
		나. 현장실습의 운영 유형이 제시되었는가? - 교내 현장실습, 산업체 체험형, 연계교육형, 산업체 채용형		
		다. 현장실습의 운영 시기·방법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라. 학교의 교육과정 담당자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기에 보통교과 편성 시 보통교과에 대한 이수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마. 현장실습 담당교사는 지정되어 있고 담당교사의 업무가 명기되어 있는가?		
		바. 현장실습 자체진단 및 평가보고회 운영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4. 현장 실습생의 평가 계획	가. 학교의 평가 업무 담당자가 현장실습생에 대한 평가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에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 ※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에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의 포함 여부 확인 - 단일 과목[예: 현장실습]으로 개설하였을 경우		

차례	검토 내용	적합	재검토	
II.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1. 추진 절차	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의 추진 절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2. 세부운영 내용	가.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 선도기업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명기되어 있는가?		
		나.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 선도기업 신청 기준은 명기되어 있는가?		
		다.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직무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사항이 명기되어 있는가?		
		라.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과 학생 매칭에 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마. 현장실습 실시 전 사전 교육 및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은 명기되어 있는가? - 사전교육은 근로기준법(권익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근로계약서 작성법, 실습생의 책임·의무·권리 등에 관한 사항		
		바. 현장실습표준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명기되어 있는가?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양식은 [교육부고시 제2018-165호]를 사용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원본) 보관		
		사. 산업체 현장 점검 및 순회(추수)지도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따르고 있는가? -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 전,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사항 점검 등 현장실습 산업체 적절성 평가 -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순회(추수)지도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시 1회 이상 방문 순회지도 실시		
		아. 현장실습생의 안전보호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명기되어 있는가? - 현장실습 중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제시된 조건과 다를 경우, 시정 조치(현장실습 사안보고서 작성) 및 복교 조치에 관한 사항 - 복교 희망자에 대한 상담 및 협의 실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 복교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의 제시 - 현장실습 중단으로 인한 복교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계획 - 안전보호 및 조치를 위한 실습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자. 안전사고 발생 대처 요령은 명기되어 있는가? - 학생 보호와 치료를 최우선으로 대응 - 즉각적인 구두 보고 후 서면 보고에 관한 사항			

차례	검토 내용	적합	재검토
	차. 학습중심 현장실습 이수 및 평가,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는가? - 현장실습생의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현장실습 기업의 현장실습 평가서 제출 - 개별 현장실습 종료 후 학생 만족도 평가		
	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지원 및 학생 보호 관련 사항이 명기되어 있는가? -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전환 심의 -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으로 전환한 학생의 추수지도, 출결 등 관리		
3. 현장실습 관련 서류	가. 현장실습 관련 각종 서류는 최신의 양식으로 제시하였는가?		
	나. 현장실습 관련 서류의 양식이 빠짐없이 구비되어 있는가?		
Ⅲ. 예산집행 계획	1. 현장실습 운영비 가. 현장실습 운영비 활용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나. 현장실습 운영비 활용 계획의 예산현액이 일치하는가? - 학교 편성 금액과 예산현액 비교		
2. 학생 안전용품 지원비	가. 학생 안전용품 지원비의 집행이 적정한가? - 현장실습생을 식별할 수 있는 용품(조끼, 배지, 모자, 머플러 등) 지원		

예시 5 현장실습 운영 예산 집행 계획

- 사업명: 0000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비
- 교부 총액: 19,000천 원
- 예산 집행 계획

(단위: 천원)

구분	세목	항목	산출 근거(예시)	계
현장실습 운영비	현장실습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지원비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비	- 프로그램개발비: 50,000원(4매)×30건=1,500,000원	1,500
		기업 발굴비	- 기업실태조사비: 30,000원×80회=2,400,000원 - 협의회비: 8,000원×6명×20회=960,000원 - 격려 물품 구입비: 8,000원×110개=880,000원 20,000×100개=2,000,000원	6,240
		연수비	- 역량강화연수비: 400,000원×2회=800,000원	800
		인건비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수당: 100,000원×4명×2회=800,000원 - 외부 위원 산업체 방문 수당: 100,000원×8회=800,000원 - 특강비: 100,000원×20회=2,000,000원	3,600
		순회지도 /면접 지원	- 순회 지도 수당: 30,000원×112회=3,360,000원	3,360
		기타	- 보험비: 10,000원×130명=1,300,000원	1,300
		소계		
현장실습생 안전 지원	안전 물품 지원비	물품 구입비	- 안전조끼 구입비: 17,600원×125명=2,200,000	2,200
		소계		2,200
계				19,000

I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개요

II 산업체 취업예행 현장실습의 이해

III 전 계 단계별 현장실습의 이해

부 록

예시 6 현장실습 순회지도 계획 내부 결재

○○ 고등학교

수 신 내부 결재

(경유)

제 목 1차 현장실습 순회지도 계획

1. 관련 : ○○○○과-0000(0000.00.00.), ○○고등학교-0000(0000.00.00.)
2. 0000학년도 현장실습운영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 순회지도를 [붙임1]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가. 기간 : 0000.00.00. - 0000.00.00.
- 나. 중점 지도 사항
- 1) 현장실습생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준수 확인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의무화
 - 현장실습생 실습 시간 준수
 - 2) 학생 근태 및 인권보호 실태 확인
 -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건강, 애로사항 점검
 - 현장실습에 대한 적응 및 학생만족도 확인
 - 3)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및 직업교육촉진법 준수 여부 확인
 -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처리
 - 4) 순회지도 대상 학과 : 디지털바이오화학과, 디지털전기과, 디지털전자과
 - 5) ○○○과 : 00월 00일 이후 현장실습 진행
 - 순회지도 계획 추후 수립 예정

붙임 0000년 1차 현장실습 순회지도 계획 1부. 끝.

연번	학과명	취업 회사명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실습 일자	학생 성명	담당 교사	순회지도 일자
1	○○과	(주)제일○○	경기도 시흥시 ○○○	031-498-0000	김○○	010-6338-0000	031-498-0000	0000.10.12	유○○	오○○	0000.10.19
2	○○1과	(주)아이○○○	경기도 안산시 ○○○	031-481-0000	이○○	010-2578-0000	031-481-0000	0000.10.12	고○○, 허○○	윤○○	0000.10.20
3	○○2과	(주)삼구○○	경기도 안산시 ○○○	031-412-0000	박○○	010-3300-0000	031-412-0000	0000.10.12	권○○, 이○○	한○○	0000.10.20
4	○○3과	(주)와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	032-472-0000	문○○	010-4602-0000	032-472-0000	0000.10.12	강○○	구○○	0000.10.14
5											

예시 7 '현장실습 복교생' 지도 계획 - 상담카드

		코드번호			
학생명		과 3학년 반 번			
회사명		실습일	년 월 일		
실습 유형	산업체 채용형	복교일	년 월 일		
현장실습 업무 내용					
복교 사유	적성 불일치, 업무 어려움, 대인관계 갈등, 인내력 부족, 진로 변경 등				
단계	지도 요소	지도 내용	실시 일자	담당교사	담당교사 확인
1일 차	자기성찰 및 학생상담	◇ 복교 의견서 작성 및 상담 - 복교생의 고민과 애로사항 - 회사 생활 돌아보기(장점과 단점) - 올바른 자기 이해 돕기	월 일 (시간)	담임교사	
2일 차	취업 동기 부여	◇ 전공 관련 상담 및 취업 마인드 향상 - 상담을 통한 자기성찰 - 자기 극복 및 인성 지도	월 일 (시간)	학과부장	
3일 차	취업 지원	◇ 직장생활 적응력 강화 및 대인 관계 능력 향상 - 실습생의 의무와 권리 - 인간관계, 팀워크 갈등관리 -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법	월 일 (시간)	직업상담사 (취업전담교사 혹은 취업지원관)	
	비전제시	◇ 직업의 소중함과 재취업에 대한 도전 의식 및 자신감 향상 ◇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제시	월 일 (시간)		
4일 차	진로상담 및 설계	◇ 진로상담을 통한 맞춤형 진로 설계 - 인생의 목표와 경로 개발 - 나의 성격에 맞는 직업 찾기 - 10년 후의 자기 미래 모습	월 일 (시간)	취업진로부장	
5일 차	평가 및 계획	◇ 소감문 작성 및 격려 - 복교생 특별교육 소감문 작성 - 재취업을 위한 취업 준비 계획 - 취업 성공을 위한 나의 다짐	월 일 (시간)	담임교사	
※ 교육일정은 학사일정 변경이나 학생 또는 지도교사의 사정에 따라 상호 조정하여 실시함. ※ 단계별로 이수한 후 담당교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최종적으로 취업지원부에 제출함.					

라. 현장실습 운영 교육과정 편성

- 학교와 학생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이 전 학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함.
-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수업방법의 일환으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전문교과Ⅱ의 독립교과목으로 편성하거나, 전문교과Ⅱ 일부에 포함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현장실습을 특정 학기에 집중하여 실시할 경우 해당 학기에 보통교과를 편성하지 않을 수 있고, 보통교과가 편성된 상황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할 경우 해당 보통교과에 대한 이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교과Ⅱ의 이수는 현장실습 이수로 대체 가능함.
- 현장실습을 교육과정(교과)에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현장실습 결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포함시켜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대해 평가함.
- 현장실습 기간의 실무과목(능력 단위) 성적처리 방법
 - 현장실습으로 인해 평가하지 못한 능력 단위는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인정점을 부여하여 실무과목에 대한 성적을 처리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 상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입력함.
- 1학년(2025년 기준)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총론 해설서,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근거하여 운영함.
-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이수 여부, 실습 기간을 해당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입력함.

마.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가입

- 현장실습 업무담당자는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가입함.
- 계정 권한 관리자를 반드시 선정(또는 관리자 권한 인계)하고 업무담당자 권한을 부여함.

제2장

기업 발굴 및 사전 방문

[업무 요약표]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교사 (취업담당 교사 혹은 취업지원 관)	가. 현장실습 기업 발굴 ◦ 기업에 문의하여 기본 정보를 확인함. 나. 현장실습 기업 사전 방문 ◦ 기업체에 방문하여 현장실습 가능 여부를 확인함. 다. 현장실습 기업의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 ◦ 기업의 4대 사회보험 가입을 확인함. ◦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를 작성함. 라. 현장실습 기업 적합성 검토 ◦ 전공적합도, 교육과정의 연계성, 안전확보 등 현장실습 가능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함. 마.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의 인정 ◦ 광주광역시교육청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인정 절차에 따름. ◦ 체불사업주 DB 및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기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자료 2 참 관창은 중소기업 목록 자료 3 청년친화 강소기업 목록 서식 1 산업체 방문조사 카드
 관리자	◦ 담당교사 기업체 방문 출장 시 적극 협조, 지원함.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 참여함.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최종 승인함.	
 기업	◦ 학교에 기업의 기본 정보를 공유함(현장실습(채용) 의뢰서, 회사 시설, 사업자등록증 등).	서식 2 현장실습(채용) 의뢰서
 노무사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 참여함. ◦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와 기업을 지원함.	

[세부 운영 내용]

가. 현장실습 기업 발굴

- 학교(광주광역시교육청)는 우수기업 및 강소기업 DB, 중앙취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현장실습 대상 산업체를 발굴하고, 기업의 기본정보*를 확인해야 함.

* 기업 기본정보: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업형태, 업종, 주소 및 홈페이지, 주요 생산품, 근로자 현황, 유해기업 사업장 여부 등

- 참 관찰은 중소기업 DB(www.smes.go.kr/gsmb) 접속 → [기업찾기] → [조건별 기업 검색] → [검색결과 다운로드] 활용
- 중앙취업지원센터 고졸만JOB(job.kosaf.go.kr) 접속 → [고졸채용공고], [현장실습 및 취업체], [현장실습지도]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접속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 [관광] →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활용
- 기업정보조회 서비스(크레포트, 크레탑 등)에서 기업 검색을 통한 신규 기업 발굴
- 지자체(시·도청) 일자리센터 활용
- 취업담당교사, 취업지원관 적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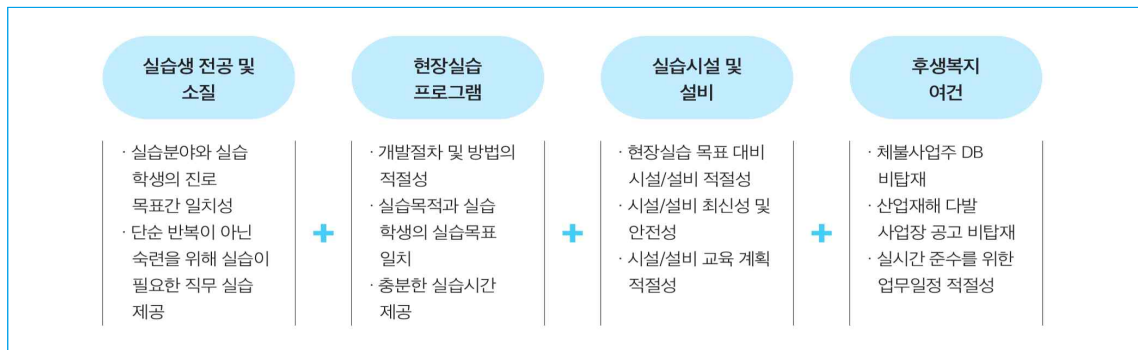
기업 발굴 절차

회사정보 확인 및 채용 담당자 확인 → 학교 및 방문자 소개 → 직업계고 고졸사원 채용 의지 확인 → 기업 혜택 소개 → 현장실습 채용 연계 및 진행 절차 안내, 적합성 검토 등 →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작성

서식 1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나. 현장실습 기업 사전 방문

- 학교(광주광역시교육청)는 현장실습 기업 발굴 시 안전한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안전 매뉴얼」을 비롯한 각종 안전교육 교재 및 자료를 현장실습 기업에 제공하여 기업의 담당자 및 기업현장교사가 현장실습 운영과 교육이 가능한지 파악해야 함.



- 학교(광주광역시교육청)는 발굴한 기업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직무 내용, 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시설·설비, 실습 여건 등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하고, 산업체 방문조사 카드를 작성함(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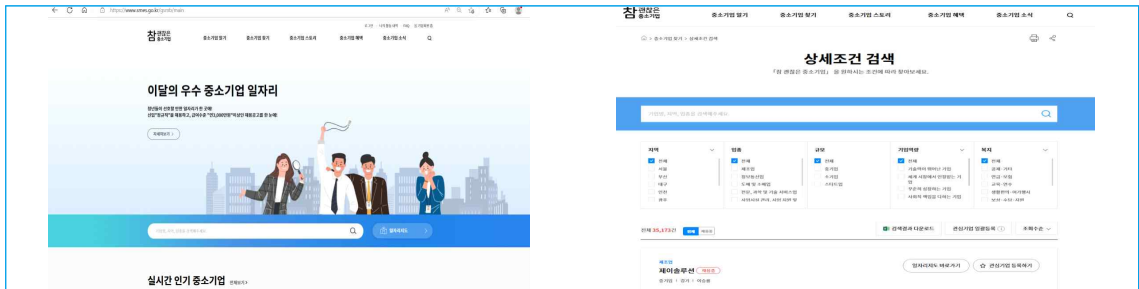
서식 1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 작성된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는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 제출하여 현장실습 기업 적합성 검토의 근거자료로 활용함.
- 현장실습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학교(광주광역시교육청)로 현장실습을 의뢰할 수 있음. **서식 2** 현장실습(채용) 의뢰서

• 학교(교사)와 노무사의 역할 구분

구분	학교	노무사	
현장실습 전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가능 기업 발굴 • 대상 기업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방문 현장실사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등 참석 • 실습 직전 특별교육
	점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의사 확인 •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 취득,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근무 환경 및 여건 관련 적격성 판단 • 기업의 산업 안전, 권익보장 여부 점검
	문서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현장실사 점검결과표 • 산업안전점검결과표(공통·세부)
현장실습 중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지도 • 상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코칭(참여·선도기업)
	점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근태와 건강 상태 • 기업(현장교사)의 교육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관련 제반 규정 준수 • 기업·현장실습생 만족도 조사
	문서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기업코칭 점검결과표 • 산업안전점검결과표(유해 업종만)

자료 2 참 관참은 중소기업 목록(www.smes.go.kr/gsmf/)



자료 3 청년 친화 강소기업 목록(www.work24.go.kr)



자료 4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관광숙박업 등록 현황(www.mcst.go.kr)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interface fo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main heading is '관광' (Tourism). Below it, there is a table titled '2024년 기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Tourism Accommodation Registration Status as of 2024). The table contains the following information:

게시일	2025.03.16.	조회수	328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1)	담당자	강지홍
붙임파일	1. 24년 12월 31일 기준 관광숙박업 통계(최종) 공개용.xlsx 미리보기 2. 24년 12월 31일 기준 관광숙박업(호텔, 휴양콘도) 등록현황(최종) 공개용.xlsx 미리보기		

Below the table, a note states: '2024년 기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files for the 2024 tourism accommodation registration status.)

서식 1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산업체명							
주소	본사						
	실습장						
사업자등록번호						상시 근로자수	명
업태						종목	
4대 사회보험 가입 상황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다발기업 여부	아님[]	해당[] 내용:					
유해사업장 여부	아님[]	해당[] 내용:					
채용담당자	성명					연락처	
	부서					직위	
	이메일					팩스	
현장실습 및 채용 이력	없음[]	있음[] 내용:					
현 장 실 습							
산업체 자체 교육프로그램 유무	없음[]	있음[] 교육내용:					
직무내용	직무분야 [NCS 24개 분야]			직무내용			
자격 요건							
현장실습 예정 인원							
현장실습 기간	0000년	월	일	~	0000년	월	일
주 5일 교육 확인	Y <input type="checkbox"/>	/	N <input type="checkbox"/>	주 2일 휴무일:		요일	요일
현장실습 합계	총			일	시간(1일 기준)		
현장실습 수당 지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월/일/시 _____원)			부지급	<input type="checkbox"/>	수당 지급일	일
현장실습 지원	산재보험 적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용, <input type="checkbox"/> 미적용					
	중식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미제공				실습생 부담:	
	실습재료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미제공				실습생 부담:	
	기숙사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실습생 부담:	
통근버스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실습생 부담:		
현장실습 후 채용 전환 계획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취 업							
채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기타[] 내용:				
채용 직무							
채용 조건	근무시간						
	근무요일					휴무일	
	급여					원 / 월	
	일학습병행제[]				중식[]		
	산업지원병역일터[]				기숙사[]		
계약학과[]				통근버스[]			
후학습 지원[]				수당[]			
채용 준비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학교장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사본[]			기타[]		
방문자	성명					연락처	
방문일	2000년	월	일				

서식 2

현장실습(채용) 의뢰서(예시)

현장실습(채용) 의뢰서

회사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설립 일자	
업태			종목	
주요 사업 내용			홈페이지	
자본금			연매출액	억 원
직원 수	명 (생산직 근로자 수 명) 남: 명, 여: 명			

채용 담당자	부서		전화	
	직책		Fax	
	성명		휴대폰	
			E-Mail	

모집 직종	생산직군(지원 부서 포함)		모집인원	남: 명, 여: 명		
근무부서			모집 희망 학과	0000과	남(), 여()	
직무내용 (구체적)				0000과	남(), 여()	
				0000과	남(), 여()	
				0000과	남(), 여()	
근무 형태	주 5일(), 주 6일(), 격주 토요일(), 기타()		자격요건 (우대자격)	관련분야 자격()		
근무 시간	() 주간 / 야간(주간 근무) 주·야간교대(없음)		접수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타()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0), 고용보험(0), 산재보험(0), 건강보험(0)					
실습 수당 및 급여	실습 수당	시급 / 월급 ()원			상 여	%
	급여	시급 / 월급 / 연봉 ()원				
근로 조건	인턴 여부		유(개월), 무()			
	실습 종료 후 취업 전환 여부		유(), 무()			
	병역특례 기업 지정 여부		유(), 무()			
	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스(), 중식 제공()			
	회사교통편(대중교통)					
기타 요구사항						

요청일: 년 월 일
회사명: (직인)

다. 현장실습 기업의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

- 학교는 현장실습생의 보호를 위해 기업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에 기록해야 함(현장실습 중에는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
- 학교는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함.

라.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개최 및 현장실습 기업 적합성 검토

- 전공 적합도 및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가능 여부(기업교육환경 안전성, 기업 교육프로그램 및 기업현장교사 유무, 취업 연계 가능성,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해당 유무, 진로계발 경로 등)를 확인하여 기업체를 발굴함.
- 전공 적합도 인정 여부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서 결정함.
- 기존 현장실습 기업의 경우 학기 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자체진단 평가에서 현장실습생의 만족도 평가를 반영하여 차기 학년도 기업체 적합성을 심의하여 재지정할 수 있음.


마.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의 인정


- 참여·선도기업은 학교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인정 절차에 따름.
-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체불사업주 DB 및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공고를 확인 후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을 고려하여 선정함.
 - 유해기업 사업장(산재다발, 임금체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정보 확인
 - ▷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 [참여(선도) 기업] → [유해기업 현황] 메뉴에서 유해기업 여부 확인
 - 체불사업주 DB: moel.go.kr 접속 → [정보공개] 탭 클릭 → [체불사업주명단공개] 메뉴 클릭
 - 산업재해 사업장 공고: moel.go.kr 접속 → [정보공개] 탭 클릭 → [사전정보 공표 목록] 메뉴 클릭 →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클릭 후 '2000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첨부파일에서 산업재해정보 확인

제3장

참여·선도기업 선정

[업무 요약표]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교사	<p>가. 현장실습 기업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학생의 실무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안전한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참여·선도기업 선정의 적합성을 심의함.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심의된 기업을 참여기업과 선도기업 (후보) 대상 분류, 결정함. <p>나. 현장실습 기업 선정 시 필수 구비서류(‘세부 운영 내용’ 참조)</p> <p>다.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인정 및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선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선도기업(후보)을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록 및 신청 후 심사 대기함. 현장실습 참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서는 참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하여 현장실습 실시함.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선정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정보 제공 및 기업 발굴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기업 등록 및 노무사 현장실사 요청 사전 현장실사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 참여·선도기업 승인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 기존 참여·선도기업 관리 현장실습 운영 계획 설명회 개최 및 희망 학생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운영 계획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참여기업과 선도기업을 구분하여 기업정보 제공 및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설명함. 현장실습 희망 학생 모집 	<p>자료 5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선정·인정 절차</p> <p>서식 3 현장실습 선도기업 신청서</p> <p>서식 4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p>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p>- 기업별 희망 학생을 모집함(가정통신문, 설문조사 등).</p> <p>마. 현장실습 기업-학생 매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수요 조사를 토대로 현장실습 직무내용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방문 과정 등을 거쳐 기업-학생을 매칭함. ※ 기업-학생간 선발의 투명성, 학생 준비 사항 지도 등 기타 매칭 준비 사항을 고려해야 함.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교사의 출장 업무를 지원함. ◦ 채용설명회 등 학생 모집 업무를 지원함. ◦ 현장실습 진행 과정을 지속적 모니터링 및 최종 승인함.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 점검 준비함. ◦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학교와 공동으로 개발함.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기본교육 자료를 준비함. ◦ 기업 소개서, 직무기술서 등 현장실습생에게 안내해야 하는 자료를 준비함. ◦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위험성 평가 및 위험물 취급 관련 자료를 준비함. ◦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함. ※ 기업은 학교의 현장실습 현장실사에 협조해야 하며, 현장 실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선 사항을 현장실습에 적극 반영해야 함. 	
 노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사회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배정 학교를 확인함. ◦ 학교 담당교사와 연락망을 유지함. ◦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 참여함. ◦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선정 심의에 참여함. ◦ 현장실습 사전 현장실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정보 확인 및 현장실습 희망 기업을 선택함. (인터넷 검색, 견학, 기업현장교사 또는 취업담당교사 면담 등) ◦ 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및 면접을 준비함. ◦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회원 가입함. (아이디, 비밀번호 등 확인) 	

[세부 운영 내용]

가. 현장실습 기업 선정

- 현장실습생의 실무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을 갖춘 현장실습 기업을 선정함.
-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기업 중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심의를 통해 우수한 실습 여건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기업을 '선도기업'이라 하며, 그 외 기업은 '참여기업'이라 함.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학생의 실무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안전한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참여·선도기업 선정의 적합성을 심의함.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심의된 기업을 참여기업과 선도기업(후보) 대상으로 분류, 결정함.
- 참여기업은 학교의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선도기업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각각 최종 승인함.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의 비교]

구분	선도기업	참여기업
인정 주체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선정 절차	현장실사 →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지원위원회 심의	현장실사 →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심의
현장실습 운영 기간	1주(5일) ~ 3개월(60일) ※ 일수는 실습일을 기준으로 함.	
사전 현장실사	필수	
학생 순회지도	필수	
노무사 기업 코칭	필수	선택
취업 전환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단, 4주(실습일 기준 20~25일) 이상의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후	3학년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후

-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시기
 - (참여기업) 현장실습 참여기업 사전 현장실사 점검결과표를 충족하는 기업에서 5일 이상의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3학년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후부터 취업 전환 가능함.
 - (선도기업) 현장실습 선도기업 사전 현장실사 점검결과표를 충족하는 기업 중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4주(실습일 기준 20~25일) 이상 실시한 경우는 취업 연계를 위해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전환 가능함.
- ※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졸업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전에 선도기업으로 취업 전환하는 경우 4주(실습일 기준 20~25일) 이상 현장실습을 참여 후 취업 전환(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가능

나. 현장실습 기업 선정 시 필수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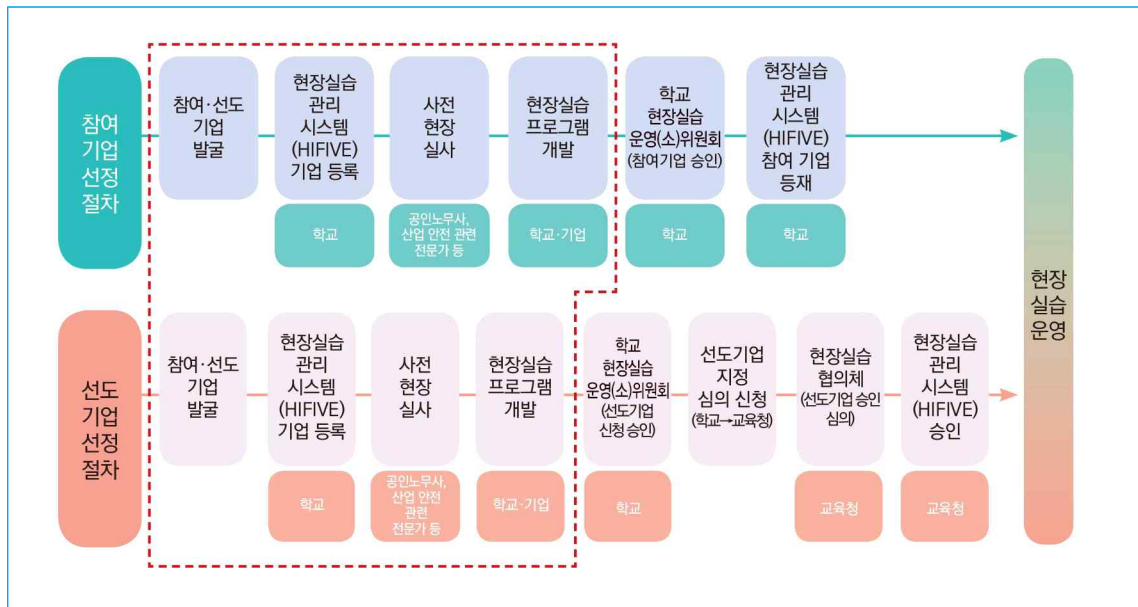
- ① 산업체 방문조사 카드 **서식 1**
- ② 현장실습 선도기업 신청서 **서식 3** (참여기업은 참여기업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음.)
- ③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서식 4**
- ④ 학교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회의록
-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 ⑥ 기업의 4대 보험 가입증명원

※ ①~⑥ 은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서류는 학교 자처에 보관함

다.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인정 절차

-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의 승인은 기업정보 제공 및 기업 발굴,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기업 등록 및 노무사 현장실사 요청, 사전현장 실사,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 현장실습 운영(소)위원회의 참여·선도기업 심의,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 기존 참여·선도기업 관리 순서로 진행됨.

자료 5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선정·인정 절차



※ 참여기업으로 지정·운영 중인 산업체를 선도기업으로 지정 추진하는 경우, 선도기업 선정 절차 중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의 선도기업 신청 승인 절차부터 추진함.

1) 기업정보 제공 및 기업 발굴

- 정부부처는 관장은 기업에 대한 정보 및 세부 현황 등을 제공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지원위원회는 지역 협약기업 및 기업 정보를 제공함.
* 지방 고용청, 중기청, 지자체 일자리센터, 지역 인자위(ISC), 지역 상공회의소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한 기업 발굴
- 학교는 기업 발굴 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서식 1** 를 작성함.
-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를 현장실습 기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함.

2)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기업 등록 및 노무사 현장실사 요청

- 기업등록 - 산업체 방문조사카드 **서식 1** 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탑재함.
- 학교는 학교전담노무사에게 사전 현장실사를 요청함.
- 학교는 선도기업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학교전담노무사의 현장실사종료 후 기업과 상의하여 선도기업 신청서 **서식 3**,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서식 4** 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을 통해 등록하고, 선도기업을 신청함.
※ 단, 참여기업으로 현장실습을 운영 중인 기업이 선도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 하였으므로 생략 가능함.
- 참여기업이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는 학교전담노무사에게 사전 현장실사를 요청함.

[학교 → 학교전담노무사] 사전실사 수행 가능 여부 문의

[학교 → 기업] 사전실사 통보 및 안내

3) 사전 현장실사

- 학교전담노무사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함.
- 학교전담노무사는 유해 위험 업종(건설, 기계, 전기, 화공 등)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대한 산업안전협회 회원 등과 협조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현장실사는 실사진행 노무사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1주 이내 완료하고 사전 현장실사 점검결과표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해야 하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주가 만료되기 전에 학교에 알리고 협의해야 함.
※ 학교전담노무사는 본인이 사전 현장실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공인노무사회 또는 지역별 대표 노무사와 상의 하여 대체 실시하여 1주 이내 완료해야 함.
-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사전 현장실사 점검결과표를 참여·선도기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지원위원회는 사전 현장실사 점검결과표를 선도기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함.
- 현장실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협조하여 실시하며, 교사 동행 없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음.



● 현장실습 참여·선도 기업의 현장 실사 준비 사항

- 기업현장교사 지정
 - 기업현장교사의 자격은 ①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 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위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현재 근로자 명부 준비,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준비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입문(의무)교육 자료 준비
- 기업소개서, 직무기술서 등 현장실습생 안내 자료 준비
-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 사전 현장실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실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선 사항을 현장실습에 적극 반영해야 함.



● 사전 현장실사 배정 절차

- 1) (학교⇒학교전담노무사) 사전 현장실사 수행 가능 여부 문의
- 2) (학교⇒기업) 사전 현장실사 통보 및 안내
- 3) (학교전담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또는 대표노무사) 학교전담노무사의 일정 수행 불가 시
 - 수도권 지역 학교: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노무사 배정 요청
 - 수도권 외 지역 학교: 대표노무사에게 노무사 배정 요청
 - 유해 위험 업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직원 또는 회원 배정 요청
- 4) (한국공인노무사회 또는 대표노무사⇒배정된 노무사) 가능한 자를 매칭하여 안내
- 5) (노무사⇔기업) 사전 현장실사 수행

4)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

- 학교와 기업은 인력양성유형 및 전공 적합성을 분석하고, 현장실습을 통한 학습계획을 수립함.
- 학교 및 기업의 개발 책임자는 학교와 기업이 공동 개발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에 각각 서명·날인함.
※ 학교 및 기업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에게 각각 5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
- 학교는 현장실습 선도기업 신청서 **서식3** 를 확정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서식4** 와 함께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함.

5) 참여·선도기업 심의·인정

-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사전 현장실사 점검결과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참여·선도기업 적절성 여부를 심의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는 현장실습 시작 최소 2주전까지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을 통해 교육청에 선도기업을 신청해야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지원위원회는 선도기업 신청서, 산업체 방문조사 카드, 사전 현장실사 점검 결과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선도기업 적절성 여부를 심의함.
※ 선도기업 지정에 있어 10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고용노동부 위험성 평가 인정 여부를 확인 후 심의에 활용함.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의 경우,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고용노동부 학습기업 지정심사 서류에 근거하여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학교는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참여기업을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현장실습지원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선도기업을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서 승인함.

6) 기존 참여·선도기업 관리

-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기존 참여기업과 선도기업의 현장실습 적합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 가능성 여부를 검토함.
- 선도기업은 최초 지정 연도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별도 지정 취소가 없는 한 3년간 자격을 유지함.
※ 예) 2025학년도에 지정된 선도기업은 2027학년도까지 선도기업 자격을 유지함.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선도기업의 자격 유지 만료 시점과 현장실습 계속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도기업 심의·인정 절차를 통해 자격 유지 만료 전 선도기업을 재선정 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매년 현장실습 실시 전 공인노무사의 사전 현장실사를 포함한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함.
- 학생의 현장실습 만족도, 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지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실습 환경 및 산업안전의 안전성이 미흡하거나 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 등으로 선도기업 인정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학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인정 취소를 요청함.

서식 3 현장실습 선도기업 신청서

□ 산업체 일반 현황			
기업명			
소재지	본사		
	실습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업형태	
주 업종		주 생산품	
대표자명		대표번호	
자본금, 매출액, 신용평가 등급 등	기업의 재무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적으로 작성		상시 근로자 수
회사 개요	※ 기업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사업자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작성 • • •		
□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			
담당자(직위)			연락처
현장실습 분야	NCS 분야(24개)		
현장실습생 주요 직무	*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 • • •		
현장실습 기간 (일/시간)	(예시) 20일, 140시간	현장실습 수요인원	명
현장실습 후 채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전원 채용, <input type="checkbox"/> 일부 채용(%)		
□ 신청교 관련 사항			
관련 학과(전공)			
담당자	연락처	유선전화	
		핸드폰	
비고 (요청 사항, 참고 사항 등)			
위와 같이 0000학년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위한 선도기업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00. 00. ○○ 고등학교장 (직인)			

서식 4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기업명				
소재지	본사			
	실습장			
기업현장교사				
현장실습 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일)		
현장실습 제외일/기간(사유)		0일 / 2000. 00. 00. ~ 2000. 00. 00. (사유:)		
직무분야		NCS 대분류(24개)		
실습직무 및 주제		NCS 세분류		
현장실습 목표				
현장실습 시간 편성	구분	내용영역(능력단위)	입문교육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의무교육	• •		/
	NCS능력단위	•		
	기업특화교육	•		
	평가	•		수시
	총시간			
기업현장교사 지도방식		<input type="checkbox"/> 1:1 전담 <input type="checkbox"/> 비전담 1:n	비전담 지도 사유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서명
학교 담당 교사				
기업담당자				

※ 프로그램 개발비는 학교 담당 교사 1명과 기업 담당자 1명에게 각각 지급할 수 있음.

□ 현장실습 요구분석

학교 분석			
학과(전공)		재학생 현황	00명
졸업 후 주요 진출분야			
관련 교과목		관련 NCS 능력단위	
현장실습 필요직무 (NCS능력단위)			

기업 분석			
기업명		대표자	
재직자 수		연매출액	
주요 업종		수행직무	NCS 세분류
현장실습 활용 주요시설 및 기자재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내용			
현장실습 가능 직무* (NCS능력단위 및 기업특화)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을 참고하여 작성

□ 현장실습 운영 및 평가 계획

현장실습 목표				
구분	내용 영역(능력단위)	방법	입문교육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의무교육				
NCS 능력단위				
기업특화교육				
평가			수 시	
교육 시간 합계				
총 현장실습 시간				

*NCS 능력단위 혹은 기업특화 직무능력

※ 입문교육 시간은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으로 편성해야 함(단, 의무교육 12시간 이상 포함하여 운영).

※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은 현장실습 시작과 함께 실시하여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작업장 내에서 직무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 기업현장교사와 현장실습생은 1:1 지도를 원칙으로 함.

현장실습 평가서

소속	OO고등학교 OO과 0반 00번					이름			
평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득점	* 평가항목의 배점항에 ○표 하고 득점란에 기재 총점:()/100	
현장실습 과제수행		10	9	8	7	6	/40		
		10	9	8	7	6			
		10	9	8	7	6			
		10	9	8	7	6			
태도		10	9	8	7	6	/30		
		10	9	8	7	6			
		10	9	8	7	6			
안전관리		10	9	8	7	6	/30		
		10	9	8	7	6			
		10	9	8	7	6			
평가준거	- 매우 우수: 평가 항목을 아주 잘 수행한/발휘한 수준 - 우수: 평가 항목을 잘 수행한/발휘한 수준 - 보통: 평가 항목을 보통 수준으로 수행한/발휘한 수준 - 미흡: 평가 항목을 약간 수행한/발휘한 수준 - 매우 미흡: 평가 항목을 전혀 수행하지/발휘하지 않은 수준								
출결	결 근 일 수	일					/100	총점:()/100	
* 1일 결근마다 10점씩 감점. 단, 증빙서류가 첨부된 병결은 감점하지 않음. *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회는 결근 1일로 처리									
기간	2000 . . . ~ 2000 . . .								
총평									
현장실습 산업체: 평가자 직위: 성명: (인)									

OO고등학교장 귀하

라. 현장실습 운영계획 설명회 개최 및 희망 학생 모집

- 학교는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함.
 - 현장실습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체 탐방,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기업 및 직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
 - 학생에게 현장실습 참여 방법, 협약체결, 현장실습 참여 수당, 순회지도, 복고 등 현장실습 절차 전반에 대해 사전에 안내함.
- 현장실습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교사 또는 취업지원관의 도움을 받아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면접을 진행함.
- 면접은 기업담당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교사 또는 취업지원관, 학생이 기업에 방문하여 진행함.

마. 현장실습 기업-학생 매칭

- 학교는 현장실습 기업에서 수행할 직무 내용과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기업-학생을 매칭해야 함.
 - 기업 견학, 기업 현장 교사와의 면담, 직장 적응(체험) 프로그램 등 학생들이 기업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함.
 - 기업-학생 매칭 후 사전 교육을 실시함.
 - 안전사고 및 권익 침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교육함.
- 학교는 기업-학생 매칭 시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함.
 - 기업 기본정보, 직무 내용, 현장실습 기간, 기업현장교사 배치, 현장실습 수당, 복리후생 등의 실습 여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함.
 - 학생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서류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바.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

- 학교, 기업, 학생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함.
- 기업은 기업현장교사를 배치하고 현장실습생이 단독으로 근무하거나 안전보건상의 위험 또는 건강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리·운영해야 함.
-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학교는 현장실습 모니터링 및 실태 점검을 할 수 있음.
 -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전문기관 공조

Q&A

참여·선도기업의 등록

Q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참여 및 선도기업 신청 시 학교에서 등록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록 및 선도기업 신청 시 학교에서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록해야 하는 서류는 ①, ②, ③입니다.

- ① 산업체 방문조사 카드 **서식 1**
- ② 현장실습 선도기업 신청서 **서식 3** (참여기업은 참여기업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음.)
- ③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서식 4**
- ④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회의록
-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 ⑥ 기업의 4대 보험 가입증명원

(광주광역시교육청)①~⑥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록하고, 관련서류는 학교 자체에 보관함

참여·선도기업의 선정 기준

Q 참여·선도기업 선정 기준은 시·도 교육청 마다 다른가요?

A 참여기업은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선도기업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지원위원회에서 선정 하며, 기준은 해당 시·도 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과 현장실습생 권익보호에 대한 사전 현장실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으로 모든 기업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참여·선도기업 심의

Q 다른 학교 또는 타 시·도 교육청에서 참여·선도기업으로 승인된 기업에 동일한 직무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에 별도로 심의·선정 과정이 필요한가요?

참여기업의 경우 다른 학교에서 등록한 기업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에도 우리 학교의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배치되는 직무, 학생의 전공 등 실습 여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전 현장실사는 당해 연도에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A 선도기업의 경우 타 시·도 교육청에서 승인을 이미 받은 기업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현장실습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승인을 이미 받은 선도기업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심의, 사전 현장실사를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Q&A

선도기업 승인

Q 정부부처와 지자체 선정 우수기업은 선도기업으로 자동 승인되나요?

A 예외 없이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도기업 심의

Q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선도기업 신청을 했는데, 심의가 완료되기 전에 현장실습을 진행해도 되나요?

A 선도기업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참여기업으로서 현장실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의 심의는 받아야 합니다.

제4장

현장실습 요구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 요약표]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p>교사</p>	<p>가. 현장실습 요구 분석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졸업 후 주요 진출 분야 및 현장실습 필요 직무 등 현장실습 요구분석(학교용)을 작성함. <p>나.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과 공동으로 실습 기간 중 학생들이 수행할 직무수행 내용 또는 과업을 분석하고, 이를 기업과 협의하여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함. 산업체에서 수행할 직무내용을 전문교과Ⅲ(기초과목, 실무과목)를 활용하여 실습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체화함. 프로그램 개발 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발한 현장교육 훈련 표준모델 참고·활용 가능함.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등 기업 자체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이를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함.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 교사는 완성된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에 서명함. <p>다.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서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를 심의함.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함. 	<p>자료 6 현장교육훈련 표준모델</p> <p>자료 7 공업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1주일 예시)</p> <p>자료 8 상업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1개월 예시)</p> <p>자료 9 농업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2개월 예시)</p> <p>자료 10 가사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3개월 예시)</p>
 <p>관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심의에 참여함. 	
 <p>기업</p>	<p>가. 현장실습 요구 분석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인적·물적 여건, 현장실습 운영 경험 및 내용(학습자 요구 등), 현장실습 지도 가능 직무 등 현장실습 요구분석(기업용)을 작성함. <p>나.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와 공동으로 실습 기간 중 학생들이 수행할 직무수행내용(또는 과업)을 협의하여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구성함.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는 완성된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에 서명함. 	

[세부 운영 내용]

가. 현장실습 요구분석 실시

현장실습 요구 분석은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및 졸업 후 주요 진출 분야 및 현장실습 필요 직무를 분석하고, 참여기업에서는 현장실습 지도 가능 직무 및 인적·물적 여건, 학습자 요구 등을 분석하는 단계임.

- 학교는 전문교과II와 관련된 교과와 내용을 분석하여 이 중 현장실습 필요 직무를 확인하고, 기업은 수행 직무와 현장실습 지도 가능 직무 및 내용을 확인함.
- 현장실습 요구 분석(학교용)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NCS 능력단위)에서 현장실습 필요 직무(NCS 능력단위)를 선택하여 작성함.
- 현장실습 요구 분석(기업용)에서 수행직무는 NCS 세분류 수준을, 현장실습 가능 직무는 세분류 내 NCS 능력 단위로 작성하고,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경험(운영 횟수, 운영 내용 등)을 기술함.
- 기업 분석의 시설 및 기자재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 중에 활용하는 주요 시설 및 기자재를 작성하고, 현장 실습 가능 직무에는 기업의 여건에 따라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해 NCS 능력 단위의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작성함. 별도의 기업 특화된 직무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작성함.

※ 직무기술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참고(www.ncs.go.kr)

※ 현장실습 가능 직무 선정 방법



NCS 분류 예시(건설 분야)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검색일: 2023, 12, 27). NCS 분류예시.

<https://www.ncs.go.kr/th01/TH-102-001-02.scdo>

→ NCS 분류를 토대로 현장실습 직무 검색: 1)기업의 주요업종 및 수행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선택 → 2)세분류별 세부 능력단위 확인 → 3)능력단위 중 현장실습 가능 직무 선정

나.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 학교와 기업은 현장실습 요구 분석을 토대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전공 교과 교사와 기업 담당자가 공동으로 개발하여야 함.
-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자료 6, 자료 7, 자료 8, 자료 9, 자료 10에 제시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 등을 추가하여 실습기간 중에 학습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화함.
 - ※ 한국산업인력공단 특성학교 현장교육훈련 표준모델 참고 'HIFIVE 홈페이지 → 현장실습 자료실 또는 교육자료실' 게시판 자료 참고
- 전문교과Ⅱ(기초과목, 실무과목)와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내용을 개발함.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참고(www.ncs.go.kr)
- 실습직무 및 주제는 직무기술서상 실습생이 수행할 직무와 가장 유사한 NCS 세분류를 선정함.
- 현장실습 목표는 선정된 NCS 직무 분야의 세분류 개요를 참고하거나, 학교와 기업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서술함.
- 실습 내용은 직무분석 내용을 토대로 직무내용과 유사한 NCS 능력 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습 내용으로 활용하고, 별도의 기업의 특화된 직무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개발함.
- 실습 유형은 크게 ① 입문교육, ② 실무교육(OJT)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입문교육 시간은 전체 실습시간 중 30% 이상으로 편성하고, 현장실습생에게 각 교육 내용별로 적절한 지도 방법과 시간을 설정함.
 - ① 입문교육: 현장실습 기업 및 업무소개, 의무교육, 직무기본교육(NCS, 기업특화) 등 실무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적응지도 과정임.
 - ※ 입문교육 시간은 전체 실습 시간 중 30% 이상으로 편성하고,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12시간 이상 필수로 배정되어야 함.
 - ② 실무교육(OJT): 실무교육(OJT)은 70% 이내로 편성하며, 직무와 관련된 전문 내용으로 일을 직접 현장에서 수행하고 관찰하면서 배우는 과정임.
- 실습 기간은 학교, 기업, 학생이 협의하여 학생의 성취 수준, 기업의 준비 정도,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대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까지 가능함.
 - ※ 단,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도 가능 **서식 5**
-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기준으로 작성을 권장하며 상호 합의에 의해 하루 1시간 연장가능함
- 현장실습 평가서는 현장실습 중 학습한 내용에 대해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서식 14**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평가 방법은 현장실습생이 실습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는 적절한 평가 방법으로 전공 교사와 기업 담당자가 협의하여 작성함.
 - ※ 평가 방법 예시 : 포트폴리오, 문제 해결 시나리오, 서술형 시험, 논술형시험, 시뮬레이션,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수행평가, 일지/저널, 작업장평가, 기타 등

서식 5 현장실습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현장실습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체험형 연계교육형 채용형)

□ 현장실습 기관 일반 현황

기업명(기관명)		해당 여부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부서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소재지	본사		
	실습장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 수	
기업(기관) 담당자명		연락처	

□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

현장실습 NCS 직무분야 (현장실습 과정명)			
대상자명		대상자 수	명
현장실습 기간 연장	변경 전	2000. 00. 00. ~ 2000. 00. 00.(60일)	
	변경 후	2000. 00. 00. ~ 2000. 00. 00.(00일)	
	연장 사유		

□ 신청학교 관련 사항

신청학교명		연락처	사무실	
담당자명			휴대폰	
비고 (요청사항, 참고사항 등)				

위와 같이 2000. 학년도 현장실습 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2000. 00. 00.

○○ 고등학교장 (직인)

자료 6 현장교육훈련 표준모델

유형	교육 내용															
오리엔 테이션 / 의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적인 조직 이해 및 업무 이해에 대한 내용, 조직의 문화 및 조직 적응에 대한 내용 등 •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입문교육은 주로 ① 조직에 대한 이해, ② 일에 대한 이해, ③ 사람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테마를 기본으로 구성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① 조직에 대한 이해</th> <th colspan="2">② 일에 대한 이해</th> </tr> <tr> <th style="width: 25%;">회사 개관</th> <th style="width: 25%;">경영 환경</th> <th style="width: 25%;">관련 제도</th> <th style="width: 25%;">업무 이해</th> <th style="width: 25%;">업무 기본</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 중심 가치 - 연혁 - 조직도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 업계 이해 - 업계 위치 - 전망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제도 - 복리후생 - 교육체계시스템 - 각종 규정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업무 투어 - 사업장 이해 - 직무 이해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등 규정 - 기안 등 문서 작성 </td> </tr> </tbody> </table>	① 조직에 대한 이해			② 일에 대한 이해		회사 개관	경영 환경	관련 제도	업무 이해	업무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 중심 가치 - 연혁 - 조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 업계 이해 - 업계 위치 -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제도 - 복리후생 - 교육체계시스템 - 각종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업무 투어 - 사업장 이해 - 직무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등 규정 - 기안 등 문서 작성
	① 조직에 대한 이해			② 일에 대한 이해												
	회사 개관	경영 환경	관련 제도	업무 이해	업무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 중심 가치 - 연혁 - 조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 업계 이해 - 업계 위치 -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제도 - 복리후생 - 교육체계시스템 - 각종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업무 투어 - 사업장 이해 - 직무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등 규정 - 기안 등 문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위주의 내용으로 직무 및 조직 적응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화된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40%;"> 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 안전사고 예방 -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실습생이 안전한 실습환경에서 실습 유도 - 장애인 인식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직장 예절 및 직업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조직 적응력 교육</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사업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조직 적응력 향상 - 주요 사업 분야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소개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무 기본 역량 교육</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직무 기본 역량 배양 - 문서 작성 등 직무 공통 역량도 함께 배양 필요 </td> </tr> </tbody> </table>	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 안전사고 예방 -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실습생이 안전한 실습환경에서 실습 유도 - 장애인 인식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직장 예절 및 직업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조직 적응력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사업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조직 적응력 향상 - 주요 사업 분야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소개 	직무 기본 역량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직무 기본 역량 배양 - 문서 작성 등 직무 공통 역량도 함께 배양 필요 										
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 안전사고 예방 -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실습생이 안전한 실습환경에서 실습 유도 - 장애인 인식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직장 예절 및 직업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조직 적응력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사업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조직 적응력 향상 - 주요 사업 분야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소개 															
직무 기본 역량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직무 기본 역량 배양 - 문서 작성 등 직무 공통 역량도 함께 배양 필요 															
실무 교육 (OJ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된 전문 내용(기술 습득) 등 • OJT(직무현장교육)는 일을 직접 현장에서 수행하고 관찰하면서 배우는 것임. • 기업현장교사의 시범과 직무 수행 과정을 관찰하고 수행함으로써 실습생들이 실질적인 직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기업현장교사의 멘토링을 통해 기본적인 직무 능력과 업무 태도를 체득할 수 있도록 운영함. 															

개인정보보호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②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 1~ 2회 수행 권고 ③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④ 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사건·사고 발생 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또는 2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산업안전보건 교육		
내용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및 제29조 ② 매 반기마다 실시(연 2회) ③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일부 업종 제외) ④ 교육 실시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원칙적으로 각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6개월 이내 교육 실시 ⑥ 교육의무 제외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교육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정기교육	사무직종사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 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최초 작업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②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 1회 이상(최소 1시간 이상) ③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등 포함) ④ 교육 실시 의무 위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용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②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 1회 이상(최소 1시간 이상) ③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등 포함) ④ 교육 실시 의무 위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⑤ 이미 교육을 실시했어도 신입사원, 휴가자, 휴직자 복직 등 교육 재실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내용	① 「근로기준법」 제93조 ②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 1회 이상(최소 1시간 이상) ③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등 포함) ④ 교육 실시 의무 위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 사항으로 미준수 시 과태료 처분

다. 기업현장교사의 배치 및 역할

- 전공지식·기술을 현장에서 경험·적용할 수 있도록 학생과 동일한 작업장(사무실) 내의 현장전문가를 아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함.
 - 기업현장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음(아래 자격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훈련지도 유경험자
 - ②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③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 ④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실습생의 실습 시간 중 동일한 사무실(작업장) 내에서 교육과 안전관리를 전담해야 하며, 현장실습생에게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넘어짐, 떨어짐, 끼임, 절단·베임·찔림 등의 산재 예방 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함.
 - 현장실습생 1명당 기업현장교사 1명 지정(1:1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업현장교사 1명이 현장실습생 여러 명을 지도할 수 있음.
- 특히 기계·전기·화공·건설 분야 등 위험 요소가 많은 작업(끼임, 추락, 절단, 감전, 중량물 부딪힘 등)인 경우에는 절대 현장실습생이 독자적으로 실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기업현장교사를 1:1로 배치해야 함.

- 배치된 기업현장교사가 급한 용무로 자리를 비울 시 다른 직원을 대체하여 배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든 현장실습생이 독자적으로 실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1인 기업 등 직원 수가 적어 배치된 기업현장교사가 급한 용무로 자리를 비울 시 현장실습생을 전담할 수 없는 기업은 현장실습 불가
 - ※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산정 시 동시 지도 최대 2명까지만 인정
 - ※ 기업현장교사에게 지급되는 기업현장교육 지원금의 신청 절차 및 신청 서류는 한국장학재단의 '현장실습 기업 현장교육 지원' 업무처리 기준 참고

라.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심의

-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학교(학과) 전공 적합성, 입문교육 및 실무교육 내용, 기업현장교사의 배치 등 적절성을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서 심의함.

자료 7 공업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 (1주일 예시)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기업명		OO기업		
소재지	본사	OO시 OO구 000로 1234		
	실습장	□□시 □□구 □□□□로 1234		
기업현장교사(직위)		확정 후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함.		
현장실습 기간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5일)		
현장실습 제외일/기간(사유)		없음		
직무 분야		정보통신(20)		
실습직무 및 주제		무선통신망 구축		
현장실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선통신망에 대한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장애 방지책을 수립하고 조치할 수 있다. 		
현장실습 시간 편성	구분	내용 영역(능력 단위)	입문교육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및 업무 개요 소개 실습 일정 안내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13	
	NCS 능력 단위	무선통신망구축 유지보수 (2002020310_21v3)	1	21
	평가	실습 항목별 과정평가 및 결과평가	수시	
	총시간	35		
기업현장교사 지도 방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 전담, <input type="checkbox"/> 비전담 1:n	비전담 지도 사유	-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서명
학교 담당 교사	OO공업고등학교	010-0000-0000	김OO	
기업담당자	OO기업	010-0000-0000	박OO	

※ 프로그램 개발비는 학교 담당 교사 1명과 기업담당자 1명에게 각각 지급할 수 있음.

□ 현장실습 요구 분석

학교 분석			
학과(전공)	정보통신	재학생 현황	00명
졸업 후 주요 진출분야	통신설비설치 및 수리원		
관련 교과목	정보통신	관련 NCS 능력 단위	• 무선통신망구축 유지보수 (2002020310_21v3)
현장실습 필요직무 (NCS 능력 단위)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 무선통신망 구축 운용		

기업 분석			
기업명	00기업	대표자	박00
재직자 수	00명	연매출액	00원
주요 업종	통신업,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수행 직무	무선통신망 구축
현장실습 활용 주요 시설 및 기자재	측정 장비(오실로스코프, 파워미터, 디지털 멀티미터, 스펙트럼분석기, 신호발생기, 네트워크분석기), 감쇠기, 케이블, 무선통신시스템 시험 틀 프로그램, 안전 장비, 공구 등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운영 3년 동안 지속 • 실제 무선통신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하는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어, 무선통신망 구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함. 		
현장실습 가능 직무* (NCS 능력 단위 및 기업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능력 단위: 무선통신망 구축 장비 발주, 무선통신망 시험, 무선통신망 구축 운용지원,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준비,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5G 액세스 네트워크 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을 참고하여 작성

□ 현장실습 운영 및 평가 계획

현장실습 목표	• 무선통신망에 대한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장애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영역(능력 단위)	방법	입문교육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및 업무 개요 소개 실습기업 현장 견학 실습 일정 안내 	강의/견학	1	
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2	
NCS 능력단위	•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2002020310_21v3)	강의/실습	1	21
평가	• 과제수행(태도, 안전관리 포함) 과정 결과평가	작업장 평가 평가자 질문	수시	
교육 시간 합계			14	21
총 현장실습 시간			35	

* NCS 능력 단위 혹은 기업특화 직무 능력

※ 입문교육 시간은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으로 편성해야 함(단, 의무교육 12시간 이상 포함하여 운영).

※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은 현장실습 시작과 함께 실시하여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작업장 내에서 직무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 기업현장교사와 현장실습생은 1:1 지도를 원칙으로 함.

□ 현장실습 프로그램 평가표

현장실습 평가서

소속	OO고등학교 OO과 0반 00번					이름				
평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득점	* 평가항목의 배점함에 ○표 하고 득점란에 기재 총점: ()/100		
현장실습 과제수행	무선통신망 유지 보수 계획 수립	10	9	8	7	6	/40			
	무선통신망 유지 보수	10	9	8	7	6				
	무선통신망 장애 방지 대책 수립	10	9	8	7	6				
	무선통신망 장비 장애 조치	10	9	8	7	6				
태도	성실성, 책임감	10	9	8	7	6	/30			
	협동심	10	9	8	7	6				
	사규 및 직장 예절 준수	10	9	8	7	6				
안전관리	안전관리 숙지	10	9	8	7	6	/30			
	안전 수칙 이행	10	9	8	7	6				
	장비 및 기구 정돈	10	9	8	7	6				
평가준거	- 매우 우수: 평가 항목을 아주 잘 수행한/발휘한 수준 - 우수: 평가 항목을 잘 수행한/발휘한 수준 - 보통: 평가 항목을 보통 수준으로 수행한/발휘한 수준 - 미흡: 평가 항목을 약간 수행한/발휘한 수준 - 매우 미흡: 평가 항목을 전혀 수행하지/발휘하지 않은 수준									
출결	결근 일수						일	/100	총점: ()/100	
* 1일 결근마다 10점씩 감점. 단, 증빙서류가 첨부된 병결은 감점하지 않음. *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회는 결근 1일로 처리										
기간	2000 . . . ~ 2000 . . .									
총평										
현장실습 산업체: 평가자 직위: 성명: (인)										

OO고등학교장 귀하

자료 8 상업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 (1개월 예시)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기업명		OO기업		
소재지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로		
	실습장	□□시 □□구 □□□□로 1234		
기업현장교사(직위)		확정 후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함.		
현장실습 기간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20일)		
현장실습 제외일/기간(사유)		2일/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지필고사)		
직무분야		경영·회계·사무(02)		
실습직무 및 주제		사무행정, 회계·감사		
현장실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이나 부서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로 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고, 전표작성 및 증빙서류를 처리하고,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며, 결산예비절차와 각 계정을 정리하고 장부를 마감할 수 있다. 		
현장실습 시간 편성	구분	내용 영역(능력 단위)	입문교육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및 업무 개요 소개 실습 일정 안내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15	
	NCS 능력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작성(0202030201_22v3) 자료관리(0202030203_22v4) 전표관리(0203020101_20v4) 자금관리(0203020102_20v4) 결산처리(0203020104_23v5) 	25	85
	기업특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ERP 그룹웨어 활용 	5	10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 항목별 과정평가 및 결과평가 	수시	
	총시간	140		
기업현장교사 지도 방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 전담, <input type="checkbox"/> 비전담 1:n	비전담 지도 사유	-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서명
학교 담당 교사	OO상업고등학교	010-0000-0000	김OO	
기업담당자	OO기업	010-0000-0000	박OO	

※ 프로그램 개발비는 학교 담당 교사 1명과 기업담당자 1명에게 각각 지급할 수 있음.

□ 현장실습 요구 분석

학교 분석			
학과(전공)	경영·금융	재학생 현황	OO명
졸업 후 주요 진출 분야	회계 및 경리사무원, 회계사, 은행출납사무원		
관련 교과목	회계·사무행정	관련 NCS 능력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관리(0202030202_22v3) • 사무행정 업무 관리(0202030207_22v4) • 사무환경 조성(0202030208_22v4) •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0202030209_22v2) • 원가계산(0203020103_20v4) • 회계정보시스템 운용(0203020105_20v4)
현장실습 필요직무 (NCS 능력 단위)	문서작성, 자료관리, 전표관리, 자금관리, 결산처리		

기업 분석			
기업명	OO기업	대표자	이OO
재직자 수	OO명	연매출액	OO원
주요 업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수행직무	사무행정, 회계·감사
현장실습 활용 주요 시설 및 기자재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팩시밀리, 빔 프로젝터, 화이트보드, 문서작성 소프트웨어, 스프레드시트/자료 베이스 프로그램, 통계 분석 패키지 프로그램 등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운영 4년 동안 지속 • 각종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업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사무 행정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기업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학습한 학생을 희망함. 		
현장실습 가능 직무* (NCS 능력 단위 및 기업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능력 단위: 문서작성, 문서관리, 자료관리, 회의 운영, 사무 행정 업무 관리, 사무환경 조성,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그룹웨어 활용, 경영 정보 시각화, 전표 관리, 자금관리, 원가계산, 결산 처리, 회계정보시스템 운용, 회계감사, 사업결합 회계, 비영리회계, 원가 관리, 재무제표작성, • 기업특화: ERP 그룹 웨어 활용, ERP 프로그램 업무 접수 및 안내, ERP 프로그램 내·외부 처리 절차 이해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을 참고하여 작성

□ 현장실습 운영 및 평가 계획

현장실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이나 부서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로 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고, 전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처리하고,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며, 결산 예비 절차와 각 계정을 정리하고 장부를 마감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영역(능력 단위)	방법	입문교육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및 업무 개요 소개 실습기업 현장 견학 실습 일정 안내 조직 적응력 및 직무기본역량 근로기준법(권익보호) 교육 	강의/견학	3	
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12	
NCS 능력단위	• 문서작성(0202030201_22v3)	강의/실습	6	20
	• 자료관리(0202030203_22v4)	강의/실습	4	15
	• 전표관리(0203020101_20v4)	강의/실습	6	20
	• 자금관리(0203020102_20v4)	강의/실습	4	15
	• 결산처리(0203020104_23v5)	강의/실습	5	15
기업 특화교육	• ERP 그룹웨어 활용	강의/실습	5	10
평가	• 과제수행(태도, 안전관리 포함) 과정 결과 평가	수행평가 평가자 질문	수행평가	
교육 시간 합계			45	95
총 현장실습 시간			140	

*NCS 능력 단위 혹은 기업특화 직무 능력

※ 입문교육 시간은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으로 편성해야 함(단, 의무교육 12시간 이상 포함하여 운영).

※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은 현장실습 시작과 함께 실시하여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작업장 내에서 직무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 기업현장교사와 현장실습생은 1:1 지도를 원칙으로 함.

□ 현장실습 프로그램 평가표

현장실습 평가서

소속	OO고등학교 OO과 0반 00번					이름				
평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득점	* 평가항목의 배점항에 ○표 하고 득점란에 기재 총점: ()/100		
현장실습 과제수행	문서작성, 자료관리	10	9	8	7	6	/40			
	전표관리	10	9	8	7	6				
	자금관리, 결산처리	10	9	8	7	6				
	ERP 그룹웨어 활용	10	9	8	7	6				
태도	성실성, 책임감	10	9	8	7	6	/30			
	협동심	10	9	8	7	6				
	사규 및 직장예절 준수	10	9	8	7	6				
안전관리	안전관리 숙지	10	9	8	7	6	/30			
	안전수칙 이행	10	9	8	7	6				
	장비 및 기구 정돈	10	9	8	7	6				
평가준거	- 매우 우수: 평가 항목을 아주 잘 수행한/발휘한 수준 - 우수: 평가 항목을 잘 수행한/발휘한 수준 - 보통: 평가 항목을 보통 수준으로 수행한/발휘한 수준 - 미흡: 평가 항목을 약간 수행한/발휘한 수준 - 매우 미흡: 평가 항목을 전혀 수행하지/발휘하지 않은 수준									
출결	결근 일수						일	/100	총점: ()/100	
	* 1일 결근마다 10점씩 감점. 단, 증빙서류가 첨부된 병결은 감점하지 않음. *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회는 결근 1일로 처리									
기간	2000 . . . ~ 2000 . . .									
총평										
현장실습 산업체: 평가자 직위: 성명: (인)										

OO고등학교장 귀하

자료 9 농업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 (2개월 예시)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기업명		OO기업		
소재지	본사	경기도 화성시 OO로		
	실습장	□□시 □□구 □□□□로 1234		
기업현장교사(직위)		확정 후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함.		
현장실습 기간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40일)		
현장실습 제외일/기간(사유)		없음		
직무 분야		농림어업(24)		
실습직무 및 주제		채소 재배, 시설 원예		
현장실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소 품목별 재배 계획에 따라 재배시설 설치 및 관리, 수경재배 준비 및 관리를 실시하여 품질 좋은 채소 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 시설을 통해 재배하는 원예작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내 생육환경을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다. 		
현장실습 시간 편성	구분	내용 영역(능력 단위)	입문교육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및 업무 개요 소개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19	
	NCS 능력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소 재배시설 설치(2401010316_16v3) 채소 재배시설 관리(2401010317_22v4) 채소 수경재배 준비(2401010318_16v3) 시설원예 시설설치(2401010803_17v1) 시설원예 시설관리(2401010804_23v2) 시설원예 복합환경관리(2401010805_17v1) 시설원예 수경재배관리(2401010806_17v1) 	49	161
	기업특화교육	스마트팜 장비 운영 및 정비	16	35
	평가	실습 항목별 과정평가 및 결과평가	수시	
	총시간	280		
	기업현장교사 지도 방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 전담, <input type="checkbox"/> 비전담 1:n	비전담 지도 사유	-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서명
학교 담당 교사	OO고등학교	010-0000-0000	장OO	
기업 담당자	OO기업	010-0000-0000	김OO	

※ 프로그램 개발비는 학교 담당 교사 1명과 기업 담당자 1명에게 각각 지급할 수 있음.

□ 현장실습 요구 분석

학교 분석			
학과(전공)	농수산학	재학생 현황	OO명
졸업 후 주요 진출 분야	농림어업직 > 작물재배 종사자		
관련 교과목	시설원예	관련 NCS 능력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소재배관리(2401010314_22v4) 채소 재배시설 설치(2401010316_16v3) 채소 재배시설 관리(2401010317_22v4) 채소 수경재배 준비(2401010318_16v3) 채소 수경재배 관리(2401010319_16v3) 채소 병해 관리(2401010320_22v4) 채소 충해 관리(2401010321_16v3) 시설원예 시설설치(2401010803_17v1) 시설원예 시설관리(2401010804_23v2) 시설원예 복합환경관리(2401010805_17v1) 시설원예 수경재배관리(2401010806_17v1) 시설원예 병해충관리(2401010807_23v2) 시설원예 생리장해관리(2401010808_17v1)
현장실습 필요 직무 (NCS 능력 단위)	채소 재배시설 설치, 채소 재배시설 관리, 채소 수경재배 준비, 시설원예 시설설치, 시설원예 시설관리, 시설원예 복합환경관리, 시설원예 수경재배관리		

기업 분석			
기업명	OO기업	대표자	이OO
재직자 수	OO명	연매출액	OO원
주요 업종	채소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수행 직무	채소 재배, 시설 원예
현장실습 활용 주요 시설 및 기자재	온실, 수경재배 시스템, 온실 환경 제어 프로그램, 펌프, 여과기, 각종 양액 살균기, 전자밸브, 양액 혼합기, pH 측정기, EC 측정기, 환경 계측기, 기포 발생기, 베드가온 및 냉각기, 기타 수경재배 장치, 토양 함수율/염류농도 측정기, 복합환경관리 시스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운영 경험 2회 작물 재배 중 채소 재배를 중점적으로 현장 실습할 수 있어, 채소 재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함. 		

현장실습 가능 직무* (NCS 능력 단위 및 기업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능력 단위: 채소재배포장관리, 채소생리장해관리, 채소수확관리, 채소재배장비자재관리, 채소육묘준비, 채소 정식 포장관리, 채소포장제초퇴비사용, 채소 재배시설 설치, 채소 재배시설 관리, 채소 수경재배 준비, 채소 수경재배 관리, 시설원에 시설설치, 시설원에 시설관리, 시설원에 복합환경관리, 시설원에 수경재배관리, 시설원에 병해충관리 • 기업특화: 스마트팜 장비 운영 및 정비
---	--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을 참고하여 작성

□ 현장실습 운영 및 평가 계획

현장실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 품목별 재배 계획에 따라 재배시설 설치 및 관리, 수경재배 준비 및 관리를 실시하여 품질 좋은 채소 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 • 시설을 통해 재배하는 원예작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내 생육 환경을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영역(능력 단위)	방법	입문교육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및 업무 개요 소개 • 실습기업 현장 견학, 실습 일정 안내 • 조직 적응력 및 직무기본역량 • 근로기준법(권익보호) 교육 	강의/견학	7	
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의	12	
NCS 능력단위	• 채소 재배시설 설치(2401010316_16v3)	강의/실습	7	23
	• 채소 재배시설 관리(2401010317_22v4)	강의/실습	7	23
	• 채소 수경재배 준비(2401010318_16v3)	강의/실습	7	23
	• 시설원에 시설설치(2401010803_17v1)	강의/실습	7	23
	• 시설원에 시설관리(2401010804_23v2)	강의/실습	7	23
	• 시설원에 복합환경관리(2401010805_17v1)	강의/실습	7	23
	• 시설원에 수경재배관리(2401010806_17v1)	강의/실습	7	23
기업특화 교육	• 스마트팜 장비 운영 및 정비	강의/실습	16	35
평가	• 과제수행(태도, 안전관리 포함) 과정 결과 평가	체크리스트 작업장 평가 평가자 질문	수시	
교육 시간 합계			84	196
총 현장실습 시간			280	

*NCS 능력 단위 혹은 기업특화 직무능력

※ 입문교육 시간은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으로 편성해야 함(단, 의무교육 12시간 이상 포함하여 운영).

※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은 현장실습 시작과 함께 실시하여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작업장 내에서 직무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 기업현장교사와 현장실습생은 1:1 지도를 원칙으로 함.

□ 현장실습 프로그램 평가표

현장실습 평가서

소속	00고등학교 00과 0반 00번					이름					
평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득점				
현장실습 과제수행	채소 재배시설 설치 및 관리 채소 수경재배 준비	10	9	8	7	6	/40	* 평가항목의 배점함에 ○표 하고 득점란에 기재 총점:()/100			
	시설 원예시설 설치 및 관리	10	9	8	7	6					
	시설원에 복합환경관리 시설원에 수경재배관리	10	9	8	7	6					
	스마트팜 장비 운영 및 정비	10	9	8	7	6					
태도	성실성, 책임감	10	9	8	7	6	/30				
	협동심	10	9	8	7	6					
	사규 및 직장 예절 준수	10	9	8	7	6					
안전관리	안전관리 숙지	10	9	8	7	6	/30				
	안전수칙 이행	10	9	8	7	6					
	장비 및 기구 정돈	10	9	8	7	6					
평가준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우수: 평가 항목을 아주 잘 수행한/발휘한 수준 - 우수: 평가 항목을 잘 수행한/발휘한 수준 - 보통: 평가 항목을 보통 수준으로 수행한/발휘한 수준 - 미흡: 평가 항목을 약간 수행한/발휘한 수준 - 매우 미흡: 평가 항목을 전혀 수행하지/발휘하지 않은 수준 										
출결	결근 일수					일	/100	총점:()/100			
<p>* 1일 결근마다 10점씩 감점. 단, 증빙서류가 첨부된 병결은 감점하지 않음.</p> <p>*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회는 결근 1일로 처리</p>											
기간	2000 . . . ~ 2000 . . .										
총평											

현장실습 산업체: 평가자 직위: 성명: (인)

00고등학교장 귀하

자료 10 가사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3개월 예시)

구분		내용		
기업명		○○베이커리		
소재지	본사	경기도 화성시 ○○로		
	실습장	□□시 □□구 □□□□로 1234		
기업현장교사(직위)		*확정 후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함.		
현장실습 기간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60일)		
현장실습 제외일/기간(사유)		3일/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지필고사)		
직무 분야		식품가공(21)		
실습직무 및 주제		제과, 제빵		
현장실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가치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과자류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과자류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고객가치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빵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빵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장실습 시간 편성	구분	내용 영역(능력 단위)	입문교육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및 업무 개요 소개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16	
	NCS 능력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자류제품 생산작업준비(2102010112_18v2) 과자류제품 재료혼합(2102010102_18v4) 과자류제품 반죽정형(2102010103_18v4) 과자류제품 반죽익힘(2102010104_18v4) 과자류제품 포장(2102010105_23v4) 빵류제품 생산작업준비(2102010213_18v2) 빵류제품 반죽발효(2102010203_18v4) 빵류제품 반죽정형(2102010204_18v4) 빵류제품 반죽익힘(2102010205_18v3) 빵류제품 마무리(2102010206_18v3) 	100	260
	기업특화교육	기업 특화 제품 생산	10	34
	평가	실습 항목별 과정평가 및 결과평가	수시	
	총시간	420		
기업현장교사 지도 방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 전담, <input type="checkbox"/> 비전담 1:n	비전담 지도 사유	-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서명
학교 담당 교사	OO고등학교	010-0000-0000	장OO	
기업담당자	OO베이커리	010-0000-0000	최OO	

※ 프로그램 개발비는 학교 담당 교사 1명과 기업담당자 1명에게 각각 지급할 수 있음.

□ 현장실습 요구 분석

학교 분석				
학과(전공)	제과·제빵	재학생 현황	OO명	
졸업 후 주요 진출분야	제과·제빵원			
관련 교과목	제과제빵 이론, 식품학, 위생학, 제빵 실습, 제과 실습, 데커레이션 실습 등	관련 NCS 능력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자류제품 생산작업준비(2102010112_18v2) • 과자류제품 재료혼합(2102010102_18v4) • 과자류제품 반죽정형(2102010103_18v4) • 과자류제품 반죽익힘(2102010104_18v4) • 과자류제품 포장(2102010105_23v4) • 빵류제품 생산작업준비(2102010213_18v2) • 빵류제품 반죽발효(2102010203_18v4) • 빵류제품 반죽정형(2102010204_18v4) • 빵류제품 반죽익힘(2102010205_18v3) • 빵류제품 마무리(2102010206_18v3) 	
현장실습 필요직무 (NCS 능력 단위)	과자류제품 생산작업 준비, 과자류제품 재료 혼합, 과자류제품 반죽 정형, 과자류제품 반죽익힘, 과자류제품 포장, 빵류제품 생산작업준비, 빵류제품 반죽발효, 빵류제품 반죽정형, 빵류제품 반죽익힘, 빵류제품 마무리			

기업 분석			
기업명	OO베이커리	대표자	강OO
재직자 수	OO명	연매출액	OO원
주요 업종	식품가공	수행 직무	제과, 제빵
현장실습 활용 주요 시설 및 기자재	가열 기구, 냉장고, 냉동고, 작업대, 온도계, 각종 제과 도구, 저울, 산도(pH) 측정기, 수분 측정기, 당도계, 염도계 등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첫 운영 • 제과와 제빵을 둘 다 실습할 수 있어 두 직무에 모두 관심 있는 학생을 희망함. 		
현장실습 가능 직무* (NCS 능력 단위 및 기업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능력 단위: 과자류제품 생산작업준비, 과자류제품 재료혼합, 과자류제품 반죽정형, 과자류제품 반죽익힘, 과자류제품 포장, 빵류제품 생산작업준비, 빵류제품 반죽발효, 빵류제품 반죽정형, 빵류제품 반죽익힘, 빵류제품 마무리 • 기업특화: 기업 특화 제품 생산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을 참고하여 작성

□ 현장실습 운영 및 평가 계획

현장실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가치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과자류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과자류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 고객가치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빵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빵을 생산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영역(능력 단위)	방법	입문교육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및 업무 개요 소개 • 실습기업 현장 견학 • 실습 일정 안내 • 조직적응력 및 직무기본역량 • 근로기준법(권익보호) 교육 	강의 / 견학	4	
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강의	12	
NCS 능력단위	• 과자류제품 생산작업준비(2102010112_18v2)	강의/실습	8	20
	• 과자류제품 재료혼합(2102010102_18v4)	강의/실습	12	30
	• 과자류제품 반죽정형(2102010103_18v4)	강의/실습	12	35
	• 과자류제품 반죽익힘(2102010104_18v4)	강의/실습	10	25
	• 과자류제품 포장(2102010105_23v4)	강의/실습	8	20
	• 빵류제품 생산작업준비(2102010213_18v2)	강의/실습	8	20
	• 빵류제품 반죽발효(2102010203_18v4)	강의/실습	10	25
	• 빵류제품 반죽정형(2102010204_18v4)	강의/실습	12	35
	• 빵류제품 반죽익힘(2102010205_18v3)	강의/실습	10	25
	• 빵류제품 마무리(2102010206_18v3)	강의/실습	10	25
기업특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특화 제품 생산 	강의/실습	10	34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수행(태도, 안전관리 포함) 과정결과 평가 	포트폴리오 작업장 평가	수시	
교육 시간 합계			126	294
총 현장실습 시간			420	

*NCS 능력 단위 혹은 기업특화 직무 능력

※ 입문교육 시간은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으로 편성해야 함(단, 의무교육 12시간 이상 포함하여 운영).

※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은 현장실습 시작과 함께 실시하여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작업장 내에서 직무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 기업현장교사와 현장실습생은 1:1 지도를 원칙으로 함.

Q&A

프로그램 개발

Q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 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A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기간은 최대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 이상 가능합니다.

직무 분석

Q 현장실습 요구분석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A 현장실습 요구분석을 위하여 현장교육훈련 표준모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HIFIVE 홈페이지 → 현장실습 자료실 또는 교육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개발

Q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는 반드시 NCS 능력 단위가 편성되어야 하나요?

A NCS 능력 단위가 아니더라도 전공 적합성을 고려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업특화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익명 처리

Q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업로드할 때,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익명 처리할 수 있나요?

A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김O호' 등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실습 장소 변경 신청




Q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현장실습 장소가 다를 경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등록 시 기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는 실제 실습 장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와 실제 현장실습 장소가 다른 이유가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하며, 불합리할 경우 복교 등 학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5장

사전교육 실시

[업무 요약표]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p>교사</p>	<p>가. 사전교육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권익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근로계약서 작성법, 실습생의 책임·의무·권리 등의 사전교육 실시를 권장함. ◦ 학생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12차시를 필수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함. ◦ 현장실습에 나가는 것을 앞둔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직전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함. <p>나. 교사 연수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및 권익보호에 대한 지도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이수함. <p>다. 현장실습 전 교육 자료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기간 중 활용 가능한 산업안전 매뉴얼, 근로기준법 (권익보호) 교육 자료 등을 학생에게 지급함. 	<p>자료 11 안전보건교육 관련 정보</p> <p>자료 12 산업안전보건 교육 온라인 연수</p>
 <p>관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교육을 승인 및 운영 관리함. 	
 <p>노무사 (산업안전 전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 직전 특별교육을 실시함. 	

[세부 운영 내용]

가. 사전교육 실시

-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권익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근로계약서 작성법, 실습생의 책임·의무·권리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함.
- 그 외 '성공적인 직업생활', 창의적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권익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사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함.
- 학생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12차시)」을 필수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함.
 - ※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평가점수 60점 이상 취득자에 한해 수료 인정
- 곧 현장실습에 나갈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직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함.
 - 실습직전 특별교육 유형은 총 3개이며, 학생은 그중 한 과정 이상 필수로 수강해야 함.
 - 실습직전 특별교육 유형
 - 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알림서비스-미디어센터-동영상-현장실습 직전 특별교육 1~4
 - ② 학교전담노무사 방문 특별교육
 -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자료 11

나. 교사 연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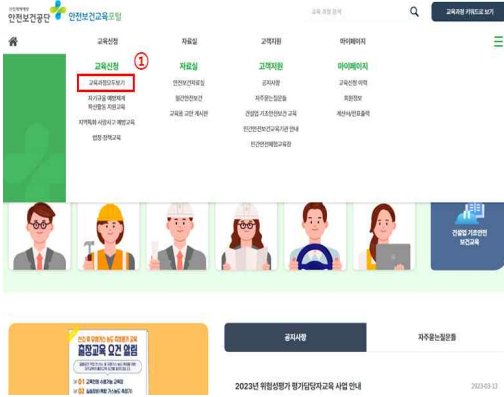
- 현장실습을 담당하는 교사는 산업안전보건 및 권익보호에 대한 지도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연수에 적극 참여해야 함. 자료 12


자료 11 안전보건교육 관련 정보

- **교육 대상** :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 **교육 시기** : 담당교사와 교육 일정 협의
- **교육 신청방법** :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headquater/)을 통한 신청

안전보건교육 포털 접속 후
[교육신청] - [교육과정 모두 보기]

교육과정 선택 매뉴얼에서 **[과정선택]** - **[교육신청]**
‘예비산업인력 안전보건교육(특성화고)(대면)’
※ 교육신청을 위한 인증절차 수행 필요





자료 12 산업안전보건 교육 온라인 연수(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과정안내

나의 연수

연수도움방

연수원소식

연수원소개

나의 연수

- 수강신청
- 수강과정
- 법정의무연수
- [교원]마이크로러닝
- 이수증발급
- 나의 문의
- 관심목록
- 다시 볼 강의
- 나의 학습이력

수강신청

홈 > 나의 연수 > 수강신청

원격

산업안전보건교육



- 교육/과정구분
- 교육비
- 신청기간
- 교육기간/교육일
- 총차시/기수
- 학습여부
- 수강인원/모집인원
- 강의만족도

원격과정 (상시)

무료

2025.01.14 ~ 2025.12.21

2025.01.14 ~ 2025.12.21 / 342인

4차시 / 1기 (인정시간 : 4시간)

비합숙

1,301 / 무제한

★★★★★ (194)

| 학습자료: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www.neti.go.kr/) → [나의강의실] → [수강신청]

자료 13 기업 의무교육 활용 자료

교육 내용	산업안전 보건교육	영상 QR코드	 산업안전보건교육1	 산업안전보건교육2
			영상 ①	영상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영상 QR코드		
			영상 ①	영상 ②
	작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영상 QR코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3
		영상 ①	영상 ②	
	개인정보보호 교육	영상 QR코드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2
			영상 ①	영상 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영상 QR코드		
			영상 ①	영상 ②

Q&A

현장실습 요구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현장실습 실시 전에 학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무엇인가요?







현장실습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12차시)' 과 '실습직전 특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실습직전특별교육'은 ① 현장실습 관리시스템(HIFIVE) 온라인 교육, ② 학교 전담노무사 방문교육,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3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중 한 과정 이상을 현장실습 시작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제6장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업무 요약표]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교사	<p>가. 기업 대상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수당 지급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수당을 정확히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함. 현장실습 시작 후 실제 현장실습 수당이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수당은 최저임금의 40% 수준 이상을 지급해야 함(매년 최저 실습수당 금액은 별도 안내). <p>나. 현장실습 협약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실시 전 학교와 기업, 현장실습생의 3자간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함. 현장실습 협약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교육부 고시 제2018-165호) 서식을 활용함.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 이내로 운영함(단,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실습시간 연장 가능하며, 서면 확인 필수).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운영함. 「현장실습표준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협약서 원본을 학교, 기업, 학생이 각각 보관함. <p>다.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과 보호자에게 실습기업에 대한 정보, 실습 내용, 수당 등 현장실습의 주요 내용을 재(再)안내하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를 받음. <p>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에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유의할 것을 당부함. 	<p>서식 6 현장실습표준협약서</p> <p>서식 7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p>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표준협약 승인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날인함.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협약 체결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날인함. 	<p>서식 6 현장실습표준협약서</p>
 노무사 (산업안전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내용 검토함. 	

[세부 운영 내용]

가. 기업담당자에게 현장실습 수당 지급 안내

- 학교는 기업이 현장실습생에게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현장실습 수당은 최저임금의 40% 수준 이상을 지급해야 함(매년 실습 수당 금액은 별도 안내).
 - ※ 기업에서 현장실습 수당으로 최저임금의 40%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 ※ 구체적인 현장실습 수당 계산식은 **Q/A** 111p 참조
- 현장실습이 시작되면 학교는 현장실습생이 기업으로부터 현장실습 수당을 정확히 받았는지 확인하고, 국고 및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현장실습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 ※ '현장실습 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생 개인별로 신청

나. 현장실습 협약 체결

-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기업, 학생은 현장실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 현장실습 협약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교육부고시 제2018-165호)」 서식을 활용함.
- 학교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함.
 - 현장실습 시간, 휴일 및 야간 근로의 금지,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 적용과 「근로기준법」 준용 내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함.
-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 이내로 운영하되, 학교, 기업, 학생이 합의할 경우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실습시간 연장 가능함.
 - ※ 실습시간 연장에 대한 합의사항은 반드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상에 서면으로 처리(구두 합의 불인정)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은 불가하며, 현장실습 기업은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함. **자료 14** 참조

다.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작성

- 학교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실습기업에 대한 정보, 실습내용, 수당 등 현장실습의 주요 내용을 다시 안내하고,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를 받음.
 - 학교는 현장실습 시작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현장실습 및 현장실습 협약 사항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 학생과 학부모의 날인이 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는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록함. **서식 7**

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안내

- 기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하고, 현장실습생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함.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사항에 대한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에 대한 내용은 기업에 필수로 알림.
 -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에 대한 변경 사항(2023.3.30.)을 필수로 알림.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 제26조, 제27조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7. 7. 26., 2018. 3. 27.>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제26조(벌칙) 제9조의2를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2.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다음 각 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 가. 현장실습 기간
 - 나. 현장실습 방법
 - 다. 담당자 배치
 - 라. 현장실습 수당
 - 마. 안전·보건상의 조치
 - 바.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 3. 27.> [본조신설 2016. 2. 3.]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추가 준용사항

1. 일부개정(2023.3.30.) 사항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7조(기능습득자의 보호) 및 각 조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이 추가 준용됨
 *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제116조
2. 일부개정(2023.3.30.) 사항 -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교사)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근로기준법」 준용 조항(일부개정 사항 포함) 해설]

구분	준용 조문	요약	의미·해석	비고
본문	제54조(휴게)	현장실습 4시간마다 30분 이상 현장실습 도중에 휴게시간 부여	계속 실습으로부터 현장실습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 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현장실습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장되어야 함.	기존
	제65조(사용금지)	18세 미만자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 사업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업에서는 18세 미만자를 고용하지 못함.	기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18세 미만자 갱내 근로 금지	갱내는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하며, 호흡기 질환 발생 가능성 등이 높은 장소이므로 18세 미만자 현장실습을 금지함.	기존
	제73조(생리휴가)	여성 현장실습생 청구 시 월 1일 생리휴가 부여	여성 현장실습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월 1회 청구하는 경우에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함.	기존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현장실습생 자유의사에 반하는 실습 강요 금지	경제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이 폭행, 협박, 감금 등 일체의 수단을 이용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실습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추가
	제8조(폭행의 금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써 현장실습생에 대한 폭행 금지	현장실습생의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사고의 발생이나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금지됨.	추가

구분	준용 조문	요약	의미·해석	비고
본문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삼자가 현장실습 계약 관계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금지	직업안정법, 파견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 없는 현장실습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영리로 타인의 현장실습이나 현장실습 계약 관계 존속에 개입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	추가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현장실습생이 공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	현장실습생이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근로시간 중이라도 승인하여야 하고, 다만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됨.	추가
	제36조(금품청산)	현장실습생의 실습 종료 등과 같은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 지급할 의무	현장실습 종료와 같은 현장실습 계약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은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현장실습 지원금 등)을 청산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기일은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음.	추가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현장실습 산업체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현장실습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실습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됨	추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현장실습 산업체 장의 조사 및 기타 조치 의무와 괴롭힘 조사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누구든지 현장실습 산업체 내 괴롭힘을 신고 할 수 있고,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은 신고를 접수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괴롭힘 사실 확인 전, 후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관련자들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추가 ※ 학교장 또는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제77조(기능습득자의 보호)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혹사 하거나 관계없는 업무 종사 금지	도제, 양성공, 수습 등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현장실습생에게 열악한 실습조건으로 사용 하면서 혹사하거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가사 또는 잡무 등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함.	추가
별칙	제107조(별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강제근로, 폭행, 중간착취 발생 시 위반자 제재	제7조, 제8조, 제9조 위반 시 적용(추가)

구분	준용 조문	요약	의미·해석	비고
벌칙	제109조제1항(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금지 위반, 갱내근로 실시 및 금품 청산 위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시 제재	제65조 및 제72 조 위반 시 적용 (기존) 제36조, 제76조의 3제6항 위반 시 적용 (추가)
	제110조제1호(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 미부여 및 공민권 행사 미보장 시 제재	제54조 위반 시 적용(기존) 제10조 위반 시 적용(추가)
	제114조제1호(벌칙)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생리휴가 미보장 및 기능습득자 보호 위반 시 제재	제73조 위반 시 적용(기존) 제77조 위반 시 적용(추가)
	제116조제1항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일정 범위 내 친족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의 제재	제76조의2 위반시 적용(추가)
	제116조제2항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의 괴롭힘 조사실시 의무(제2항), 괴롭힘 확인 시 조치 의무(제5항) 및 조사 관여자 등의 비밀유지 의무(제7항) 위반 시 제재	제76조의3제2항· 제4항·제5항· 제7항위반시 적용 (추가)

서식 6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교육부 고시 제2018-165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_____기관대표(이하 “현장실습기관”이라 한다)와 OO고등학교 _____학생(또는 훈련원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_OO고등 학교장(또는 훈련원장)(이하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상호 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장실습”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며, “현장실습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달리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① 현장실습 기간은 0000년 ____월 ____일부터 ~ 0000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이론 등의 교육훈련의 경우 산업현장시설 내·외부의 별도의 시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현장실습방법 및 절차) ① 현장실습은 교육과정(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현장실습기관”이 “직업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 현장실습계획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필요한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 목적 및 목표, 교육훈련 내용 및 방법, 현장실습담당자, 교육훈련 장소 및 시간, 교육훈련 대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제5조제4호에 따른 산업체 현장실습 담당자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사(또는 직업교육훈련교사)가 참여하는 현장실습협의체를 구성하며, 현장실습협의체는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현장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현장실습생이 적어 현장실습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현장실습기관”과 직접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③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요청 시 매월 1회 이상 “현장실습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출석하여 직업교육훈련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현장실습기관의 의무)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현장실습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할 것
2. 현장실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생”의 신체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현장실습과제를 부여할 것
3.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제공할 것
4.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현장실습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할 것
5.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 결과 드러난 개선 및 변경사항을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6.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7. “현장실습생”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제6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의무)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 협약 내용, 계획, 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교육 내용은 “현장실습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출결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7조(현장실습생의 권리) ①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시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현장실습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할 것
2.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장 질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3.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할 것
4. 현장실습 도중 알게 된 “현장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제9조(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① 현장실습 시간은 주 35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일에 7시간(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 ___일은 ___시간)으로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 2에 따라 1일 7시간 이내, 주당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되,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현장실습 학습 목적에 한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1일 1시간 연장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 비동의

- ② 현장실습 중 휴식시간은 ___분(집체교육훈련 시 1시간당 ___분)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현장실습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현장실습 시간 중 부여하여야 한다.
- ③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 ④ “현장실습기관”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현장실습생 특별보호) ①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 (“현장실습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현장실습기관”은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제72조에 따라 “현장실습생”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생”이 여성인 경우)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결석을 인정해야 한다.

제11조(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 사항을 조치한다.

제12조(재해보상)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다만, “현장실습기관”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

제13조(현장실습 수당 및 용품 등) ① “현장실습기관”은 식비, 교통비, 복지비 등을 포함한 현장실습 수당을 다음과 같이 매월 ___일에 지급한다. 다만,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 일수에 비례하여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 다음 -

■ 0000년 00월 00일부터 ~ 0000년 00월 00일까지 ()원/시간

② 중식의 제공 여부는 “현장실습기관”의 사규 또는 사업장 관행을 준용한다.

③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기간 중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용 공구, **안전보호구**,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4조(복리후생)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15조(현장실습의 평가) “현장실습기관”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게 통보한다.

제16조(포상)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장실습 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현장실습내용의 변경) 현장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려면 “현장실습생”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현장실습계약의 해지) ①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지일 ___일 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다만, “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상황에서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현장실습중단 방지)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 산업체로 “현장실습생”을 알선하는 등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취업)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수료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수료증명서) ① “현장실습생”이 제4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이수 후 “현장실습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요청 시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현장실습기관”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현장실습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현장실습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요청 시 “현장실습생”이 이미 이수한 내용과 기간 등을 기입한 증명서를 “현장실습생”에게 교부한다.

제2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0000. 00. 00.

(현장실습기관) 기 관 명

대표이사 (인)

(현장실습생) 주 소

성 명 (인)

(직업교육훈련기관) 0000 고등학교

교 장 (인)

서식 7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실습 학생	_____과 3학년 ____반 ____번 성명: _____
-------	----------------------------------

현장실습 관련 확인 사항

실습 업체명		연락처	
소재지			
실습 기간	2000. . . . ~ 2000. . . . (총 시간)	연장실습 동의 여부 (1일 1시간 이내)	동의, 비동의
실습 내용			

위 본인과 보호자()는 위의 「현장실습 관련 확인 사항」 및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실습 기간 중 프로그램에 따라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 및 수당(현장실습 지원금 포함) 지급에 동의합니다.

■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 친권자(후견인)로서의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학생의 보호자(또는 학부모, 후견인, 법정대리인)로서 학생이 현장실습과 연계하여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만약 지원금 자격요건 미충족, 허위 작성, 오지급 등 지원금 환수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대상 자격 박탈 및 지원받은 금액의 환수(제재부가금 등 포함)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00년 월 일

학생: (인)

보호자: (인) (학생과의 관계:)

OO고등학교장 귀하

I 전제계단 전직생원의 개역

II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의 개요

III 전제계단 전직생원의 개요

부 록

Q&A

현장실습 실습 기간 기준

Q 현장실습 기간 중 1일 실습시간 최소기준이 있나요?

학교 수업을 대체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므로, 학교 하루 수업 시간인 7시간 실습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장실습생은 일 1시간의 연장실습(근무)만 가능하나 반드시 상호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학생이 원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연장근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1일 7시간 미만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 현장실습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별도의 학습을 하거나, 현장실습 종료 후 부족한 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A

국경일 및 공휴일 현장실습

Q 국경일 및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에도 현장실습이 가능한가요?

국경일 및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에도 현장실습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학생 신분임을 감안하여 국경일 및 공휴일 실습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경일 및 공휴일을 이유로 기업현장교사 없이 현장실습생 단독으로 실습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A

현장실습 수당 지급 방법

Q 기업이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장실습 1일 수당은 [시급 4,900원(2025년 기준) × 1일 실습시간] 으로 계산하며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저 현장실습 수당책정 시 주휴수당을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생은 합의에 의해 일 1시간의 연장실습만 가능하므로 일 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실습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실습생이 결근 또는 조퇴 시, 기업은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A

Q&A

현장실습 수당 산출 방법

Q 기업이 지급하는 현장실습 수당의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저 현장실습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임금의 40% 수준에서 책정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현장실습 수당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 (최저임금)10,030원 × 6일 × 7시간=421,260원(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자 1주일 수준)
- 421,260원×40%=168,504원(최저임금의 40%)
- 168,504원÷5일÷7시간=4,814원

2025년의 경우는 4,900원임

연장실습 수당

Q 합의에 의해 일 1시간의 연장실습을 할 경우 연장 1시간의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근로에 의한 급여가 아닌 실습 수당으로 1.5배를 적용을 하지 않고 시간당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현장실습 표준협약 외 근로계약

Q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현장실습 협약 대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있나요?

국가적 책임하에 우수한 실습 여건을 갖춘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부서관의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A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작성 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현장실습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동시 작성은 불가)


추가적으로 채용을 이유로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부서관 관련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지원위원회의(선도기업 승인) 심의, 취업 전환 시 **공인노무사**의 현장실사에 대한 행정적 절차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전담 노무사의 협조하에 실사가 가능합니다.



제7장

현장실습 운영

[업무 요약표]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교사	<p>가. 현장실습생 기업 도착 및 의무교육 실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시작 당일 학생의 현장실습 기업 도착 여부, 의무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 장소의 안전 확보 여부, 안전 장비 지급 등을 확인함. 실무교육 투입 전 의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함.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함. <p>나. 현장실습 순회지도 및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서 학생이 작성한 현장실습 일지(LMS)를 매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야 함.(단,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필요)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일지 서식 8 를 기업에 작성 요청함. LMS 외 SNS 등을 활용하여 현장실습생을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함. 1개월(실습일 20~25일)에 1회 이상 방문(대면) 순회지도를 실시해야 하며, 1개월(실습일 20~25일) 미만의 현장실습 또한 1회 이상의 순회지도를 실시해야 함.(단, 공공기관은 2개월에 1회는 직접 방문, 1회는 서면 SNS 로 대체 가능(상담기록 보관))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서식 9 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해야 함. 매월 1일 기준으로 현장실습 모니터링 입력사항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전송해야 함(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하며, 광주광역시교육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가능). 기업으로부터 현장실습에 대한 출결일지를 받아 나이스 상에 출결처리 해야 함. 참여기업의 경우 노무사에게 기업코칭을 요청하여 실시할 수 있음. <p>다. 현장실습의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업으로부터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 서식 10 를 받아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를 기업에 통지하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해야 함. <p>라.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협약의 위배 또는 학생의 안전보건 및 권익을 침해할 요 	<p>참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 (HIFIVE) 활용 매뉴얼 참조</p> <p>자료 15 현장실습(취업) 학생 NEIS 출결입력 방법</p> <p>서식 8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일지</p> <p>서식 9 순회지도 결과보고서</p> <p>서식 10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 (예시)</p> <p>서식 11 현장실습 사안 보고서</p> <p>서식 12 현장실습 복교 의견서(예시)</p> <p>예시 8 현장실습 복교 프로그램</p>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p>인이 발생한 경우, 학교는 학교전담노무사와 협력하여 복교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 및 권익 침해 사안이 중한 경우 고용 노동지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거나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함. (광주광역시교육청)학교는 학생이 작업 중 안전상 위험을 감지·인지할 경우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그 상황을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려야 함을 학생에게 안내해야 함. <p>마. 안전사고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발굴 단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어 있어야 함.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 치료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고 안전사고 조치 결과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해야 함. <p>바. 복교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조기 복교하는 학생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회지도 및 결과 보고를 최종 승인함. 방문 순회지도에 대해 현장실습 운영비의 수당을 지급함. 기업의 현장실습 변경합의서를 최종 승인함.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및 권익 침해 사안 발생 시 상급 기관에 즉시 보고함. 	<p>참고 현장실습 운영비 활용</p>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생의 도착 여부를 학교에 알려야 함.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일지 서식8 를 작성하여 매월 말에 학교에 제출해야 함. 실무 투입 전 의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실시 여부를 학교에 알려야 함.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실습생을 지정된 장소에 배치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해야 함. 현장실습에 필요한 안전 장비, 공구, 재료 등을 제공해야 함. 현장실습생에게 최저 현장실습 수당 이상을 지급해야 함. 학교의 순회지도, 노무사의 기업코칭(선도기업 필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지도·점검, 중앙단위의 지도·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순회지도 및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사항은 즉시 시정해야 함.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실습생의 치료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치하고, 학부모와 학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함. 	<p>자료 14 현장실습생 산재 보험 가입 및 수당회계 처리 방법</p> <p>서식 8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일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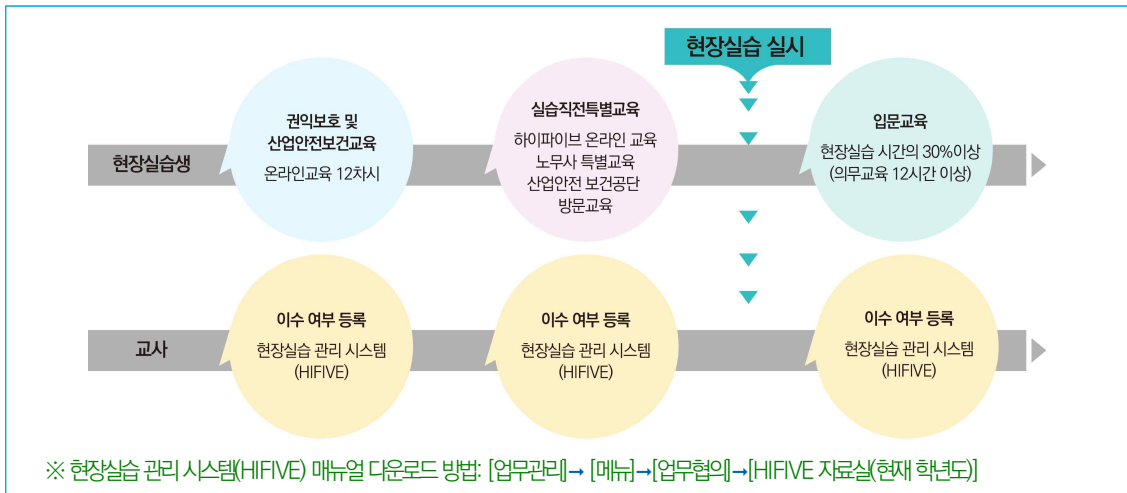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p>노무사 (산업안전 전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기업코칭을 시행한 후 현장실습 기업코칭 점검결과표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지도 등 기업코칭을 기업당 1회 이상 실시함. - 기업코칭 실시 전 학교와 협의하여 실시함. 	
 <p>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일지를 매일 작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LMS에 작성 ◦ 부당대우 발생 시 학교 교사, 학교전담노무사, LMS,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등을 활용하여 상담 및 권익 구제 요청을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본인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여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업의 책임자, 학부모, 학교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림. 	<p>참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 (HIFIVE) 활용 매뉴얼 참조</p>

[세부 운영 내용]

가. 현장실습생 기업 도착 확인 및 입문교육 실시

- 1) 학교는 현장실습 시작 당일 기업으로부터 현장실습생의 도착 여부, 의무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 현장실습생이 기업에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확인함.
 - 전화, SNS 등을 통해 기업 관계자 및 현장실습생으로부터 실습 장소의 위험성 여부, 안전장비 지급 등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함.
 - **실무교육 전에** 의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함.
 - ※ 전체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을 입문교육으로 운영, 이 중 12시간 이상을 의무교육으로 운영해야 함.
- 2) 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실습에 필요한 안전 장비, 도구, 재료 등을 제공해야 함.
- 3) 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최저 현장실습 수당 이상을 지급해야 함.
 -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수당 회계처리 방법 **자료 14**
- 4) 기업은 **실무교육 전에**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의무교육 시행 여부를 학교에 알려야 함.
- 5) 기업은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실습생을 지정된 장소에 배치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교육을 시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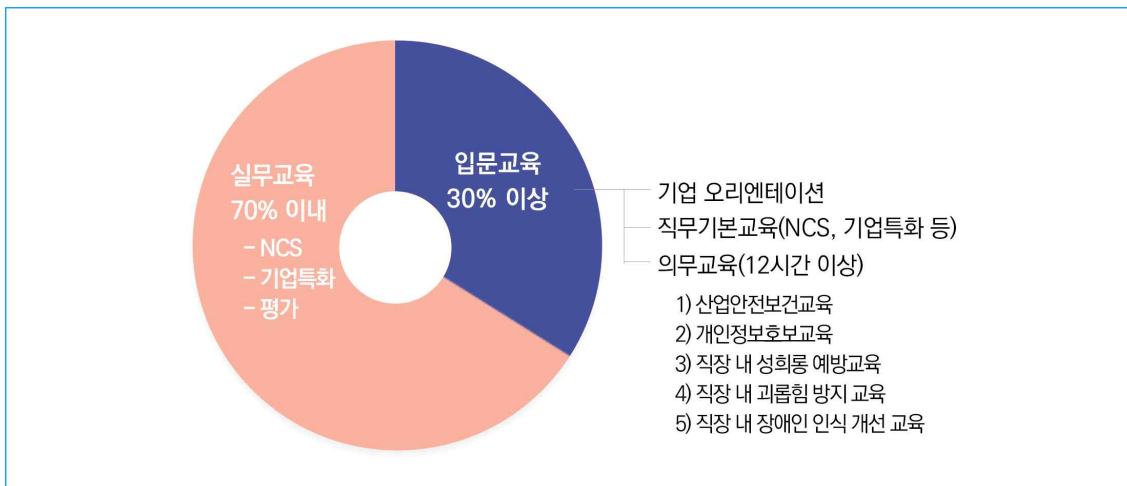
[현장실습생을 위한 필수 안전 교육]



- 입문교육(기업체에서 실시) 시간

입문교육 시간	입문교육 내용
전체 현장실습 시간의 최소 30% 이상을 입문교육 시간으로 확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업체 업무소개, 기업특화교육 •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 12시간 이상

[현장실습생 대상 실무교육과 입문교육 내용 및 시간]



Q&A

현장실습 운영

Q 기업현장교사는 실습시간 동안 항상 현장실습생과 동행해야 하나요?

A 현장실습생과 항상 동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항상 동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1인 기업의 현장실습은 불가합니다. 기업현장교사의 출장, 휴가, 외근 등 부재 시 기업 내 다른 기업현장 교사를 지정하여 동행해야 하며, 현장실습생에 대한 상시적 관찰과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대체 지정된 기업현장교사의 수당은 현장실습 종료 후 정정을 통하여 실제 담당한 기간만큼 각각 '기업현장교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신청

Q 기업현장교사는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기업 현장교사 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기업현장교사는 한국장학재단에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신청 시 현장실습 기업 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기업 현장교사 자격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료 14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수당 회계처리 방법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수당 회계처리 방법

□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방법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음.
-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 >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10501) > 신고자료 검증 / 접수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방법]

근로자 자격취득신고(10501)

사업장관리번호 *		<input type="text" value="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input type="button" value="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수"/>	
보험구분 *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 산재보험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	
사업장명칭		사무대행기관번호	
사무대행기관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p>● 자격취득신고내역 ! 부과구분부호 설명</p>			
연번	신청구분 *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재보험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input type="text" value="실습생 주민번호"/> <input type="button" value="Q"/>	성명 *
	체류자격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button" value="Q"/>	국적
	대표자여부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p>▶ 산재보험 해당내용 입력</p>			
월평균보수(원)*		취득일*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button" value="Q"/>
1주소정근로시간		계약종료년월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button" value="Q"/>
보험료부과구분	부호 <input type="text" value=""/> 선택	사유	<input type="text" value=""/> 선택

□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생 수당 세무·회계 처리

1) 현장실습수당의 성격

-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현장실습수당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소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청 원천세과-1125(2025. 1. 21.))

[요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53, 2021.3.9.)에서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또한,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세소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이체내역서(기업에서 학생 계좌로 실습수당을 이체한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함.
- 다만 위의 입증자료(현장실습표준협약서, 이체내역서)가 없을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기타 소득 중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 대가로 소득처리가 필요함.
- 기타 소득 중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는 필요경비 60%가 인정 되므로, 실질 기타 소득세율은 8.8%임. (기타소득세 8% + 지방소득세0.8%)

2) 회계처리 방법

- 현장실습 기업 내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함.(권장)

구분	계정과목	적요	금액
(차변)	교육훈련비	(예시) 현장실습생 ○○○ X 월 실습수당	1,000,000
(대변)	보통예금	(예시) 현장실습생 ○○○ X 월 실습수당	1,000,000

[현장실습수당 회계처리(예시)]

구분	Code	계정과목	Co de	적요	차변(출금)	대변(입금)
차변	825	교육훈련비		현장실습생 0월 실습수당	1,000,000	
대변	101	현금		현장실습생 0월 실습수당		1,000,000

-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 발생할 경우

구분	계정과목	적요	금액
(차변)	교육훈련비	(예시) 현장실습생 ○○○ X 월 실습수당	1,000,000
(대변)	보통예금	(예시) 현장실습생 ○○○ X 월 실습수당	912,000
	예수금 - 소득세		80,000
	예수금 - 지방소득세		8,000

- 기타 소득 원천징수율 :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현장실습수당 회계처리(예시)]

구분	Code	계정과목	Co de	적요	차변(출금)	대변(입금)
차변	825	교육훈련비		현장실습생 0월 실습수당	1,000,000	
대변	103	보통예금		현장실습생 0월 실습수당		912,000
대변	254	예수금		현장실습생 기타소득세		80,000
대변	254	예수금		현장실습생 지방소득세		8,000

- 기타소득세 : 1,000,000 * 8% = 80,000

- 지방소득세 : 1,000,000 * 0.8% = 8,000

나. 현장실습 순회지도 및 모니터링

- 학교는 학생에게 현장실습 일지 작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서 학생이 작성한 현장실습 일지를 **매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야 함.**(단,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필요)
 - ※ 부득이하게 당일 실습일지를 검토하지 못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야 함.
 - ※ 현장실습생이 LMS를 통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학교는 즉각적인 답변과 조치를 해야 함.
- 학교는 **매주** LMS 검토 외에도 현장실습 담당 교사, 담임교사, 취업지원관 등의 주관하에 SNS 등을 활용하여 현장실습생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함.
 - ※ 예: SNS 활용 아침 안부 인사,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 활용한 출석 체크 등
- 학교는 기업이 현장실습 프로그램대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지, 현장실습생에 대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함.
- 학교는 기업에서 작성한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일지 **서식 8**를 근거로 출결을 처리함.
 - ※ 현장실습(취업) 학생 NEIS 출결입력 방법 **자료 15**
- 학교는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사고 및 부당대우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현장실습 전, 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안내해야 함.

Q&A

출결처리

Q 부사관의 경우 출결일지를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입영통지서로 출결일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주말이나 공휴일 결석한 경우 학교에서의 출결 처리 방법은?

A 주말이나 공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일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 일에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즉, 토요일과 일요일 현장실습을 실시하기로 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으나 토요일에 결석을 했다면, 결석한 날의 다음 주 월요일에 학교 출결을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Q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후 현장실습 없이 근로계약 체결한 학생의 출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현장실습과 동일하게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자료 15 현장실습(취업) 학생 NEIS 출결입력 방법

현장실습(취업) 학생 NEIS 출결입력 방법

□ 위탁학생으로 등록

- 나이스-학급담임-위탁·현장실습 학생관리-등록-조회-현장실습생 선택-내용 입력 후 저장함.

The screenshot shows the NEIS system interface for managing field practice students. The top part shows the navigation menu and the main content area with search filters. The bottom part shows the student selection modal with a table of students and a search modal.

1 학급담임 교과담임

기본학칙관리
출결관리
출결현황및통계
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
출결관리
미인정결석학생관리

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

확인요청 접수 및 전송 ▶ 위탁·현장실습 학생등록 ▶ 대학교 자료전송확인 ▶ 자료관리

합수 0건 등록 1건

*학년도 2024 *학기 1학기 *계열/학년/학과 공업계 *반 2 기관명(타과과) 전체 [조회]

※ 성적입력여부는 대학교에서 전송된 성적에 대해 반영 또는 등록한 경우 입력으로 표시됩니다.

Total 0

3 등록 [저장] 삭제 휴지

순번 등록구분 교육구분 반 번호 성명 위탁상태 시작일자 종료일자 위탁기관구분 기관명 전공 성적입력여부

데이터를 조회해 주십시오.

↓

위탁학생 등록

*학년도 2024 *학기 1학기
*계열/학년/학과 공업계/3/항공기계과 *반 2 **4** [조회]

※ 위탁학생의 위탁기간 등록 시 원적교의 학사일정에 맞춰 1, 2학기 기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Total 18

번호	성명
1	김
5 2	
3	
4	
5	
6	
7	
8	

6

*시작일자 2024.03.01. *종료일자 2024.08.04.
*교육구분 선택 위탁기관구분
*기관명 선택 [기관찾기]
전공 직업과정위탁교육
비교 현장실습
공통실습소
대안교육위탁기관
병원학교
원격수업
학교 밖 교육
기타

[저장] [취소]

[닫기]

□ 일일출결 처리

- 담임업무-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일자 조회 후 현장실습 클릭, 현장실습 기간 입력 후 저장(1학기 종료 일자는 단우학교의 학사일정에서 1학기 종료 일자, 2학기 종료 일자는 단우학교의 학사일정에서 졸업 일을 종료 일자로 입력)-저장-일일 출결때마다 현장실습 적용 클릭 → 인정결석 처리됨.

The screenshots illustrate the steps for daily attendance management in the field practice system. The top screenshot shows the '출결관리' (Attendance Management) page with a modal window for '일일출결관리 현장실습 출결기간입력' (Daily Attendance Management Field Practice Attendance Period Input). The bottom screenshot shows the same page after the process is completed, with the '현장실습 적용' (Apply Field Practice) button highlighted.

Top Screenshot: Daily Attendance Management Field Practice Attendance Period Input

1. Click on '출결관리' (Attendance Management) in the left sidebar.

2. Click on '일일출결관리(담임용)' (Daily Attendance Management (Teacher Use)) in the top navigation bar.

3. Click on '출결관리' (Attendance Management) in the top right corner.

4. Select the student '김' (Kim) in the table.

5. Click on '저장' (Save) in the bottom right corner.

번호	성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비고
1	김	2024.10.21.	2024.11.29.	
2				
3				
4				
5				

Bottom Screenshot: Daily Attendance Management Field Practice Attendance Period Input

6. Click on '현장실습 적용' (Apply Field Practice) in the top right corner.

7. Click on '출석인정결석' (Attendance Recognition Absence) in the table.

번호	성명	매강	조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총계	사유
1	김	출석인정결석	/	/	/	/	/	/	/	/	
2				의미없	의미없	의미없	의미없	의미없	의미없		
3				의미없	의미없	의미없	의미없	의미없	의미없		
4				의미없	의미없	의미없	의미없	의미없	의미없		
5				의미없	의미없	의미없	의미없	의미없	의미없		
6				의미없	의미없	의미없	의미없	의미없	의미없		



● 학생 조치 사항

- 1) 현장실습생은 당일 실습한 내용을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의 LMS에 접속하여 작성함.
- 2)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고충이 있으면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담할 수 있음.

-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의 LMS의 '상담 신청'에 고충 작성

참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활용 매뉴얼 참조

- 전화 또는 SNS를 통해 학교 교사에게 고충 상담
- 학교전담노무사 개인 휴대전화로 고충 상담
 - ※ 학교는 현장실습생에게 학교전담노무사 개인 연락처를 사전에 알림.
-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통해 고충 상담

- 3) 현장실습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실습생은 본인의 치료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업의 책임자, 학부모, 학교에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알림.

1) 순회지도(학교)

- 학교는 현장실습생의 실습 상황, 건강, 심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을 방문하는 순회지도를 실시해야 함.
 - ※ 순회지도는 학교 관리자, 교사, 취업지원관 등 현장실습 관계자라면 누구나 실시할 수 있음.
- 순회지도의 주 대상은 '학생'이며, 순회지도 시 학생 면담뿐만 아니라 기업현장교사, 기업 대표 등 기업 관계자 면담을 필수로 포함하여 실습 상황 전반에 관해 확인해야 함.
 - ※ 전화, 온라인 화상회의 등 비대면 순회지도 시에는 수당지급 불가
- (광주광역시교육청)학교는 기업별로 순회지도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반드시 1개월(실습일 20~25일)에 1회 이상 (1개월(실습일 20~25일) 미만의 현장실습의 경우에도 1회 이상) 방문 순회지도를 실시해야 함.(단, 공공기관은 2개월에 1회는 직접 방문, 1회는 서면 SNS 등으로 대체 가능(상담기록 보관))
- 순회지도를 실시한 담당자(교사, 취업지원관)는 순회지도 완료 후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서식9** 작성하여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록해야 함.
- 학교는 순회지도에 대하여 현장실습 운영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 순회지도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으로 여비와 중복지급 가능하며, 순회지도비 지급기준은 1개 기업당 관내·외 3만원으로 1일 최대 3개 기업까지 지급 할 수 있음. 단, 1개 기업에 여러 명이 순회지도를 나간 경우 2명 분에 해당하는 순회지도비(6만 원)만 지원가능 함(예시/ A기업에 홍○○, 이○○ 교사, 김○○ 취업지원관 3명이 순회지도를 나간 경우에 6만 원만 지원 가능하며 이를 안분하여 각각 지급).

서식 8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일지(예시)

()월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일지

1. 기본 사항

산업체명		담당자 확인	
-------------	--	---------------	--

(인)

2. 출결 상황

연번	학과	반	번호	성명	근태상황(일자 및 결과)
예시	000과	1	10	홍길동	10/11(결근), 10/20(지각10:00), 10/21(조퇴13:00)
1					
2					
3					
4					
5					
6					
7					
8					
9					
10					

※ 근태상황은 매월 초에 학교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 팩스 : - 전화 :

※ 근태상황은 학교 출결상황에 반영되오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태상황 중 병으로 인한 결근, 지각, 조퇴의 경우는 질병으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9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결 재	담 당	부 장	교 감
산업체명		지도일시	20 (: ~ :)		
주소		전화번호			
현장실습생	과 번, 성명 과 번, 성명				
영역	지도내용	예	아니오		
현장 실습 협약	1.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가 잘 보관되고 있는가?				
	2.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실습이 운영되고 있는가?				
	가. 현장실습 기간 준수				
	나. 현장실습 입문교육 실시 (전체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 실시, 의무교육 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 현장실습 프로그램 준수				
	라. 기업현장교사 배치				
	마. 현장실습 수당 지급				
	바. 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 실습생	사.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준수				
	1. 현장실습생은 성실하게 실습하고 있는가?				
	2. 현장실습생은 산업체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가?				
	3. 현장실습 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는가?				
	4. 현장실습생의 건강상태는 양호한가?				
	5. 현장실습생의 심리상태는 양호한가?				
	6. 안전사고, 부당대우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현장 실습 운영	1. 현장실습이 본래의 목표와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가?				
	2. 현장실습생에 대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현장실습 산업체 고용주가 현장실습에 대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4.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실습생과 동일사업장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는가?				
	5.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 등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가?				
	6. 현장실습 환경 및 여건은 안전보건 상 양호한가?				

현장실습 실태	<p>* 현장실습생 대상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p> <p>1. 현장실습 시간 1일 ()시간, 1주 ()시간</p> <p>2. 안전사고 발생 여부 유 () 무 ()</p> <p>3. 위반사항: ① 없음 () ② 시간초과 () ③ 야간실습 () ④ 휴일실습 () ⑤ 유해위험업무 () ⑥ 생리휴가 미실시 () ⑦ 성희롱 등 () ⑧ 폭행·폭언 등()</p> <p>- 조치: 시정권고 () 근로감독 요청 () 과태료 부과 요청 () 복교 () - 결과: 시정완료 () 근로감독 실시 () 과태료 부과 () 복교 ()</p>					
■ 학생 및 기업체 면담 내용						
산업체 면담내용						
학생 면담내용 및 전달사항						
종합의견 (애로사항)						
학생 만족도	참여 학생의 기업 만족도	매우 만족 5	만족 4	보통 3	불만족 2	매우 불만족 1
구분	소속(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	
보고자						
동행자						
<p>상기와 같이 순회지도 결과를 보고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20 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직위: 성명: Ⓜ</p>						

2) 기업코칭(노무사)

- 노무사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관계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현장실습생 안전 및 권익보호 조치 실행 등 코칭을 시행함.
- 학교는 기업코칭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기업에 안내하고, 노무사는 기업과 기업코칭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선도기업은 반드시 현장실습 운영 직무별로 기업코칭을 실시해야 함.
 - ※ OO기업이 ①기계, ②사무와 같이 두 개 직무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직무별로 기업코칭을 실시함.
 - ※ 학교의 필요에 따라 현장실습운영비를 활용하여 추가 기업코칭을 요청할 수 있음.
- 유해위험 업종에 한하여 기업코칭 시 산업안전점검을 재실시함.
 - ※ 유해위험 업종: 운전·운송,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환경·에너지·안전, 농림어업, 수산해운
- 참여기업도 학교전담노무사와 협의하여 기업코칭 실시 가능(공인노무사회에서 수당 지급)
- 한 기업에 여러 학교 학생이 함께 동일 직무로 실습 중인 경우 기업 코칭 과정에서 공인노무사가 해당 학생 최대 5명까지 면담을 진행할 수 있음(공인노무사회에서 수당 지급).
- 기업코칭은 노무사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사, 취업지원관 등 동행 가능
- 노무사로부터 기업 코칭 시 **학생 면담이 실시된 해당 학생**의 순회지도를 1회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음. 단, 노무사의 기업 코칭 여부에 관계 없이 학교는 현장실습 기간 중에 1회 이상 순회지도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 단, 학교의 전화, SNS 등을 통한 모니터링은 상시 실시
- 노무사는 기업코칭을 실시한 후 **현장실습 기업코칭 점검결과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록함.
- 학교는 필요에 따라 노무사를 추가 활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학교 현장실습 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음.



● 기업 코칭 노무사 배정 절차

- 1) (학교⇒기업) 점검 일정 통보 및 안내
- 2) (학교⇒학교전담노무사) 기업 코칭 수행 가능 여부 문의
- 3) (학교전담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또는 대표노무사) 학교전담노무사의 일정 수행 불가 시
수도권 지역 학교-한국공인노무사회에 노무사 배정 요청
수도권 외 지역 학교-대표노무사에게 노무사 배정 요청
- 4) (한국공인노무사회 또는 대표노무사⇒배정된 노무사) 가능한 노무사를 매칭하여 안내
- 5) (노무사⇔기업) 기업 코칭 수행

Q&A

노무사 수당지급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지급하는 수당 이외에 학교에서 노무사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직접 지급하는 수당은 사전 현장실사, 실습 직전 특별교육, 기업 코칭 (선도·참여기업),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이외에 공인노무사 추가 활동(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참석, 추가 기업 코칭)에 대한 수당은 학교에서 현장실습 운영비를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서면의견 대체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장실습 또는 실습 종료 후 취업 전환한 학생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적인 상담은 비용 부담 없이 상시 가능하나, 피해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학교 현장실습 운영비를 활용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교전담노무사의 역할 구분]



3)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고용노동지청)

- 학교나 교육청은 현장실습 중 학생이 산업안전 사고를 당하거나 부당대우 사실을 확인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안전 감독 또는 근로감독을 요청함.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 학교나 교육청은 산업안전 사고 및 부당대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 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지도(컨설팅)를 요청하고, 개선이 미흡할 경우 산업안전 감독 또는 근로감독을 요청함.
- 산업안전 감독관 또는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 및 노무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개선 하도록 지도·컨설팅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개선이 미흡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 또는 근로감독을 실시함.
* 취약 사업장: 교육청이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사업장, 유해·위험 사업장, 신고사건·산재 다발 사업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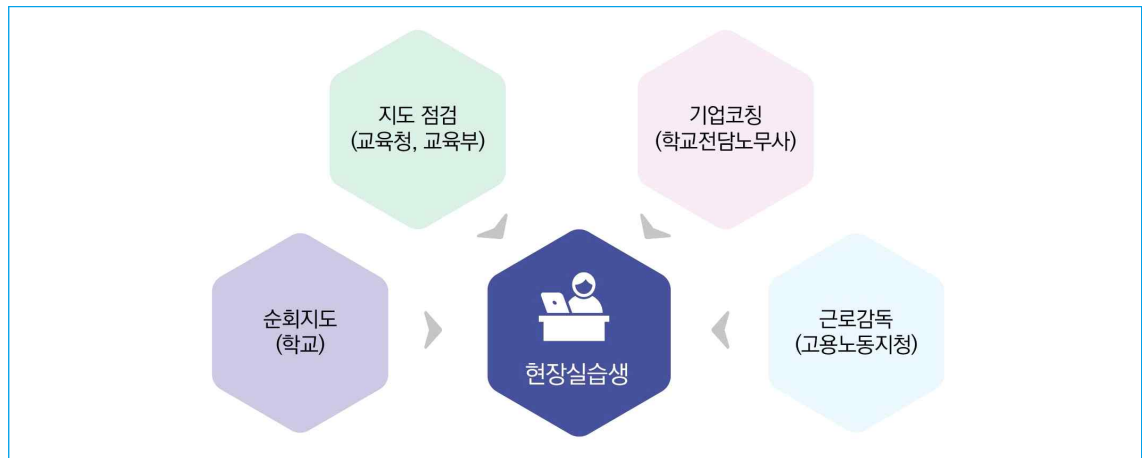
4) 지도·점검(교육부, 광주광역시교육청)

- 교육부 및 교육청은 학교 및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제도 운영, 학생 지원 및 관리 등 현장실습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음.
※ 근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5조(지도·점검 등)
- 교육청 단위 지도·점검은 관할 직업계고 및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지청,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지회, 노무사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실시하며,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계획에 따름.
- 중앙단위 지도·점검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를 대상으로 중앙취업지원센터,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실시하며, 세부 사항은 매년 추진 계획에 따름.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구분	대상	주관	시기
중앙단위 지도·점검	17개 교육청, 시·도별 직업계고등학교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0~12월
시·도단위 지도·점검	직업계고등학교(수시 점검)	시·도 교육청	연중
현장실습 기업 지도·점검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 업종 중심 〈고위험 업종〉 ① 끼임 위험기계보유 제조업 (크레인, 컨베이어, 로봇, 사출기, 프레스) ② 폐기물처리업 ③ 최근 3년간 현장실습 재해발생 업종 ④ 기타 기업선정 심사 과정에서 위험성 지적 기업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1~12월

[현장실습생 지원 체계]



다. 현장실습의 변경

- 1) 현장실습을 시작한 이후에 현장실습 협약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업, 학교, 학생이 대면 또는 서면 합의를 거쳐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를 3부 작성함.
- 2) 기업은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 **서식 10** 에 학생의 날인을 받아 학교에 제출함.
- 3) 학교에 제출된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는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4) 학교는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 승인 여부에 대해 기업에 통지하고, 승인된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는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함.
- 5) 승인된 「현장실습 변경합의서」는 기업, 학생, 학교가 각각 1부씩 보관함.

라.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지원

- 1) 상시 모니터링, 순회지도,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실제 현장실습이 협약과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현장 실습생의 안전보건을 저해할 요인이 발견되는 등 정상적인 실습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사는 학교전담노무사와 협력하여 실습 중단, 복교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함.
- 2) 안전보건 및 권익 침해 사안이 중한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조치함.

[현장실습 관련 규정 위반 사유에 따른 조치 방법]

사유	조치 방법
협약 내용과 다른 현장실습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에 시정을 요청하고, 미반영 시 학생 의사에 따라 다른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권익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습 중단 및 학생 복교 조치 후 근로감독 요청 학생의 의사에 따라 다른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개인적 사유로 인해 실습 중단을 요청한 경우	학생 상담 및 기업 협의를 진행한 후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복교 여부 결정 현장실습 복교 의견서 서식 12 를 통해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 학생의 의사에 따라 다른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현장실습 관련 규정 위반 시 조치 순서]

① 위반 내용 확인	② 복교 및 시정 요청	③ 근로감독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초과, 휴일·야간 실습 확인 • 현장실습계약 미체결 또는 표준 협약서 미사용 • 주요사항 미준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 즉시 실습생 복교 조치, 위반사항을 기업에 통보 및 시정요청 • 학부모 통지, 상급기관에 시안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위반사항 통보, 근로 감독 요청 • 야간실습, (성)폭력 등 경찰 수사 필요할 경우 동시 진행 • 상급 기관에 사안 보고
학교	학교	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취업지원센터)
④ 모니터링	⑤ 고발	⑥ 최종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감독 진행 상황 지속 모니터링 • 근로감독 화신 결과 등 시안 보고 • 학생 및 학부모 보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감독 결과 벌칙 해당 사업장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상황이 종료되면 경찰수사 결과, 법원 판결 등 최종결과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지 • 상급기관에 최종결과 보고
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취업지원센터)	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취업지원센터)	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취업지원센터)

3) 현장실습 관련 규정 위반 시 기업에 부과되는 벌칙 및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음.

위반 내용	부과 벌칙
실습시간 초과 또는 휴일 미 부여 등에 대한 의도적인 불법 행위	형사처벌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 또는 주요 사항 미준수	과태료 부과

※ 「근로기준법」 준용에 따른 기업의 책무와 벌칙 및 과태료는 81p 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안내 참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벌칙 및 과태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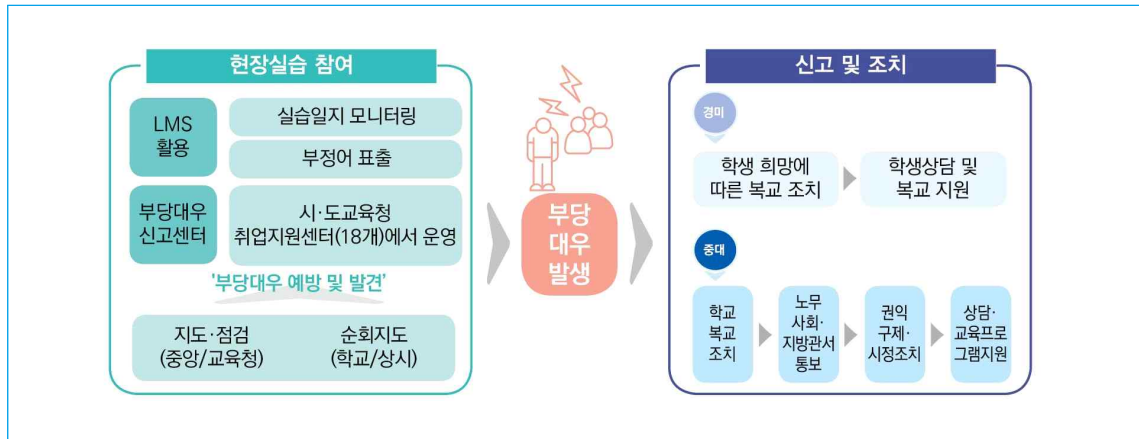
- ▶ **제26조(벌칙)**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제27조(과태료)**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 또는 주요사항 미준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제28조 및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 → 시·도교육감, 고용노동부장관 → 지방고용노동관서장
 - ※ 6대 표준협약서 사항별 과태료 부과권자(시행령 제23조)
 - 시·도교육감: 가. 현장실습 기간, 나. 현장실습 방법, 다. 담당자 배치, 바.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라. 현장실습 수당, 마. 안전·보건상의 조치

4) 학교는 학생의 권리보호를 위해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를 통한 고충상담 외에 학교전담노무사상담,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해야 함.

- **(SNS 모니터링)** 현장실습 중 학교 교사, 취업지원관 등의 주관으로 SNS(단체 특 등)를 통해 현장실습생 상담 및 모니터링 실시
- **(LMS 모니터링)** 학교는 학생이 작성한 실습일지를 **매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 실시(단,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필요)
- **(학교전담노무사)** 학교전담노무사와의 개인 연락을 통한 상담 실시
 - ※ 학교는 현장실습 시작 전에 학생에게 학교전담노무사 연락처 및 상담 방법 안내
-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중앙·시·도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노무사와 연계하여 즉각적인 권익구제·시정조치 지원

5) 현장실습생 피해 구제 과정에서 각종 비용 발생 시 학교 현장실습 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음.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 및 상담 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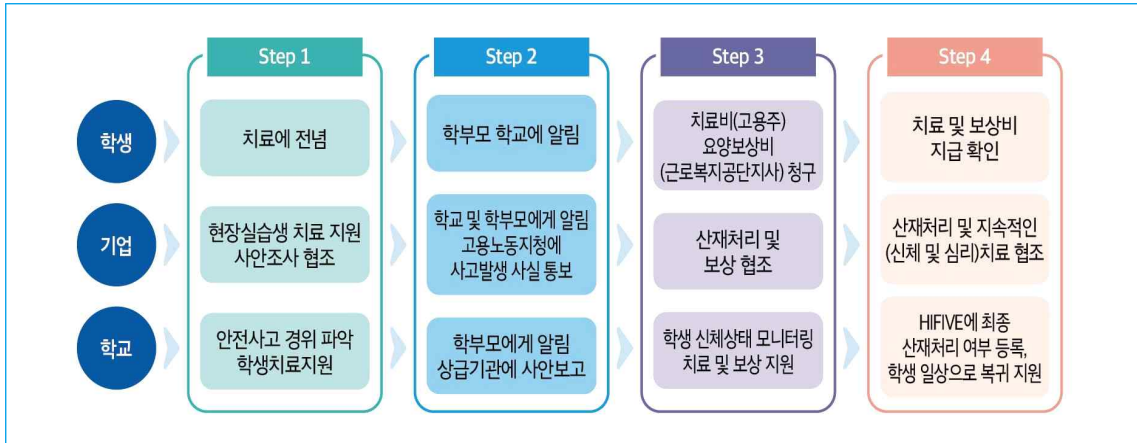


마. 안전사고 조치

- 1) 교사는 산업재해로부터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실습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기업발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함.
- 2)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생 치료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해야 함.
 -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실습생은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기업은 즉시 학부모, 학교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함.
 - 기업은 현장실습생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나 학교의 사안 조사 및 산재 처리에 협조해야 함.
 - 학교와 기업은 각각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고용노동지청에 사안을 보고하고, 학생의 신체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
 - ※ 전화 등 구두로 먼저 보고하고, 빠른 시간 내에 「현장실습 사안보고서」로 상세히 서면보고 해야 함.
 - 학교는 학교전담노무사와 협력하여 현장실습생이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함.
 - ※ 비용 발생 시 현장실습 운영비 활용
 - 학교는 안전사고 처리 과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최종결과에 대해 현장실습 사안 보고서 **서식 11**를 활용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보고하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최종 산재처리 여부를 등록함.
 - ※ 안전사고 조치 결과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변동사항 발생 시 수정 입력)
 - ※ 산재 처리 여부 입력 시 산재 미처리(자체 처리)의 경우, 미처리 사유 입력

※ 안전사고 사안이 종료되면 「현장실습 사안보고서」로 최종보고를 해야 하며, 졸업일까지 사안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도 졸업일까지 최종보고 해야 함.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

[안전사고 처리 절차]



서식 11 현장실습 사안 보고서

현장실습 사안 보고서(□최초보고 □최종보고)

학교	()고등학교 (☎ 000 - 000 - 0000)		
학생	()과 ()학년 ()반 ()번 성명()		
기업체	기업명(업종)	○○산업(○○○○업), 선도기업 지정(00.00.00.)	
	주소(전화)	○○광역시 (☎ 000 - 0000 - 0000)	
	실습 기간	20○○.00.00. ~ 20○○.00.00.(취업 전환 0000.00.00.~)	
사안명	○○로 인한 ○○ ○○○○ 사고		
발생일시	20○○.00.00.() 00시 00분	장소	○○조립 라인
<p>〈사고경위〉 사안 발생의 동기, 경과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습장 내의 구체적 상황, 목격자, 최초 조치 사항 등 2. 3. 			
<p>〈상황 발생 후 조치내용〉 시간에 따라 구체적·개조식으로 작성, 근로감독, 산재 등 포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0000. 00. 00:00 김00 학생 모친에게 연락,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유선 보고 2. 0000. 00. 00:00 00병원에 00학교 취업지원부장 방문하여 학생 상태 파악 3. 0000. 00. 00:00 검사 결과 0주간 입원 치료 필요 			
<p>〈관련 당사자 입장〉 학생, 학부모, 기업체, 학교의 입장 서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 : 치료 후 경과에 따라 학교 복귀 등 판단 예정 2. 기업 : 학생 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 세울 예정 3. 학부모 : 치료 우선 진행 후 현장실습 지속 여부 판단 예정 4. 학교 : 학생 치료에 최우선 지원, 학생 학부모 방문 및 위로 진행 			
<p>〈최종 결과〉 ※ 최종 보고서 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회복 여부: 2. 복교 여부: 3. 산재처리 여부: 			
보고일자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보고자(직·성명)	(직급) ○○○

Q&A

안전사고조치

Q 현장실습생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장실습 중 산재를 당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상과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상과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범위가 다르므로(일반적으로 산재보상 범위가 더 넓음) 학교전담노무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바. 복교 프로그램

- 1) 학교는 현장실습생 복교에 대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복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 현장실습 운영 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2) 교사는 복교 사유를 진단하여 복교 유형별 필요한 상담,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현장실습 복교 의견서 **서식 12**, 현장실습 복교 프로그램 **예시 8**

[복교사유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

구분	사유	지원 내용
실습완료 복교 (복교의견서 미작성)	취업 미연계	추가 실습참여 및 취업 희망 시 실습기업 발굴, 취업연계 프로그램 지원
조기 복교 (복교의견서 작성)	학생 원인	진로상담, 취업 마인드 제고 및 직업윤리 교육, 취업 로드맵 제시, 취업 적성검사, 졸업생 특강, 직무체험·견학 등
	업체 원인	학생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과 회복 지원 및 추가 실습처 발굴 기업에 대한 시정 요구 및 필요 시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 요청

서식 12 현장실습 복교 의견서(예시)

현장실습 복교 의견서

		결 재	담 당	부 장	교 감
소속	과 / 학년 반 번	학생 성명			
실습처명		실습처 전화			
기업현장교사 성명		기업현장교사 연락처			
실습 기간		복교일			
복교 배경 및 과정(구체적으로 작성)					
기업현장교사 의견(OO부 김OO)					
학교 담당자 의견(OO부 이OO)					

※ 복교 배경이 기업에 있을 경우, 학교에서 기업 방문 후 '기업현장교사 의견'란에 기록 가능

보고일시 년 월 일

예시 8 현장실습 복교 프로그램

현장실습 복교 프로그램					
학과:		학번:		성명:	
차시	지도 요소	지도 내용		담당 교사 (예시)	실시 일자
1	학생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교사유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교생의 고민과 애로사항 - 회사생활 돌아보기(장점과 단점) 		김○○	
2	복교원인에 따른 마음 다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마인드재고 (학생원인 조기 복교) 	전공관련 상담 취업마인드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을 통한 자기성찰 - 자기극복 및 취업의지 고취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프로그램 (업체원인 조기복교) 	의도치 않은 복교로 인한 상처치유 위로와 격려	박○○	
3	직장적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 능력 향상 및 자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관계 팀워크 갈등관리 -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 - 인성지도 		최○○	
4	직업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의 소중함 •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 실습생의 의무와 권리 		최○○	
5	진로상담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진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의 목표와 경로개발 -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찾기 - 10년 후 나의 모습 		김○○	
6	평가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감문 작성 및 격려 - 재취업에 대한 도전의식 		이○○	
복교생 프로그램 종료 후		추가 실습기업 발굴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지원		박○○	

제8장

현장실습 종료 및 취업지원

[업무 요약표]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교사	<p>가. 현장실습 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운영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 (HIFIVE)에서 현장실습 완료 내용을 입력함. <p>나. 현장실습 완료 후 취업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전환 학생에 대한 학부모 동의를 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도움.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 전환 적부를 심의하고 내부결재를 통해 취업 전환 시기를 명확히 함. 출결일지를 근거로 출석인정 처리를 하며, 2월 말까지는 추수 지도를 실시함. <p>다. 현장실습 성적처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방식(정규교과, 창체, 교과 외)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성적 처리를 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내용을 기재함. 	<p>서식 13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학생용 예시)</p> <p>서식 15 취업(전환) 동의서</p> <p>서식 8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일지</p> <p>서식 16 취업 학생 추수지도 결과 보고서</p> <p>서식 14 현장실습 평가서 (기업용 예시)</p>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평가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학교에 제출함. 현장실습이 종료되면, 기업현장교사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기업 현장교육 지원금을 신청함. 현장실습생의 취업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 학부모, 학교와 상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 취업 전환 학생에 대하여 졸업할 때까지 출결일지를 학교로 제출해야 함. 	<p>서식 14 현장실습 평가서 (기업용 예시)</p> <p>참고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p> <p>서식 8 현장실습 (취업)학생 출결일지</p>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HIFIVE 현장실습 결과(만족도) 작성으로 대체 가능) 학생은 LMS 작성 완료한 것을 근거로 하여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현장실습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학생 및 학부모는 취업 전환을 위해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전담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 	<p>서식 13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학생용 예시)</p> <p>참고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p> <p>서식 15 취업(전환)동의서</p>
 노무사 (산업안전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및 학부모가 취업 전환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세부 운영 내용]

가. 현장실습 종료

- 1) 학생은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필히 제출해야 하며, LMS 작성 완료한 것을 근거로 하여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현장실습 지원금을 신청함(HIFIVE 현장실습 결과(만족도) 작성으로 대체 가능).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서식 13**, **참고**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2) 학교는 현장실습 지원금 및 기업현장교육 지원금에 대하여 현장실습생 및 기업현장교사에게 각각 안내함.
- 3) 학교는 학생이 제출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장실습 중 학생만족도, 권익 침해 유무 등을 확인하고 차년도 현장실습 기업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함.
- 4) 학교는 현장실습 운영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서 현장실습 완료 처리를 함.

※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상에 현장실습 완료처리는 현장실습 지원금 및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지급에 필수 선행절차이므로 반드시 해야 함.

- 5) 학교는 기업이 제출한 현장실습 평가서를 바탕으로 현장실습에 대한 성적 처리를 함.
- 6)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실습 평가서를 작성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기업현장교육 지원금을 신청함.

※ 현장실습 평가서 **서식 14**, **참고** 기업현장교육 지원금의 신청 절차 및 신청 서류는 한국장학재단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업무처리 기준

서식 13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용 예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이름	(인)	학과명				
실습기관명		실습 기간				
실습개요 및 목표						
실습내용						
현장실습 만족도	항목별 문항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기업(기관)의 시설과 환경은 만족스러운가?	5	4	3	2	1
	실습내용은 전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5	4	3	2	1
	실습장의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5	4	3	2	1
	현장실습 전담 지도자는 교육에 충실하였는가?	5	4	3	2	1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당 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가?	5	4	3	2	1
향후 진로계획						
건의사항	※ 현장실습 만족도 불만족(2 또는 1) 시 필수 기재					

나. 현장실습 완료 후 취업 전환

1) 참여기업 현장실습생은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후 취업으로 전환 가능함.

※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전에 현장실습이 종료될 경우, 복교한 후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후 취업으로 전환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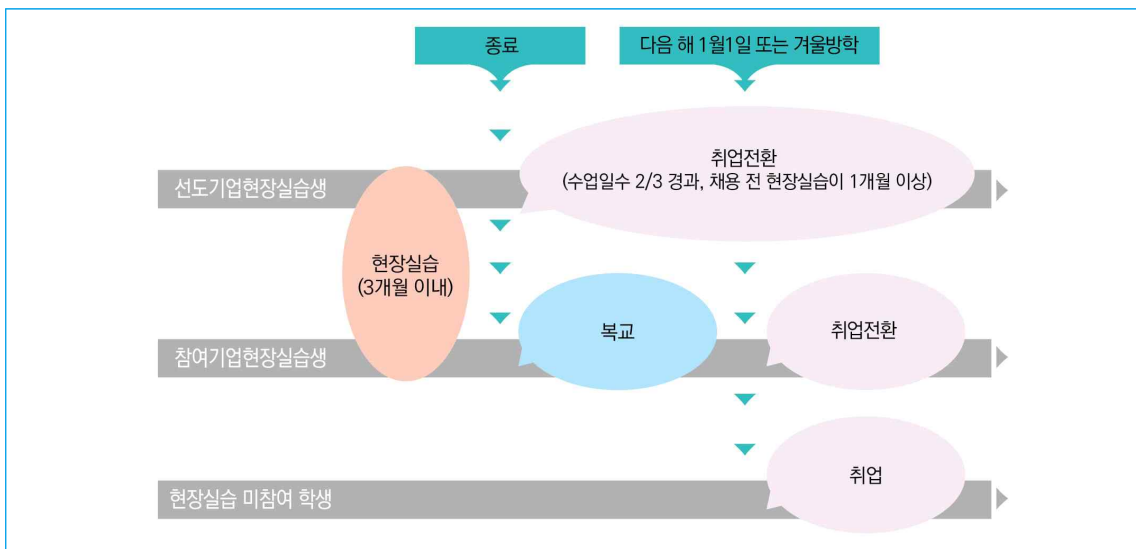
2) 선도기업 현장실습생은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시점부터 취업으로 전환할 수 있음.

※ 단, 취업 전환 전 현장실습을 실습일 기준 20~25일 참여해야 함.

3) 현장실습 미참여 학생도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후 취업 가능함.

※ 현장실습 미참여 학생이 졸업 전에 취업한 경우, 해당 학생의 관련 서류도 작성 및 보관해야 함(①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② 사업자등록증, ③ 4대 보험 가입증명원, ④ 취업(전환) 동의서, ⑤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 일지, ⑥ 취업 학생 추수지도 결과보고서).

※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부서관에 취업한 경우 ①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② 사업자등록증, ③ 4대 보험 가입증명원 생략 가능



4) 학생 및 학부모는 현장실습생의 취업 전환을 위해 취업(전환) 동의서 **서식15** 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학교전담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5) 학교와 학교전담노무사는 취업 전환 이후 근로계약서상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6) 근로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취업 전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함.

※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취업 전환 입력 방법: [현장실습 모니터링 입력-[해당 학급]-[학생정보 관리]에서 취업 전환 정보 입력(취업 증빙서류는 선택사항)

7) 학교는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 전환 적부를 심의함.

- 8) 학교장 내부 결재를 통해 취업 전환된 학생의 취업 전환 시기를 명확히 하고, 출결일지 등 기업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출석 인정 처리를 함.
- 9) 학교는 학생이 취업 전환되더라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추수지도를 실시하여 학생의 건강 상태, 부당대우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함.
- ※ 학생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 전환이 된 이후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 취업 학생 추수지도 결과보고서 서식 16 참고
- 10) 학교는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전환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해야 함.
- 11) 기업은 현장실습생이 취업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 학부모, 학교와 상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
- 12) 기업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출근일지 등 출결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일지 서식 8 참고

서식 15 취업(전환) 동의서

취업(전환) 동의서

취업(전환) 학생	_____과 3학년 ____반 ____번 성명: _____
-----------	----------------------------------

□ 취업 (전환) 관련 확인 사항

취업 (전환) 업체명		연락처	
근무장소			
취업(전환)일자	0000. . .		
근무시간		급 여	<input type="checkbox"/> 시급 <input type="checkbox"/> 월급 <input type="checkbox"/> 연봉 원
담당부서		담당업무	

위 본인과 보호자()는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종료한 후, 취업(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의 「취업(전환) 관련 확인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0○○년 월 일

학생: (인)

보호자: (인) (학생과의 관계:)

OO고등학교장 귀하

Q&A

겨울방학 이후 취업

Q 현장실습 없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A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후부터 현장실습과 무관하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 선도기업으로 취업 전환을 할 때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부터 가능하며, 취업으로 전환되기 전에 현장실습을 실습일 기준 20~25일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Q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후에 취업하지 않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이 가능한가요?

A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후에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은 가능하며, 현장실습 협약 체결, 수당 지급 등 모든 방법과 절차 또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단, 졸업일까지만 가능하며, 현장실습 협약 내용과 관계없이 현장실습은 졸업과 동시에 자동 종료됩니다.

Q 취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야간 근무도 가능한가요?

A 학생이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취업으로 전환한 시점에 만 18세 이상인 학생들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 40시간과 야간 및 휴일 근무가 가능합니다. 취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졸업할 때까지 학교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관리감독과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야간근로, 연장근로 등 학생에게 적절한 지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Q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후 현장실습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의 출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현장실습 연계 취업한 학생과 동등하게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선도기업의 취업 전환

Q 선도기업에 취업 전환하기 위한 수업일수 2/3를 계산할 때, 학생 개인별 출결을 고려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이 수업일수 2/3 시점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결석을 3일을 했다면 10월 14일부터 취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개인별 출결 상황에 따라 취업 전환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Q&A

Q 취업으로 전환한 이후, 학생의 출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과 같은 방법으로 출결 처리합니다.

Q A기업에 현장실습을 1개월 이상 한 학생이 선도기업인 B기업으로 취업 전환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선도기업에 취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 전환 기업에서 1개월(실습일 기준 20~25일)의 현장실습이 필요하며, 다른 기업에 취업 전환을 하려면 해당 기업에서 새로이 실습일 20~25일의 현장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기업에서 현장실습 최대 가능 기간인 3개월을 이미 이수하여 추가로 현장실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기업에서 추가로 현장실습이 불가하므로 취업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의 과실 없이 기업의 사정으로 발생한 경우, 3개월을 초과하여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어떤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였는데, 해당 기업의 자회사로 취업 전환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현장실습 기업과 취업 전환 기업은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본사와 지사, 본점과 지점 관계로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기업과 취업 전환하려는 기업에서의 직무가 동일하고, 취업 전환하려는 기업 또한 선도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취업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 은행 중앙회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지점으로 취업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A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의 취업 전환

Q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취업 맞춤반의 경우, 취업 전환 전에 이수해야 하는 4주간 (20일)의 현장실습을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취업 맞춤반 기업이라고 하여 현장실습과 취업 전환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4주간(20일)의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만 취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산업현장 전문가에 의한 교내 프로그램은 '교내현장실습'으로, 현장실습은 '산업체 채용형'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Q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 맞춤반 교내 프로그램 중 기업 관계자가 아닌 학교 교사가 지도하는 과정은 현장실습으로 인정되나요?

A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 맞춤반 교내 프로그램은 '교내현장실습'으로 분류하되, '교내 현장실습'은 산업현장 전문가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실습을 지도하는 것으로서 학교 교사에게 의한 지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Q 부서관에 합격하여 부서관 학교에 입교하는 경우 현장실습으로 인정되나요?

A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으로 처리합니다.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은 최대 3개월까지만 참여 가능하고, 임관 시점이 자격증 취득 여부 또는 졸업일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를 고려하여 지원 가능 기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Q 간호조무사, 말 조련(사육)사 등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연계교육형으로 처리합니다.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합니다.

제9장

현장실습 학교 자체 평가 및 피드백

[업무 요약표]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교사	<p>가. 현장실습 운영 결과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종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근무환경 만족도 학생의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학생의 권익침해 여부 기업의 개선 요구사항 학생으로부터 취합한 건의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 중 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기업에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함. <p>나. 현장실습 자체진단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계획 대비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함. 학교단위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보고서를 작성함. <p>다. 현장실습 평가보고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보고서, 학생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실습 평가 보고회를 진행함.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논의함. 최종 심의 및 의결한 후 차년도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반영함. <p>라. 결과 공유 및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자체진단 결과, 학생 만족도, 향후 보완 방안 등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함. 	<p>서식 13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학생용 예시)</p> <p>서식 9 순회지도 결과보고서</p> <p>서식 14 현장실습 평가서 (기업용 예시)</p> <p>서식 17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보고서(예시)</p>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평가보고회를 위한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개최함.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로부터 받은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조치함.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현장실습 중 권익 침해 여부를 학교에 알리고, 건의사항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함. 	

[세부 운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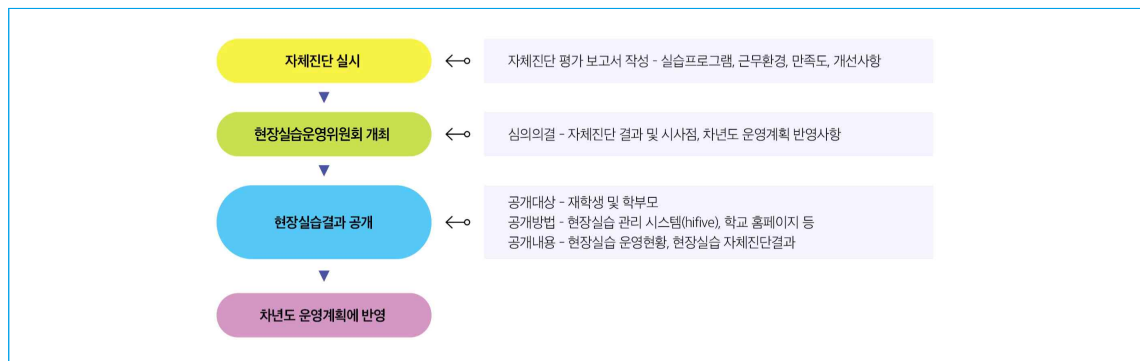
가. 현장실습 운영 결과 확인

1) 학생의 현장실습 종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함.

확인해야 할 서류	확인 내용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용 예시) 서식 13	학생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근무환경 만족도 학생의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현장실습 일지(LMS) 모니터링 참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활용 매뉴얼 (HIFIVE 홈페이지 참조) 및 애로사항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서식 9	학생의 권익 침해 여부 파악
현장실습 평가서(기업용 예시) 서식 14	미흡에 표기된 항목은 반드시 기업의 평가자와 면담하여 개선 요구사항 파악

나. 현장실습 자체진단 실시

1) 교사는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 계획 대비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학교 단위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보고서 **서식 17** 를 작성해야 함.



- 2) 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 만족도와 자체진단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습에 대한 총평과 시사점을 학교 단위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보고서 **서식 17** 에 기록함.
- 3) 학교는 현장실습 종료 후라도 학생의 권익 침해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학교전담노무사와 협력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4) 학교는 학생의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중 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기업에 전달하고 시정 요구를 해야 함.
- 5) 기업은 학교로부터 받은 건의사항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조치함.

다. 현장실습 평가보고회 개최

1) 학교는 현장실습 ① 자체진단 평가보고서, ② 학생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③ 현장실습 운영 현황(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출력), ④ 만족도 조사 결과(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출력)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실습 평가보고회를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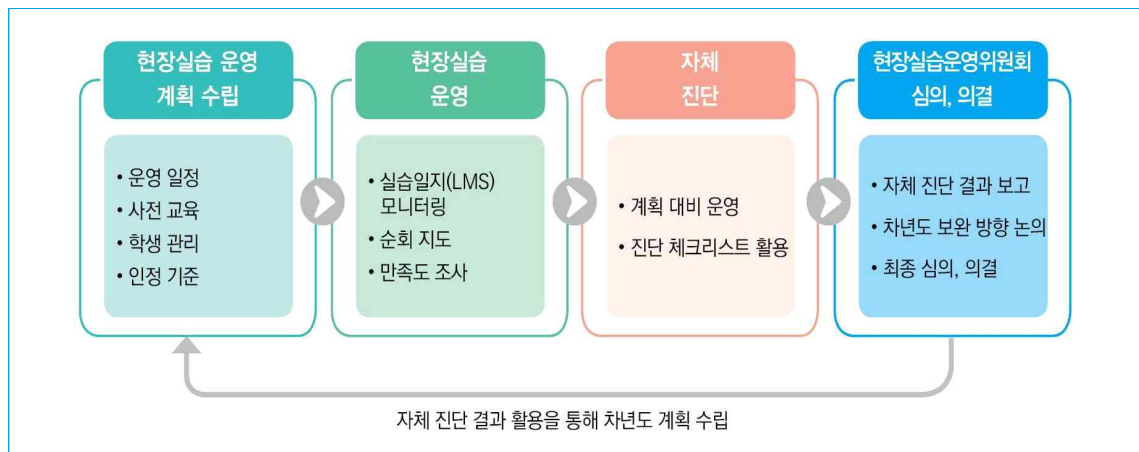
※ 학사 일정에 따라 모든 학생의 현장실습이 종료되기 전에도 평가보고회 개최 가능

2)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한 해 동안의 현장실습 운영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개선 방안을 논의함.

※ 연초에 수립한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토대로 평가 실시

3)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보고서를 최종심의 및 의결한 후 차년도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반영함.

[현장실습 운영 환류 체계]



Q&A

현장실습 평가를 위한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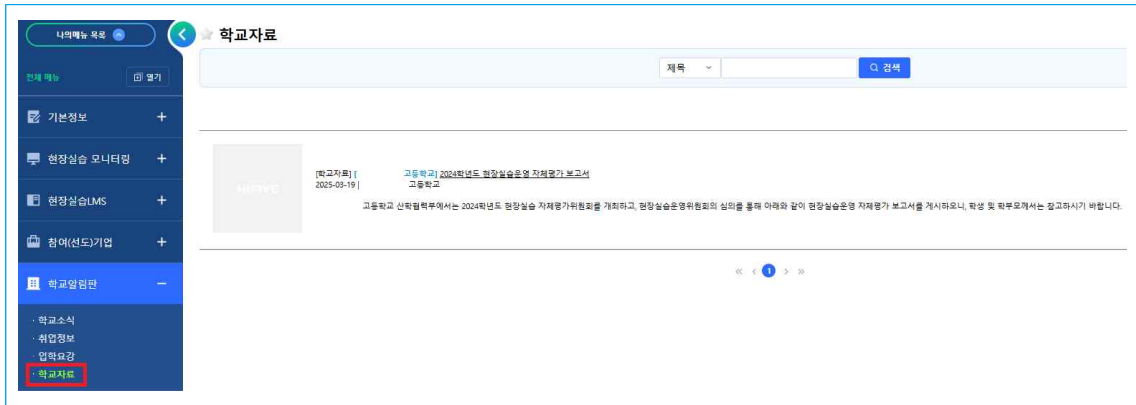
Q 현장실습 종료 후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지요?

A 현장실습이 종료되면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의 현장실습 운영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합니다. 단, 학사일정에 따라 모든 학생의 현장실습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평가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라. 결과 공유 및 확대

- 1) 학교는 한 해 동안의 현장실습에 대한 자체진단 평가 결과, 학생 만족도, 향후 보완방안 등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함.
- 2) 결과의 공유는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함.

* (결과 등록 경로) [HIFIVE 로그인] → [학교알림판] → [학교자료]에 등록





III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의 운영

1.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의 이해 및 형태
2.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개요
3.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절차
4.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고려 사항



제1장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의 이해 및 형태

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의 이해

- 교육기관, 훈련기관, 실습장, 기업 등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과정임.
- 학교 또는 기업이 일정 요건(시설·기자재, 강사, 교육 종료 후 채용연계 여부 등)에 부합한 교육기관과 협약을 통해 실무중심의 전공 심화 및 전환 과정으로 운영함.
 -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이외 유형(산업체 채용형 등)에 가까운 현장실습이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 또는 부처별 지방 관서에서 지정한 과정, 광역 또는 기초 지방 자치단체가 승인한 과정, 산업별 협의체·경제단체 등이 운영하는 과정 등이 있음.
 -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기관 예: 폴리텍, 전문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공동실습소, 기업 연수원 등

나.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의 형태

1) 전공 심화 과정

- 전공 심화 과정은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시설·강사·교육과정을 갖춘 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으로, 학생의 전공실무능력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편 취업을 위한 기업 매칭이 가능해야 함.
- 학교는 개설되는 연계 교육과정이 전공 심화 과정인지, 전공 전환 과정인지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전공 전환자가 심화 과정에 신청하는 등의 혼선을 방지해야 함.

2) 전공 전환 과정

- 전공 전환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훈련기관(산업정보학교, 폴리텍,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연수원 등)의 입문자용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함.
- 전공 전환을 위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에 참여했다라도 취업 전환은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능함.
 - ※ 학생의 직무적합도(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직무와의 적합성) 검증, 4주(20일) 이상의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참여, 채용 예정 산업체로 취업 전환에 대한 적부 심의(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예시]



구분	내용
우수 교육기관 연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혹은 기업, 기업협회가 주최하여 진행되는 연계 교육 혹은 학교에서 발굴한 우수 교육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현장실습임. • 우수 교육기관 연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함.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고졸 취업희망자 선호 직무와 기업이 기대하는 고졸인재 적합 직무의 균형을 갖춘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 ※ 참여 학생 모집·선발, 기관 및 기업 심의 등의 전반적인 운영은 별도 안내에 따름

제2장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개요

[업무 요약표]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p>교사</p>	<p>가. 기관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기관 발굴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기관 방문을 통해 현장실습 운영 적정성 확인 <p>나.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계획, 학생 선발방법, 학생 안전관리 적정성 등 확인하여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함. 학교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기관 선정 심사 및 승인 요청함. <p>다.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광역시교육청 승인 결과(기관등록)를 확인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 대한 안내(설명회, 가정통신문 등) 등을 통해 학생 선발을 추진함. 현장실습 실시 전 학생·학부모로부터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받고,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를 작성함. <p>라.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에 현장실습 출결일지 작성을 요청하고, 매달 말 회신을 통해 학생 개별 출결을 NEIS에 입력함. 참여 학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순회지도를 실시함. 	<p>서식 18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계획서</p> <p>서식 19 연계 교육기관 현지 실사 점검표</p> <p>서식 21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p> <p>서식 22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p> <p>서식 8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일지</p> <p>서식 23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보고서</p>
 <p>기관</p>	<p>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의 방문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현장실사 등에 협조함. 학교와 협의를 통해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수립함.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함. <p>나.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 안전·보건상에 위험 및 장애 요인을 확인하고 예방하도록 노력함. 현장실습(취업) 출결일지 서식 8 를 작성하여, 매월 말 학교에 제출함. 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의 순회지도 등에 협조함. 	<p>서식 18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계획서</p> <p>서식 22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p> <p>서식 8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일지</p>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p>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설명을 통해 교육정보를 확인하고 교육과정(기관)을 선택함. ◦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회원 가입함. (아이디, 비밀번호 등 확인)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함. ◦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의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 ◦ 교육 완료 후,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서식 13 작성 및 만족도 평가를 실시함. 	<p>서식 21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p> <p>서식 22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p> <p>서식 13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학생용 예시)</p>
 <p>광주광역시교육청</p>	<p>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기관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 발굴 포함)의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기관 승인 요청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 현장실습 운영 적정성, 현장실사(필요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기관을 최종 선정함. ◦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 후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해당 기관을 등록하고 이를 학교에 통보함. 	<p>서식 19 연계 교육기관 현지 실사 점검표</p>

제3장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절차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절차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기관 및 대상 학생 선정 등에 관한 운영 계획의 적절성 심의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승인 요청(학교) → 운영기관 승인 및 등록(광주광역시교육청)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체결(학교·학생·기관)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관련 서류 및 참여 학생 등록·관리(HIFIVE)(학교) → 교육 참여 및 순회지도(학생·학교) →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및 학생 만족도 등록(학교·학생)

-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의 운영계획서, 학생 선발 방법, 운영기관의 적정성과 채용 연계 전제 시 직무적합도 검증 기준과 방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 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운영기관 선정 심사와 승인을 요청함.
 - ※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승인 요청 시 필요 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별도 지침에 따름
 - ※ 연계 교육기관의 적절성은 연계 교육기관 현지실사 점검표 **서식 19**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음.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의 승인 요청을 토대로 운영기관 현장실사(필요시)를 통해 운영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최종 승인 여부를 학교에 통보하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해당 운영기관을 등록함.
 -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기관이 아닌 산업체 현장에서 채용형 현장실습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내용이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당 과정을 승인
- 학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승인 이후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참여하는 학생·학부모로부터 동의서 **서식 21**를 받고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서식 22**,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서식 18**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록하고 참여 학생도 함께 등록하여 운영·관리함.
- 학교는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일지 **서식 8**을 교육기관에 전달, 매월 말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작성한 **출결일지**를 최신 받아 나이스 출결에 반영(현실습 종료 후 취업 전환 학생도 졸업일 전까지 동일하게 운영).
 -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LMS를 매일 작성하고, 학교는 전화, SNS 등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학교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도 순회지도 **서식 23**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록·기록하고, 교육 종료 시 참여 학생은 LMS를 통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함.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의 등록서류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운영계획서, 순회지도 결과보고서이며 나머지 관련 서류는 학교 자체 보관함.

제4장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고려 사항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에 진학을 목적으로 참여하거나 단순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없도록 학생과의 충분한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특히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이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함.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중 전공전환 과정은 전공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으나,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추가로 참여하거나, 아무런 제한 없이 겨울방학 이전에 취업 전환은 불가함.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가능 기간은 개별 학생의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및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참여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개월(60일) 이내 참여가 가능함. 단, 3개월 이상의 현장실습이 필요하다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운영도 가능함.
- 채용연계를 전제로 하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모집단계에서부터 학생의 전공과 실습 과정상의 직무가 일치(전공심화과정)하거나 별도의 직무 적합도 검증 절차(전공전환과정)를 거쳐 4주(20일) 이상의 실습에 참여·이수하고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의 취업 전환 적부 심의를 통해 취업 전환이 가능함.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중 전공전환 과정을 통한 취업을 계획하는 경우, 채용연계를 전제*로 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되, 직무적합도 검증, 4주 이상의 실습,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취업 전환 적부 심의 완료 후에 취업 전환이 가능함(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전 취업 전환은 선도기업에 한하여 가능).
* 채용연계를 전제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전공전환 과정)은 계획 수립 당시 직무적합도 검증 기준 및 방법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시 순회지도를 실시해야 하며,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참여/ 후 취업 전환 시점은 참여 기업은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후, 선도기업은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가능함.
※ 취업 전환 한 학생을 대상으로 2월 말까지는 추수지도(이 경우 취업 학생 추수지도 결과보고서를 활용)를 실시함.
-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부서관 등의 경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작성 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을 적용하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적용함.
※ 단,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동시에 작성할 수 없음.
※ 채용을 이유로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부서관 관련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작성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작성, 직무적합도 검증, 현장실습지원위원회(선도기업 승인) 심의, 공인노무사의 현장실사에 대한 행정적 절차 생략이 가능함. 다만,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학교전담노무사 협조 하에 실시 가능
- 간호조무사, 말 조련(사육)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에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을 적용함.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직무 적합도 검증 절차]

절차	단계	주체	내용
1. 기준 및 방법 설정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학교 및 기관 (공동)	학교와 기관은 채용연계를 전제로 하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의 경우, 직무 적합도 검증을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설정 ※ 예) 관련 자격증 취득 확인, 관련 동아리 활동 내역 확인, 직업 기초능력평가 결과 연계성, 학생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면접 등
2. 기준 및 방법 심의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심의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지원위원회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직무 적합도 검증 절차의 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심의
3. 검증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학생모집	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승인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학생 직무 적합도 검증

Q&A

전공 전환 과정의 전공(비전공)으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가능 여부

Q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을 전공 전환 과정으로 진행한 학생이 자신의 주전공이 아닌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전공 전환 과정의 전공으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전공 전환 과정을 이수했다고 하여도 그것을 근거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추가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은 반드시 전공과 일치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타전공으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을 진행한 학생이 주전공으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공 전환 과정 교육에 대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 인정 여부

Q 전공 전환 과정에 참여 후 전공 전환 과정의 전공으로 선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겨울방학 전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A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선도기업이라고 해도 겨울방학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채용연계를 전제로 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되, 모집 단계에서 부터 전공이 일치하거나 별도의 직무 적합도 검증 절차를 거친 경우에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부터 선도기업으로 취업 전환이 가능합니다.

연계교육형 현장실습기관 선정 시 사전실사 필수 여부

Q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기관을 선정할 때 공인노무사 등이 참여한 사전실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A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실습이 이루어지며, 실제 산업현장에 나가지 않는 만큼 현장실습 운영기관에 대한 사전실사는 현재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임에도 산업 안전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기관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판단하는 경우 사전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서식 18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 본 서식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양식을 수정하거나,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양식 혹은 업체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가 있는 경우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교육기관명		
주소	기업	
	교육장소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현장실습 기간 및 시간		20○○.00.00. ~ 20○○.00.00. (584시간, 4개월)
현장실습 대상		직업계고 IT·SW 분야 졸업예정자
관련 직무분야		빅데이터 / 사물인터넷

※ 공공기관 연계 사업인 경우 관련 사업에 기관명, 사업명 작성

□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 현장실습 커리큘럼

구분	내용
과정명	빅데이터를 활용한 IoT 시스템 개발
분야	빅데이터 / 사물인터넷
목적	팀원들과 함께 해결하는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통한 인재개발
대상	직업계고 IT·SW 분야 졸업예정자
필요 역량	파이썬, DB프로그래밍, DB시각화
취득 역량	머신러닝 기반 분석 모델링, IoT 서비스 개발 등
관련 취업처	데이터분석 전문가, 데이터 엔지니어, IoT 시스템 전문가 등
프로그램 개요	빅데이터를 활용 IoT서비스 개발, 프로젝트형 IoT 서비스 개발

※ 여러 과정을 운영 시 칸을 추가하거나, 번호를 매겨서 표를 추가하여 작성

□ 현장실습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주차	프로그램 세부내역			교육 시간
	내용	방법	장소	
1주차	비파괴 검사 개론 , 안전, 보건, 직업기초능력교육	강의	601호 강의실	35
2주차	금속재료 , 용접 개론	실습	601호 강의실	35
총 현장실습 시간				

□ 대상 학생 모집(선발) 계획(전공전환 과정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직무적합도 검증 방법	①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② ...	
모집 및 선발 인원	모집 : 25명 , 선발 : 20명	
대상 학년 및 학과	3학년 스마트 기계과	
모집 기간	2000.0.0~2000.0.0	
선발 방법	서류 심사, 대면 면접 등	
모집 대상 학생		
순	학생 성명(학과-학년-반)	비고
1	홍00	관련 자격증 취득
2		
...		

서식 19 연계 교육기관 현지실사 점검표

※ 본 서식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사용하여야 함.

연계 교육기관 현지실사 점검표

교육기관명		대표번호			
담당자(직위)		담당자연락처			
주소					
과정명		기간(총시수)			

실사 항목	실사 항목	실사 결과					비고
		매우 우수 (9-10)	우수 (7-8)	보통 (5-6)	미흡 (3-4)	아주 미흡 (1-2)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진로와의 부합성 • 연계교육 협약 이행 가능 • 학생 부담 교육비의 적절성 						
시설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의 안전성 (구급조치, 피난대피로 확보 등) • 교육장의 청결·쾌적성 • 휴게 공간의 구비 • 주변 환경 유해성 없음 						
교육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목표 적합성 • 교육 내용 수준의 적절성 • 이론 및 실습 비율의 적절성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의 전문성(해당 분야 경력, 자격증 등) • 강사 1인당 학생 수(15명 이내) 						
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자재 적절성 • 실습 중 안전보호구 지급 • 교재의 적절성, 지급 여부 						
학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공간 존재 • 1일 및 시간 단위 출결 관리 • 실습일지 작성 관리 						

실사 항목	실사 항목	실사 결과					비고
		매우 우수 (9-10)	우수 (7-8)	보통 (5-6)	미흡 (3-4)	아주 미흡 (1-2)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관의 취업연계 실적 확보한 취업처의 적절성 						
합계							적절/부적절
가속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분리 여부 야간 전담관리자 배치 일과후 및 주말 관리방안 사용료의 적절성 						적절/부적절

※ 현장실사 결과 미흡 또는 아주 미흡인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적격 판정

※ 합계 점수 42/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승인 가능

총평	
----	--

점검일: 20○○년 00월 00일

점검자: _____(서명)

서식 20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승인 신청서

※ 본 서식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사용하여야 함.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승인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채용연계 <input type="checkbox"/> 채용비연계)				
<input type="checkbox"/> 연계 교육기관 일반 현황				
기업명(교육기관명)				
소재지	본사			
	실습장			
사업자등록번호		상시 근로자 수		
대표자명				
<input type="checkbox"/>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				
담당자(교육기관)		연락처		
현장실습 분야(과정명)				
현장실습생 주요 교육 내용	* 기급적 구체적으로 작성 • • •			
현장실습 기간 (일/시간)	(예시) 20일, 140시간	현장실습 인원		명(개교)
<input type="checkbox"/> 신청기관 관련 사항				
담당자		연락처	유선전화	
			핸드폰	
비고 (요청사항, 참고사항 등)				
위와 같이 202 학년도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승인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2000 . 00. 00. 00 고등학교장 (직인) </div>				

서식 21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실습학생	_____ 과 3학년 ____반 ____번 성명: _____
------	-----------------------------------

□ 현장실습 관련 확인 사항

실습 기관명	_____	담당자	_____
	_____	연락처	_____
소재지	_____		
실습 기간	20__ . ____ . ____ ~ 20__ . ____ . ____ ()일 ※ 일 운영시간: ____		
실습 과정명	_____	실습 장소	_____
실습 내용	_____		

위 본인과 보호자()는 위의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관련 확인 사항」 및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참여에 동의합니다.

20__년 ____월 ____일

학생: (인)

보호자: (인) (학생과의 관계:)

OO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2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 본 서식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양식 혹은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제1조(목적) 이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는 _____ 기관대표(이하 “연계 교육기관”이라 한다)와 _____ 학교 _____ 학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_____ 학교장 상호간에 현장실습 연계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계 교육기관에서 실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현장실습생”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간 및 장소) ① 기간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부터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로 한다.
②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연계교육기관”의 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의 경우 관련된 산업현장 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방법 및 절차) ①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은 연계 교육과정에 의거 “연계 교육기관”이 학교와 협의하여 작성한 연계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이 때, 연계 교육계획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필요한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 목적 및 목표, 교육훈련 내용 및 방법, 교육 담당자, 교육훈련 장소 및 시간, 교육훈련 대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습 연계 교육담당자와 학교의 교사가 참여하여 현장실습 연계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③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 또는 학교의 요청을 수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연계 교육기관의 의무) “연계 교육기관”은 교육 훈련이 내실 있게 실시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현장실습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실무중심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
2. 현장실습 연계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생”의 신체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실습과제를 부여할 것
3. 현장실습 연계 교육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제공할 것

4. 교육훈련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연계 교육 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실습생”을 성실하게 지도할 것
5. 학교가 현장실습 연계 교육의 이행 과정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 결과 드러난 개선 및 변경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6.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7. “현장실습생”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제6조(학교의 의무) ① 학교는 “현장실습생”의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에 앞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 내용, 계획, 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은 “연계 교육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출결 상황을 매일 관리해야 하며, 그 상황을 학교에 보고한다.

제7조(현장실습생의 권리) ① “현장실습생”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시 산업현장의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현장실습생”은 교육 기간 중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재해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현장실습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연계 교육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할 것
2. 연계 교육기간 동안 해당 교육기관의 질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3.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할 것

제9조(연계교육 시간과 휴식) ① 현장실습 연계교육 시간은 1일 7시간 이내로 하며, 주당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연계 교육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학습목적에 한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중 휴식시간은 교육훈련 1시간당 10분으로 한다. 단, 연속된 교육 훈련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③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연계 교육기관”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교육훈련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0조(현장실습생 특별보호) ①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해당하는 교육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현장실습생”이 여성인 경우)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결석을 인정해야 한다.

제11조(안전·보건상의 조치)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교육 실시, 교육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제12조(재해보상)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이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 보상을 한다.

제13조(중식 및 용품제공) ①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중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연계 교육기관”은 교육훈련기간 중 “현장실습생”에게 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용 공구, 안전보호구, 기타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③ 학교는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복리후생)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며, “현장실습생”이 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숙사 등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실습생”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전담 사감을 배치하여 교육훈련 이외의 시간에도 상시 보호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생”의 기숙사 출입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15조(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의 평가) “연계 교육기관”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교육훈련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한다.

제16조(포상)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의 교육훈련 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교육훈련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연계 교육기관”이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내용을 변경하려면 “현장실습생”과 “학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의 해지) ① “연계 교육기관”과 “현장실습생”은 연계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 훈련을 지속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 해지일 7일 전에 해지 예고를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 교육기관”과 “현장실습생”은 학교와 사전에 협의한다. 단, “현장실습생”이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 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취업) “연계 교육기관”은 연계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취업처 알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수료증명서) “현장실습생”의 연계 교육이 종료된 경우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수료 증명서를 교부한다.

제21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연계 교육기관”, “현장실습생”, “학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〇 〇 . 00. 00.

(연계 교육기관) 기관명	기관장	(인)
(현장실습생) 주소	성명	(인)
(학교) 학교명	학교장	(인)

서식 23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 보고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결 재	담당	부장	교감
기관명		지도일시	20 . . . (: ~ :)		
주소		전화번호			
현장 실습생	과 번, 성명 과 번, 성명				
영역	지도 내용	예	아니오	비고	
교육 운영	1. 당초 수립된 운영 계획과 교육과정 목표에 부합하게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가?				
	2.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에 제시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가?				
	3. 현장실습생의 출결 사항에 대한 확인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4. 사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5.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이 양호한가?				
	6. 교육담당자가 지정·배치되어 현장실습생을 교육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현장 실습생	1. 현장실습생은 성실하게 실습에 임하고 있는가?				
	2. 현장실습생은 교육기관에서 성실하게 잘 적응하고 있는가?				
	3. 현장실습생의 건강상태는 양호한가?				
	4. 현장실습생의 심리상태는 양호한가?				
	5. 안전사고, 권익침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가 있는가?				
	6. 안전사고, 부당대우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교육기관	7. 통학 또는 기숙사 생활에서 안전사고 요인은 없는가?				
	1. 현장실습생의 출결 상황을 확인하여 출결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있는가?				
	2. 현장실습생 생활지도 및 상담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통학 경로 및 기숙사 시설의 안전사고 위험요인은 없는가?				
	4. 실습장 내 시설 안전, 안전보건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5.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절차(학교 담당자, 학부모 비상연락망 구축)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는가?				

현장실습 실태	<p>* 현장실습생 대상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p> <p>1. 현장실습 시간 1일 ()시간</p> <p>2. 안전사고 발생 여부 유() 무()</p> <p>3. 위반사항:</p>					
<p>■ 학생 및 기업체 면담 내용</p>						
교육기관면담 내용						
현장실습생 면담내용 및 전달사항						
종합의견 (애로사항)						
학생 만족도	참여 실습생의 교육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5	4	3	2	1
구분	소속(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	
보고자						
동행자						
<p>상기와 같이 순회지도 결과를 보고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직위: 성명: 인</p>						



부록

[부록 1] 현장실습생의 안전·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부록 2] 현장실습 운영 관련 법규



부록1

현장실습생의 안전·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방안	세부 내용	관련 자료 찾기									
<p>현장실습 사전 준비 지원 강화</p>	<p>1) 현장실습운영 위원회 운영기준 정비 및 학생 참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위원, 학부모, 학생, 산업체,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전담노무사, 산업안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table border="1" data-bbox="323 610 1074 852"> <thead> <tr> <th>구분</th> <th>구성 기준</th> <th>정족수</th> </tr> </thead> <tbody> <tr> <td>현장실습 운영위원회</td> <td>교원, 학부모, 학생, 노무사, 산업체, 현장실습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각각 1명 이상 필수로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td> <td>구성원 2/3 이상 참여</td> </tr> <tr> <td>현장실습운영 소위원회</td> <td>노무사를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td> <td>구성원 1/2 이상 참여</td> </tr> </tbody> </table> <p>! 학교전담노무사는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단,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 한해서 서면 의견 제출로 참석 대체 가능)</p> <p>* 학생: 3학년 현장실습 대상 학생 중 대표성을 갖는 학생 (학생 중 선발, 학생자치회장, 기타 대표 학생 등)</p> <p>* 학교전담노무사: 교육청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지정한 담당자(해당 공문 확인)로서,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참여, 기업 사전 현장실사, 현장실습생 사전교육, 현장실습 기업 지도·점검 지원, 선도기업 코칭, 학생 순회지도 지원, 현장실습생 권익 침해 구제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p> <p>2)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의 학교·기업 공동 참여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프로그램 수당을 교사 및 기업관계자 대상으로 프로그램당 각각 5만 원 이내로 지급 <p>3) 학교·기업 컨설팅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시·도 현장실습 컨설팅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학교 및 기업 대상 컨설팅을 통해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 및 인식 제고 실시 <p>4) 현장실습 평가 내실화 및 환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는 자체진단 실시(전체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 및 진단), 만족도조사·평가 결과 및 시사점 등을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차년도 운영 계획에 반영 - 실습기업 정보 및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 자체진단 결과를 소속 재학생·학부모에 공개 	구분	구성 기준	정족수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교원, 학부모, 학생, 노무사, 산업체, 현장실습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각각 1명 이상 필수로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	구성원 2/3 이상 참여	현장실습운영 소위원회	노무사를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	구성원 1/2 이상 참여	<p>· ‘현장실습운영계획 수립’ 세부 운영 내용 확인)</p> <p>예시 1 현장실습운영위원회구성</p>
	구분	구성 기준	정족수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교원, 학부모, 학생, 노무사, 산업체, 현장실습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각각 1명 이상 필수로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	구성원 2/3 이상 참여									
현장실습운영 소위원회	노무사를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	구성원 1/2 이상 참여									

방안	세부 내용	관련 자료 찾기
<p>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강화</p>	<p>1) 사전 현장실사 강화 - 모든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에 대해 노무사가 참여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유해·위험 업종(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은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 참여 확대 -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한 공인노무사 및 산업안전전문가(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그 결과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지원위원회 및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제출 -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지원위원회 및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전 현장실사 결과를 선도기업 지정, 현장실습 가능 여부등의심에 활용</p> <p>2) 고용부 지도·근로감독 - 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 지도(컨설팅)·근로감독 실시</p> <p>3) 중앙단위 정기 지도점검 - 중앙단위 지도점검 시 교육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학교의 지침(매뉴얼 등) 준수 여부,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업종 중심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점검 및 지도</p>	
<p>학생에 대한 산업안전· 권익보호 교육 강화</p>	<p>1) 사전교육 의무화 -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제도, 실습생의 권리·의무·책임,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취업 전환 후 기초노동법 등 사전 교육 실시 권장 - 실습 직전 특별교육(의무) 신설 및 소규모 밀착형 교육 확대</p> <p>2) 현장실습 동아리 지원 - 업종별 위험요소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는 프로젝트형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 동아리 지원</p> <p>3) 학교전담노무사 제도 운영 - 모든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에 대해 노무사가 참여한 현장실사를 실시, 유해·위험 업종(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은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 참여 확대 - 전체 직업계고에 학교전담노무사를 배정하여 현장실습과 노무관계 등에 대한 상시적 상담과 관리구제 지원, 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 및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참여, 선도(참여)기업 사전실사 참여, 학생 및 교원 교육 활동 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교육 실시’ 세부 운영 내용 확인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 세부 운영 내용 확인
<p>현장실습 기간 중 밀착형 권익보호 지원</p>	<p>1) 신고·상담 강화 - 실습생 대상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확대하고, 공인노무사와 연계하여 신고 즉시 권익구제·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지원</p> <p>2) SNS 모니터링 활성화 - 실습 기간 중 학교 취업지원관·교사 주관으로 SNS(단체톡 등)를 활용한 현장 실습생 모니터링을 활성화</p> <p>3) AI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이 작성한 실습일지를 AI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으로 확인 하여 실습생에 대한 권익침해 및 위험징후를 감지, 현장실습생의 안전관리를 강화 - 실습일지(LMS) 분석 결과 권익침해 및 위험징후 감지 시 학교 관계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되어 현장실습생 상시 모니터링 즉각 조치</p>	

I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개요

II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생의 개요

III 전계 귀농형 현장실습생의 개요

부록

부록2

현장실습 운영 관련 법규

법령	세부 내용	해석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법률 제 20786호, 2025.3.18., 일부개정]	제7조(현장실습) ①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업계고 학생은 선택에 따라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가 가능함.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3. 18.>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도교육청에서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학교에 안내하여야 함.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교육감이 설치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가 됨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기준 및 여건을 조성하는 근거가 됨

법령	세부 내용	해석
	<p>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해당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p> <p>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 중에서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성, 현장실습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 현장실습 여건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p>	<p>◦ 시·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가 마련됨.</p> <p>◦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p>
<p>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법률 제 20786호, 2025.3.18., 일부개정]</p>	<p>제9조(현장실습계약 등)</p> <p>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p> <p>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27조(과태료)</p> <p>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다음 각 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현장실습 기간 	<p>◦ 현장실습 계약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함.</p> <p>또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p> <p>과태료의 세부기준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에 근거함.</p>

법령	세부 내용	해석
	<p>나. 현장실습 방법 다. 담당자 배치 라. 현장실습 수당 마. 안전·보건상의 조치 바.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p> <p>제26조(벌칙) 제9조의2를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현장실습 시간 미준수 시 형사처벌의 대상 됨</p> <p>· 현장실습 시간 미준수 시 학교와 시·도 교육청은 선 학생보호 조치 후 형사처벌 절차(고발)를 하여야 함.</p>
<p>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법률 제 20786호, 2025.3.18., 일부개정]</p>	<p>제9조의3(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 기업현장교사의 근거가 됨.</p>
	<p>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보 2.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 지도에 관한 협조 4. 현장실습 산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p>	<p>· 현장실습 산업체는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p>

법령	세부 내용	해석
	<p>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p> <p>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 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p> <p>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p>	<p>◦ 학교는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산업체 현장 실습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함.</p>
	<p>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p> <p>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본다. <개정 2018. 3. 27. 2023. 4. 18></p> <p>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를 각각 준용한다.</p>	<p>◦ 현장실습생에게도 ‘18세 미만 유해·위험한 사업 사용금지’, ‘갱내근로의 금지’ 등 의무 부과</p> <p>◦ 직장 내 괴롭힘 및 강제근로 폭행 금지 등 현장실습생 보호 조치 근거가 됨</p>
<p>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0 -248호)</p>	<p>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p> <p>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p> <p>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p> <p>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 실습 운영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개정 2018.4.19.></p> <p>② 현장 실습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p> <p>아) 학교는 실습 관련 과목을 지도할 경우 사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 장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p>	<p>◦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동일하게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명시함.</p>
<p>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법률 제 20523호, 2024.10.22., 일부개정]</p>	<p>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p> <p>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p> <p>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p>	<p>◦ 현장실습생이 산재를 입은 경우 근로자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으로 규정함.</p>

I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개요

II 산업체 채용 현장실습의 유형

III 연계·대체형 현장실습의 유형

부록

법령	세부 내용	해석
	<p>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 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p> <p>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 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현장실습생이 실제 지급받은 수당 총액에 보험요율을 적용 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상의 최저기준을 설정 (고노부 고시 제2018-69호)</p>
<p>산업안전 보건법 [법률 제 20522호, 2024.10.22., 일부개정]</p>	<p>제166조의 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p>	<p>◦ 사업주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현장 실습생의 유해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특례조항으로 규정함.</p>
<p>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 20786호, 2025.3.18., 일부개정]</p>	<p>제2조 제5호(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p> <p>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1개항목 이하 생략)</p> <p>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 물질 사용 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p>◦ 청소년 고용이 불가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현장실습 및 취업에 대한 금지를 규정함.</p>

법령	세부 내용	해석
<p>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12.3., 타법개정]</p>	<p>제6조(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범위)</p> <p>①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숙박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은 제외하며,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숙박업의 경우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한 업소에서 해당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다.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휴양펜션업 마.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가목은 제외한다) 2.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3.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의 경우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한 업소에서 해당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둠</p>

I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개요

II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의 유형

III 연계 근태형 현장실습의 유형

부록

부칙

1. 이 매뉴얼은 2025년 4월 30일부터 적용합니다.
2. 이후 매뉴얼 개정 전까지는 이 매뉴얼을 적용합니다.

2025학년도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매뉴얼 서식 목차

번호	내용	페이지
서식 1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188
서식 2	현장실습(채용) 의뢰서(예시)	189
서식 3	현장실습 선도기업 신청서	190
서식 4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191
서식 5	현장실습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195
서식 6	현장실습표준협약서	196
서식 7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199
서식 8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일지(예시)	200
서식 9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201
서식 10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예시)	203
서식 11	현장실습 사안 보고서	204
서식 12	현장실습 복교 의견서(예시)	205
서식 13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용 예시)	206
서식 14	현장실습 평가서(기업용 예시)	207
서식 15	취업(전환) 동의서	208
서식 16	취업 학생 추수지도 결과보고서	209
서식 17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보고서(예시)	210
서식 18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211
서식 19	연계 교육기관 현장실사 점검표	213
서식 20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승인 신청서	214
서식 21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215
서식 22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216
서식 23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219
참고	기업현장교사 자격 확인서	221

서식 1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산업체명					
주소	본 사				
	실습장				
사업자등록번호				상시 근로자수	명
업태				종목	
4대 사회보험 가입 상황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다발기업 여부	아님[]	해당[] 내용:			
유해사업장 여부	아님[]	해당[] 내용:			
채용담당자	성명		연락처		
	부서		직위		
	이메일		팩스		
현장실습 및 채용 이력	없음[]	있음[] 내용:			
현 장 실 습					
산업체 자체 교육프로그램 유무	없음[]	있음[] 교육내용:			
직무내용	직무분야 [NCS 24개 분야]		직무내용		
자격 요건					
현장실습 예정 인원					
현장실습 기간	0000년	월	일	~	0000년 월 일
주 5일 교육 확인	Y <input type="checkbox"/> / N <input type="checkbox"/>		주 2일 휴무일:		요일, 요일
현장실습 합계	총	일		시간(1일 기준)	
현장실습 수당 지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월/일/시 원)		부지급	<input type="checkbox"/>	수당 지급일 일
현장실습 지원	산재보험 적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용, <input type="checkbox"/> 미적용			
	중식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미제공		실습생 부담:	
	실습재료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미제공		실습생 부담:	
	기숙사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실습생 부담:	
	통근버스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실습생 부담:	
현장실습 후 채용 전환 계획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취 업					
채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기타[] 내용:		
채용 직무					
채용 조건	근무시간				
	근무요일			휴무일	
	급여			원 / 월	
	일학습병행제[]	산업지원병역일터[]		중식[]	기숙사[]
	계약학과[]	후학습 지원[]		통근버스[]	수당[]
채용 준비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학교장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사본[]		기타[]	
방 문 자	성 명			연락처	
방 문 일	2000년	월	일		

현장실습(채용) 의뢰서

회사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설립 일자	
업태		종목	
주요 사업 내용		홈페이지	
자본금		연매출액	억 원
직원 수	명 (생산직 근로자 수 명) 남: 명, 여: 명		

채용 담당자	부서		전화	
	직책		Fax	
	성명		휴대폰	
			E-Mail	

모집 직종	생산직군(지원 부서 포함)	모집인원	남 : 명, 여 : 명
근무부서		모집 희망 학과	0000과 남(), 여()
직무내용 (구체적)			0000과 남(), 여()
			0000과 남(), 여()
			0000과 남(), 여()
근무 형태	주 5일(), 주 6일(), 격주 토요일(), 기타 ()	자격요건 (우대자격)	관련분야 자격()
근무 시간	() 주간 / 야간(주간 근무) 주·야간교대(없음)	접수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타()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0), 고용보험(0), 산재보험(0), 건강보험(0)

실습 수당 및 급여	실습 수당	시급 / 월급 ()원	상 여	%
	급여	시급 / 월급 / 연봉 ()원		
근로 조건	인턴 여부	유(개월), 무()		
	실습 종료 후 취업 전환 여부	유(), 무()		
	병역특례 기업 지정 여부	유(), 무()		
	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스(), 중식 제공()		
	회사교통편(대중교통)			
기타 요구사항				

요청일: 년 월 일
회사명: (직인)

□ 산업체 일반 현황

기업명			
소재지	본사		
	실습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업형태	
주 업종		주 생산품	
대표자명		대표번호	
자본금, 매출액, 신용평가 등급 등		기업의 재무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적으로 작성	
회사 개요		상시 근로자 수	
※ 기업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사업자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작성 • • •			

□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

담당자(직위)		연락처	
현장실습 분야	NCS 분야(24개)		
현장실습생 주요 직무	*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 • • •		
현장실습 기간 (일/시간)	(예시) 20일, 140시간	현장실습 수요인원	명
현장실습 후 채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전원 채용, <input type="checkbox"/> 일부 채용(%)		

□ 신청교 관련 사항

관련 학과(전공)			
담당자	연락처	유선전화	
		핸드폰	
비고 (요청 사항, 참고 사항 등)			

위와 같이 0000학년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위한 선도기업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00. 00.
 ○○ 고등학교장 (직인)

서식 4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기업명				
소재지	본사			
	실습장			
기업현장교사				
현장실습 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일)		
현장실습 제외일/기간(사유)		0일 / 2000. 00. 00. ~ 2000. 00. 00. (사유:)		
직무분야		NCS 대분류(24개)		
실습직무 및 주제		NCS 세분류		
현장실습 목표				
현장실습 시간 편성	구분	내용영역(능력단위)	입문교육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의무교육	• •		/
	NCS능력단위	•		
	기업특화교육	•		
	평가	•		수시
	총시간			
기업현장교사 지도방식		<input type="checkbox"/> 1 : 1 전담 <input type="checkbox"/> 비전담 1 : n	비전담 지도 사유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서명
학교 담당 교사				
기업담당자				

※ 프로그램 개발비는 학교 담당 교사 1명과 기업 담당자 1명에게 각각 지급할 수 있음.

□ 현장실습 요구분석

학교 분석			
학과(전공)		재학생 현황	00명
졸업 후 주요 진출분야			
관련 교과목		관련 NCS 능력단위	
현장실습 필요직무 (NCS능력단위)			
기업 분석			
기업명		대표자	
재직자 수		연매출액	
주요 업종		수행직무	NCS 세분류
현장실습 활용 주요시설 및 기자재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내용			
현장실습 가능 직무* (NCS능력단위 및 기업특화)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을 참고하여 작성

□ 현장실습 운영 및 평가 계획

현장실습 목표				
구분	내용 영역(능력단위)	방법	입문교육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의무교육				
NCS 능력단위				
기업특화교육				
평가			수 시	
교육 시간 합계				
총 현장실습 시간				

*NCS 능력단위 혹은 기업특화 직무능력

※ 입문교육 시간은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으로 편성해야 함(단, 의무교육 12시간 이상 포함하여 운영).

※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은 현장실습 시작과 함께 실시하여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작업장 내에서 직무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 기업현장교사와 현장실습생은 1:1 지도를 원칙으로 함.

현장실습 평가서

소속	OO고등학교 OO과 0반 00번					이름				
평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득점	* 평가항목의 배점함에 ○ 표 하고 득점란에 기재 총점: ()/100		
현장실습 과제수행		10	9	8	7	6	/40			
		10	9	8	7	6				
		10	9	8	7	6				
		10	9	8	7	6				
태도		10	9	8	7	6	/30			
		10	9	8	7	6				
		10	9	8	7	6				
안전관리		10	9	8	7	6	/30			
		10	9	8	7	6				
		10	9	8	7	6				
평가준거	- 매우 우수: 평가 항목을 아주 잘 수행한/발휘한 수준 - 우수: 평가 항목을 잘 수행한/발휘한 수준 - 보통: 평가 항목을 보통 수준으로 수행한/발휘한 수준 - 미흡: 평가 항목을 약간 수행한/발휘한 수준 - 매우 미흡: 평가 항목을 전혀 수행하지/발휘하지 않은 수준									
출결	결근 일수						일	/100	총점: ()/100	
* 1일 결근마다 10점씩 감점. 단, 증빙서류가 첨부된 병결은 감점하지 않음. *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회는 결근 1일로 처리										
기간	2000 . . . ~ 2000 . . .									
총평										
현장실습 산업체: 평가자 직위: 성명: (인)										
OO고등학교장 귀하										

현장실습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체험형 연계 교육형 채용형)

□ 현장실습 기관 일반 현황

기업명(기관명)		해당 여부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부서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소재지	본사		
	실습장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 수	
기업(기관) 담당자명		연락처	

□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

현장실습 NCS 직무분야 (현장실습 과정명)			
대상자명		대상자 수	명
현장실습 기간 연장	변경 전	2000. 00. 00. ~ 2000. 00. 00.(60일)	
	변경 후	2000. 00. 00. ~ 2000. 00. 00.(00일)	
	연장 사유		

□ 신청학교 관련 사항

신청학교명		연락처	사무실	
담당자명			휴대폰	
비고 (요청사항, 참고사항 등)				

위와 같이 2000. 학년도 현장실습 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2000. 00. 00.
○○ 고등학교장 (직인)

(교육부 고시 제2018-165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_____기관대표(이하 “현장실습기관”이라 한다)와 OO공업고등학교 _____학생(또는 훈련원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_OO공업고등 학교장(또는 훈련원장)(이하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상호 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장실습”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며, “현장실습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달리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① 현장실습 기간은 0000년 ____월 ____일부터 ~ 0000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이론 등의 교육 훈련의 경우 산업현장시설 내·외부의 별도의 시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현장실습방법 및 절차) ① 현장실습은 교육과정(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현장실습기관”이 “직업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 현장실습계획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필요한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 목적 및 목표, 교육훈련 내용 및 방법, 현장실습담당자, 교육훈련 장소 및 시간, 교육훈련 대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제5조제4호에 따른 산업체 현장실습 담당자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사(또는 직업교육훈련교사)가 참여하는 현장실습협의체를 구성하며, 현장실습협의체는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현장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현장실습생이 적어 현장실습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현장실습기관”과 직접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③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요청 시 매월 1회 이상 “현장실습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 기관에 출석하여 직업교육훈련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현장실습기관의 의무)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현장실습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할 것
2. 현장실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생”의 신체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현장실습과제를 부여할 것
3.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제공할 것
4.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현장실습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할 것
5.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 결과 드러난 개선 및 변경사항을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6.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7. “현장실습생”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제6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의무)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 협약 내용, 계획, 방법, 준수 사항, 관련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교육 내용은 “현장실습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출결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7조(현장실습생의 권리) ①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시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현장실습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할 것
2.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장 질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3.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할 것
4. 현장실습 도중 알게 된 “현장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제9조(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① 현장실습 시간은 주 35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일에 7시간(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 ____일은 ____시간)으로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 2에 따라 1일 7시간 이내, 주당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되,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현장실습 학습목적에 한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1일 1시간 연장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 비동의

② 현장실습 중 휴식시간은 ____분(집체교육훈련 시 1시간당 ____분)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현장실습 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현장실습 시간 중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현장실습기관”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현장실습생 특별보호) ①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현장실습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현장실습기관”은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제72조에 따라 “현장실습생”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생”이 여성인 경우)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결석을 인정해야 한다.

제11조(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 사항을 조치한다.

제12조(재해보상)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다만, “현장실습기관”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

제13조(현장실습 수당 및 용품 등) ① “현장실습기관”은 식비, 교통비, 복지비 등을 포함한 현장실습 수당을 다음과 같이 매월 ____일에 지급한다. 다만,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 일수에 비례하여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 다음 -

■ 0000년 00월 00일부터 ~ 0000년 00월 00일까지 ()원/시간

② 중식의 제공 여부는 “현장실습기관”의 사규 또는 사업장 관행을 준용한다.

③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기간 중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용 공구, 안전보호구,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4조(복리후생)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15조(현장실습의 평가) “현장실습기관”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게 통보한다.

제16조(포상)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장실습 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현장실습내용의 변경) 현장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 내용을 변경하려면 “현장실습생”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현장실습계약의 해지) ①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지일 ____일 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다만, “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현장실습중단 방지)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 산업체로 “현장실습생”을 알선하는 등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취업)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수료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수료증명서) ① “현장실습생”이 제4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이수 후 “현장실습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요청 시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현장실습기관”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현장실습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현장실습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요청 시 “현장실습생”이 이미 이수한 내용과 기간 등을 기입한 증명서를 “현장실습생”에게 교부한다.

제2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0000. 00. 00.

(현장실습기관) 기 관 명

대표이사 (인)

(현장실습생) 주 소

성 명 (인)

(직업교육훈련기관) 0000 고등학교

교 장 (인)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실습 학생	_____과 3학년 ____반 ____번 성명: _____
-------	----------------------------------

□ 현장실습 관련 확인 사항

실습 업체명		연락처	
소재지			
실습 기간	20__ . . . ~ 20__ . . . (총 시간)	연장실습 동의 여부 (1일 1시간 이내)	동의, 비동의
실습 내용			

위 본인과 보호자()는 위의 「현장실습 관련 확인 사항」 및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실습 기간 중 프로그램에 따라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 및 수당(현장실습 지원금 포함) 지급에 동의합니다.

■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 친권자(후견인)로서의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학생의 보호자(또는 학부모, 후견인, 법정대리인)로서 학생이 현장실습과 연계하여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만약 지원금 자격요건 미충족, 허위 작성, 오지급 등 지원금 환수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대상 자격 박탈 및 지원받은 금액의 환수(제재부가금 등 포함)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__년 월 일

학생: (인)
보호자: (인) (학생과의 관계:)

OO고등학교장 귀하

()월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일지

1. 기본 사항

산업체명		담당자 확인	(인)
------	--	--------	-----

2. 출근 상황

연번	학과	반	번호	성명	근태상황(일자 및 결과)
예시	000과	1	10	홍길동	10/11(결근), 10/20(자각10:00), 10/21(조퇴13:00)
1					
2					
3					
4					
5					
6					
7					
8					
9					
10					

※ 근태상황은 매월 초에 학교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 팩스 : - 전화 :

※ 근태상황은 학교 출결상황에 반영되오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태상황 중 병으로 인한 결근, 지각, 조퇴의 경우는 질병으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장 귀하

순회지도 결과 보고서

		담당	부장	교감
		20 (: ~ :)		
산업체명	지도일시			
주소	전화번호			
현장실습생	과 번, 성명 과 번, 성명			
영역	지도내용	예	아니오	
현장 실습 협약	1.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가 잘 보관되고 있는가?			
	2.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실습이 운영되고 있는가?			
	가. 현장실습 기간 준수			
	나. 현장실습 입문교육 실시 (전체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 실시, 의무 교육 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 현장실습 프로그램 준수			
	라. 기업현장교사 배치			
	마. 현장실습 수당 지급			
	바.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준수			
현장 실습생	1. 현장실습생은 성실하게 실습하고 있는가?			
	2. 현장실습생은 산업체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가?			
	3. 현장실습 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는가?			
	4. 현장실습생의 건강상태는 양호한가?			
	5. 현장실습생의 심리상태는 양호한가?			
	6. 안전사고, 부당대우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현장 실습 운영	1. 현장실습이 본래의 목표와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가?			
	2. 현장실습생에 대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현장실습 산업체 고용주가 현장실습에 대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4.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실습생과 동일사업장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는가?			
	5.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 등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가?			
	6. 현장실습 환경 및 여건은 안전보건 상 양호한가?			

현장실습 실태	<p>* 현장실습생 대상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p> <p>1. 현장실습 시간 1일 ()시간, 1주 ()시간</p> <p>2. 안전사고 발생 여부 유 () 무 ()</p> <p>3. 위반사항: ① 없음 () ② 시간초과 () ③ 야간실습 () ④ 휴일실습 () ⑤ 유해위험업무 () ⑥ 생리휴가 미실시 () ⑦ 성희롱 등 () ⑧ 폭행·폭언 등()</p> <p>- 조치: 시정권고 () 근로감독 요청 () 과태료 부과 요청 () 복교 ()</p> <p>- 결과: 시정완료 () 근로감독 실시 () 과태료 부과 () 복교 ()</p>
------------	---

■ 학생 및 기업체 면담 내용

산업체 면담내용						
학생 면담내용 및 전달사항						
종합의견 (애로사항)						
학생 만족도	참여 학생의 기업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5	4	3	2	1
구분	소속(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
보고자						
동행자						

상기와 같이 순회지도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①

현장실습 사안보고서(□최초보고 □최종보고)

학교	()고등학교 (☎ 000 - 000 - 0000)		
학생	()과 ()학년 ()반 ()번 성명()		
기업체	기업명(업종)	○○산업(○○○○업), 선도기업 지정(00.00.00.)	
	주소(전화)	○○광역시 (☎ 000 - 0000 - 0000)	
	실습 기간	20○○.00.00. ~ 20○○.00.00.(취업 전환 0000.00.00.-~)	

사안명	○○로 인한 ○○ ○○○○ 사고		
발생일시	20○○.00.00.() 00시 00분	장소	○○조립 라인
<p>〈사고경위〉 사안 발생의 동기, 경과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습장 내의 구체적 상황, 목격자, 최초 조치 사항 등 2. 3. 			
<p>〈상황 발생 후 조치내용〉 시간에 따라 구체적·개조식으로 작성, 근로감독, 산재 등 포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0000. 00. 00:00 김00 학생 모친에게 연락, 교육청에 유선 보고 받음 2. 0000. 00. 00:00 00병원에 00학교 취업지원부장 방문하여 학생 상태 파악 3. 0000. 00. 00:00 검사 결과 0주간 입원 치료 필요 			
<p>〈관련 당사자 입장〉 학생, 학부모, 기업체, 학교의 입장 서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 : 치료 후 경과에 따라 학교 복귀 등 판단 예정 2. 기업 : 학생 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 세울 예정 3. 학부모 : 치료 우선 진행 후 현장실습 지속 여부 판단 예정 4. 학교 : 학생 치료에 최우선 지원, 학생 학부모 방문 및 위로 진행 			
<p>〈최종 결과〉 ※ 최종 보고 시 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회복 여부: 2. 복고 여부: 3. 산재처리 여부: 			
보고일자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보고자(직·성명)	(직급) ○○○

현장실습 복교 의견서

		결 재	담 당	부 장	교 감
소속	과 / 학년 반 번		학생 성명		
실습처명			실습처 전화		
기업현장교사 성명			기업현장교사 연락처		
실습 기간			복교일		
복교 배경 및 과정(구체적으로 작성)					
기업현장교사 의견(OO부 김OO)					
학교 담당자 의견(OO부 이OO)					

※ 복교 배경이 기업에 있을 경우, 학교에서 기업 방문 후 '기업현장교사 의견'란에 기록 가능

보고일시 년 월 일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이름	(인)	학과명				
실습기관명		실습 기간				
실습개요 및 목표						
실습내용						
현장실습 만족도	항목별 문항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기업(기관)의 시설과 환경은 만족스러운가?	5	4	3	2	1
	실습내용은 전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5	4	3	2	1
	실습장의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5	4	3	2	1
	현장실습 전담 지도자는 교육에 충실하였는가?	5	4	3	2	1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당 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가?	5	4	3	2	1
향후 진로계획						
건의사항	※ 현장실습 만족도 불만족(2 또는 1) 시 필수 기재					

현장실습 평가서

소속	○○고등학교 ○○과 0반 00번					이름			
평가표									
평가 영역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득점	* 평가항목의 배점항에 ○표하고 득점란에 기재 총점:() /100	
현장 실습 과제 수행	<i>과자류/빵류제품 생산작업준비</i>	10	9	8	7	6	/40		
	<i>과자류/빵류제품 반죽정형</i>	10	9	8	7	6			
	<i>과자류/빵류제품 반죽익힘</i>	10	9	8	7	6			
	<i>과자류제품 재료혼합 및 포장</i>	10	9	8	7	6			
태도	성실성, 책임감	10	9	8	7	6	/30		
	협동심	10	9	8	7	6			
	사규 및 직장예절 준수	10	9	8	7	6			
안전 관리	안전관리 숙지	10	9	8	7	6	/30		
	안전수칙 이행	10	9	8	7	6			
	장비 및 기구 정돈	10	9	8	7	6			
평가 준거	- 매우 우수: 평가 항목을 아주 잘 수행한/발휘한 수준 - 우수: 평가 항목을 잘 수행한/발휘한 수준 - 보통: 평가 항목을 보통 수준으로 수행한/발휘한 수준 - 미흡: 평가 항목을 약간 수행한/발휘한 수준 - 매우 미흡: 평가 항목을 전혀 수행하지/발휘하지 않은 수준								
출결	결근 일수	일					/100	총점:()/100	
	* 1일 결근마다 10점씩 감점. 단, 증빙서류가 첨부된 병결은 감점하지 않음. *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회는 결근 1일로 처리								
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총평									
현장실습 산업체:		평가자 직위:			성명:		(인)		
○○고등학교장 귀하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보고서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산업체명		현장실습 기간 ~		
주소		전화번호			
현장실습생					
영역	확인 사항			예	아니오
실습일지 (LMS) 모니터링 확인	1. LMS 모니터링 결과 애로사항이 있는가?				
	애로사항 종류 및 원인 파악:				
순회지도 결과 보고서 확인	2. 순회지도 결과 보고서에 '아니오'로 체크된 항목이 있는가?				
	'아니오'로 체크된 항목과 그 이유:				
	3. 안전사고나 권익침해 위반사항에 체크된 항목이 있는가?				
	안전사고 혹은 권익침해 위반사항:				
조치 및 결과: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학생용) 확인	4.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의 만족도에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에 체크된 항목이 있는가?				
	'불만족'의 이유:				
현장실습 평가서 (기업용)확인	5. 학생을 평가한 영역 중에 '미흡'에 체크된 항목이 있는가?				
	'미흡'에 체크된 항목 및 이유(기업 평가자와 연락하여 기록):				
현장실습 자체진단 결과	학생이 현장실습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운점은?				
	학생이 현장실습 종료 후에 느낀점은?				
	학생의 개선요구 사항은?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교사의 총평 및 차년도 실습 시 시사점은?				
상기와 같이 현장실습 산업체의 자체진단 결과를 보고합니다.					
20○○년 00월 00일					
				현장실습 담당교사	성명:

㉠

※ 학교 현장 상황에 맞춰 수정사용 가능함

서식 18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 본 서식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양식을 수정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양식 혹은 업체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가 있는 경우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교육기관명		
주소	기업	
	교육장소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현장실습 기간 및 시간		20○○.00.00. ~ 20○○.00.00. (584시간, 4개월)
현장실습 대상		직업계고 IT·SW 분야 졸업예정자
관련 직무분야		빅데이터 / 사물인터넷

※ 공공기관 연계 사업인 경우 관련 사업에 기관명, 사업명 작성

□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 현장실습 커리큘럼

구분	내용
과정명	빅데이터를 활용한 IoT 시스템 개발
분야	빅데이터 / 사물인터넷
목적	팀원들과 함께 해결하는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통한 인재개발
대상	직업계고 IT·SW 분야 졸업예정자
필요 역량	파이썬, DB프로그래밍, DB시각화
취득 역량	머신러닝 기반 분석 모델링, IoT 서비스 개발 등
관련 취업처	데이터분석 전문가, 데이터 엔지니어, IoT 시스템 전문가 등
프로그램 개요	빅데이터를 활용 IoT서비스 개발, 프로젝트형 IoT 서비스 개발

※ 여러 과정을 운영 시 칸을 추가하거나, 번호를 매겨서 표를 추가하여 작성

□ 현장실습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주차	프로그램 세부내역			교육 시간
	내용	방법	장소	
1주차	비파괴 검사 개론 , 안전, 보건, 직업기초능력교육	강의	601호 강의실	35
2주차	금속재료 , 용접 개론	실습	601호 강의실	35
총 현장실습 시간				

□ 대상 학생 모집(선발) 계획(전공전환 과정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직무적합도 검증 방법	①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② ...	
모집 및 선발 인원	모집 : 25명 , 선발 : 20명	
대상 학년 및 학과	3학년 스마트 기계과	
모집 기간	2000.0.0~2000.0.0	
선발 방법	서류 심사, 대면 면접 등	
모집 대상 학생		
순	학생 성명(학과-학년-반)	비고
1	홍○○	관련 자격증 취득
2		
...		

서식 19 연계 교육기관 현지실사 점검표

※ 본 서식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사용하여야 함.

연계 교육기관 현지실사 점검표

교육기관명		대표번호	
담당자(직위)		담당자연락처	
주소			
과정명		기간(총시수)	

실사 항목	실사 항목	실사 결과					비고
		매우 우수 (9-10)	우수 (7-8)	보통 (5-6)	미흡 (3-4)	아주 미흡 (1-2)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진로와의 부합성 • 연계교육 협약 이행 가능 • 학생 부담 교육비의 적절성 						
시설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의 안전성 (구급조치, 피난대피로 확보 등) • 교육장의 청결·쾌적성 • 휴게 공간의 구비 • 주변 환경 유해성 없음 						
교육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목표 적합성 • 교육 내용 수준의 적절성 • 이론 및 실습 비율의 적절성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의 전문성(해당분야 경력, 자격증 등) • 강사 1인당 학생수(15명 이내) 						
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자재 적절성 • 실습 중 안전보호구 지급 • 교재의 적절성, 지급 여부 						
학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공간 존재 • 1일 및 시간단위 출결 관리 • 실습일지 작성 관리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의 취업연계 실적 • 확보한 취업처의 적절성 						
합계							적절/부적절
기속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분리 여부 • 야간 전담관리자 배치 • 일과후 및 주말 관리방안 • 사용료의 적절성 						적절/부적절

※ 현장실사 결과 미흡 또는 아주 미흡인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적격 판정

※ 합계 점수 42/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승인 가능

총평	
----	--

점검일 : 2000년 00월 00일

점검자 : _____ (서 명)

서식 20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승인 신청서

※ 본 서식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사용하여야 함.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승인 신청서

(채용연계 채용비연계)

□ 연계 교육기관 일반 현황

기업명(교육기관명)			
소재지	본사		
	실습장		
사업자등록번호		상시 근로자 수	
대표자명			

□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

담당자(교육기관)		연락처	
현장실습 분야(과정명)			
현장실습생 주요 교육 내용	*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 • • •		
현장실습 기간 (일/시간)	(예시) 20일, 140시간	현장실습 인원	명(개교)

□ 신청기관 관련 사항

담당자		연락처	유선전화	
			핸드폰	
비고 (요청사항, 참고사항 등)				

위와 같이 202 학년도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승인을 신청합니다.

2000 . 00. 00.

○○ 고등학교장 (직인)

서식 22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 본 서식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양식 혹은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제1조(목적) 이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는 _____기관대표(이하 "연계 교육기관"이라 한다)와 _____ 학교 _____학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_____ 학교장 상호간에 현장실습 연계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계 교육기관에서 실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현장실습생"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간 및 장소) ① 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로 한다.
②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연계교육기관"의 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의 경우 관련된 산업현장 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방법 및 절차) ①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은 연계 교육과정에 의거 "연계 교육기관"이 학교와 협의하여 작성한 연계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이 때, 연계 교육계획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필요한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 목적 및 목표, 교육훈련 내용 및 방법, 교육 담당자, 교육훈련 장소 및 시간, 교육훈련 대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습 연계 교육담당자와 학교의 교사가 참여하여 현장실습 연계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③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 또는 학교의 요청을 수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연계 교육기관의 의무) "연계 교육기관"은 교육 훈련이 내실 있게 실시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현장실습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실무중심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
2. 현장실습 연계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생"의 신체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실습과제를 부여할 것
3. 현장실습 연계 교육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제공할 것
4. 교육훈련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연계 교육 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실습생"을 성실하게 지도할 것
5. 학교가 현장실습 연계 교육의 이행 과정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 결과 드러난 개선 및 변경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6.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7. "현장실습생"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제6조(학교의 의무) ① 학교는 "현장실습생"의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에 앞서,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협약 내용, 계획, 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은 "연계 교육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출결 상황을 매일 관리해야 하며, 그 상황을 학교에 보고한다.

제7조(현장실습생의 권리) ① "현장실습생"은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시 산업현장의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현장실습생"은 교육 기간 중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재해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현장실습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연계 교육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할 것
2. 연계 교육기간 동안 해당 교육기관의 질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3.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할 것

제9조(연계교육 시간과 휴식) ① 현장실습 연계교육 시간은 1일 7시간 이내로 하며, 주당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연계 교육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학습목적에 한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중 휴식시간은 교육훈련 1시간당 10분으로 한다. 단, 연속된 교육 훈련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③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연계 교육기관"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교육훈련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0조(현장실습생 특별보호) ①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현장실습생"이 여성인 경우)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결석을 인정해야 한다.

제11조(안전·보건상의 조치)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교육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제12조(재해보상)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이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 보상을 한다.

제13조(중식 및 용품제공) ①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중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연계 교육기관"은 교육훈련기간 중 "현장실습생"에게 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용 공구, 안전보호구, 기타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③ 학교는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복리후생)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며, "현장실습생"이 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숙사 등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실습생"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전담 사감을 배치하여 교육훈련 이외의 시간에도 상시 보호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생"의 기숙사 출입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15조(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의 평가) "연계 교육기관"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교육훈련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한다.

제16조(포상)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의 교육훈련 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교육훈련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연계 교육기관"이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내용을 변경하려면 "현장실습생"과 "학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의 해지) ① "연계 교육기관"과 "현장실습생"은 연계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 훈련을 지속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 해지일 7일 전에 해지 예고를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 교육기관"과 "현장실습생"은 학교와 사전에 협의한다. 단, "현장실습생"이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 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취업) "연계 교육기관"은 연계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취업처 알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수료증명서) "현장실습생"의 연계 교육이 종료된 경우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수료 증명서를 교부한다.

제21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연계 교육기관”, “현장실습생”, “학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00. 00.

(연계 교육기관) 기관명

기관장

(인)

(현장실습생) 주소

성명

(인)

(학교) 학교명

학교장

(인)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결재	담당	부장	교감	
기관명		지도일시	20 (: ~ :)			
주소		전화번호				
현장실습생	과 번, 성명 과 번, 성명					
영역	지도 내용			예	아니오	비고
교육운영	1. 당초 수립된 운영 계획과 교육과정 목표에 부합하게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가?					
	2.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에 제시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가?					
	3. 현장실습생의 출결 상황에 대한 확인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4. 사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5.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이 양호한가?					
	6. 교육담당자가 지정·배치되어 현장실습생을 교육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현장실습생	1. 현장실습생은 성실하게 실습에 임하고 있는가?					
	2. 현장실습생은 교육기관에서 성실하게 잘 적응하고 있는가?					
	3. 현장실습생의 건강상태는 양호한가?					
	4. 현장실습생의 심리상태는 양호한가?					
	5. 안전사고, 권익침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가 있는가?					
	6. 안전사고, 부당대우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7. 통학 또는 기숙사 생활에서 안전사고 요인은 없는가?					
교육기관	1. 현장실습생의 출결 상황을 확인하여 출결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있는가?					
	2. 현장실습생 생활지도 및 상담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통학 경로 및 기숙사 시설의 안전사고 위험요인은 없는가?					
	4. 실습장 내 시설 안전, 안전보건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5.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절차(학교 담당자, 학부모 비상연락망 구축)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는가?					

현장실습 실태	<p>* 현장실습생 대상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p> <p>1. 현장실습 시간 1일 ()시간</p> <p>2. 안전사고 발생 여부 유 () 무 ()</p> <p>3. 위반사항:</p>					
<p>■ 학생 및 기업체 면담 내용</p>						
교육기관 면담내용						
현장실습생 면담내용 및 전달사항						
종합의견 (애로사항)						
학생 만족도	참여 실습생의 교육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5	4	3	2	1
구분	소속(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	
보고자						
동행자						
<p>상기와 같이 순회지도 결과를 보고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직위: 성명: (인)</p>						

기업현장교사 자격 확인서

현장실습 산업체명		○○○○○ 회사		
기업 현장교사 자격 확인서				
순번	직급	성명	연락처	자격요건* 번호
1				
2				
3				
4				
5				
6				
<p>*〈자격요건〉</p> <p>①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p> <p>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 분야 훈련 유경험자</p> <p>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p> <p>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p>				

위 사항을 확인함

202

00 회사 00 대표(직인)